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총 5권중 제2권

2000.11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은 한국농업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
 체인 동시에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이다.

새싹의 형상을 통하여 무한히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과 친환경농업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청색원은 인터넷 E-mail주소의 @형상을 활용하여
 신식식·정보화된 농업과 서로 조화되고 상생(相生)
 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전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농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청·녹·황·적의 '색종'을 표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청색과 적색의 변화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였다.



한국농업의 마스코트인 '새농이'는 '새로운 농업' 이
 라는 의미로 발전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열물
 령의 기본요소인 푸른새싹을 의인화하여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농업을 나타내는 어린이
 의 이미지로 앞으로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 리 두 기

-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지침의 2001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239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자율)	241
2. 토양개량사업(자율)	29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17
4. 발기반정비사업(공공)	327
5. 경지정리사업(공공)	356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399
7. 배수개선사업(공공)	415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438
① 수리시설개보수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9. 농촌용수개발사업(공공)	473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공공)	515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공공)	570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2. 지역특화사업(공공)	605
II. 농업기계화	631
13. 농기계구입지원(자율)	633
14.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63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5. 농기계생산지원(공공)	637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39
16.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지원(자율)	641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65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주요변경사항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4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50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29
※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231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669
18.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	671
II. 사육기반확충	681
19.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확충사업(자율)	683
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②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③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2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율)	723
21.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751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22.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공공)	775
23. 가축개량사업(공공)	839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887
24.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889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농산물 규격출하	
25.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935
① 산지농협유통활성화 ②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③ 공동규격출하촉진 ④ 인삼생산장려	
26.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97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③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급 지원	
27.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010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② 농산물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8.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1052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③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④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	
29. 농축산물 자조급 조성지원(공공)	1099
30.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1108
3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115
32.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1119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③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33.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	1165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1185
34.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공공)	1187
35.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공공)	1195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종별 자율사업	
36.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1283
① 축산물 안정성강화 ② 가축공제	
37.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공공)	1295
① 축산물검사 ② 가축방역	
38.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321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31
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자율)	1333
①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0.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1386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4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자율)	1477
II. 기술개발	1505
42. 농업기술개발사업(공공)	1507
43.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516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4. 기술보급사업*(공공)	1535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4-H회원과제활동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575
45.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1577
4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21
4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4
IV. 소득보전	1675
48.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677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③ 논농업 직접지불	
49.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1738
50.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740
V. 소득원 개발	1753
5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1755
5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1803
5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1820
54.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834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I. 생활환경개선	1845
55.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공공)	18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 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6.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1926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 확충	1957
57.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959
58. 영림계획(자율)	1968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73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1978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89
61. 임산소득증대(자율)	1991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정수·분제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자율)	2017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3. 산림조합육성(공공)	2034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3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III. 인력육성	2083
6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85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2090
IV. 산림복지 기능증진	2101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103
68. 산촌종합개발(공공)	2110
V. 산림자원조성	2119
69. 해외조림사업(자율)	2121
70. 산림조성(공공)	2128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산림생태보전	

I. 생산기반확충

여 백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 쌀전업농육성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영농규모화사업 관련규정은 농림부 농지과 (과장 나승렬, 행정사무관 전종철), 쌀전업농육성 관련규정은 농림부 농촌인력과 (과장 박형규, 행정사무관 남태현)입니다.

1. 목 적

-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교환·분합 촉진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된 쌀농업경영체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쌀전업농을 집중 육성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제18조 (농지매매사업등)
 -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
 - 제20조 (장기임대차간척농지등의 매입)
 - 제21조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 제22조 (농지의 교환·분합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ha,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	2000	2001	2002-2006	
사업량	ha 87,280	15,208	12,534	8,040	9,040	59,472	
사업비	계	2,907,848	359,849	248,042	243,372	268,681	1,749,400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2,907,848	359,849	248,042	243,372	268,681	1,749,4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 농지매매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등을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매도
○ 농지장기임대차	○ 전업(轉業)·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차액 지원 및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나.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 농지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 매매지원의 경우에는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복귀자 ○ 매수청구농지 매입희망 농업인 ○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장기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 ○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교환·분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다.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라. 매매사업대상농지의 지원상한

- 지원상한은 답은 평당 30,000원, 과수원은 평당 35,000원으로 하고, 그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상한액인 30,000원(답) 및 35,000원(과수원)이하범위에서는 10%자부담

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 환 기 간
○ 농지매매자금	10ha	연 4.5%	2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자금	20ha	무 이 자	5~10년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 자금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	연 4.5%	10년 균분상환

※ 매매, 임대차 지원규모는 쌀전업농 기준임 (경영체별 지원한도 참고)

바. 2001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9,040	268,681	268,681	-	268,681	-	-
○ 농지매매	1,787	132,081	132,081	-	132,081	-	-
○ 농지임대차	7,163	131,800	131,800	-	131,800	-	-
○ 농지교환분합	90	4,800	4,800	-	4,80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농지과, 전화 : 02-503-7264~5, 02-500-2635)

나. 사업시행기관

(1) 중앙단위

○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 전화 : 031-420-3058, 3356, 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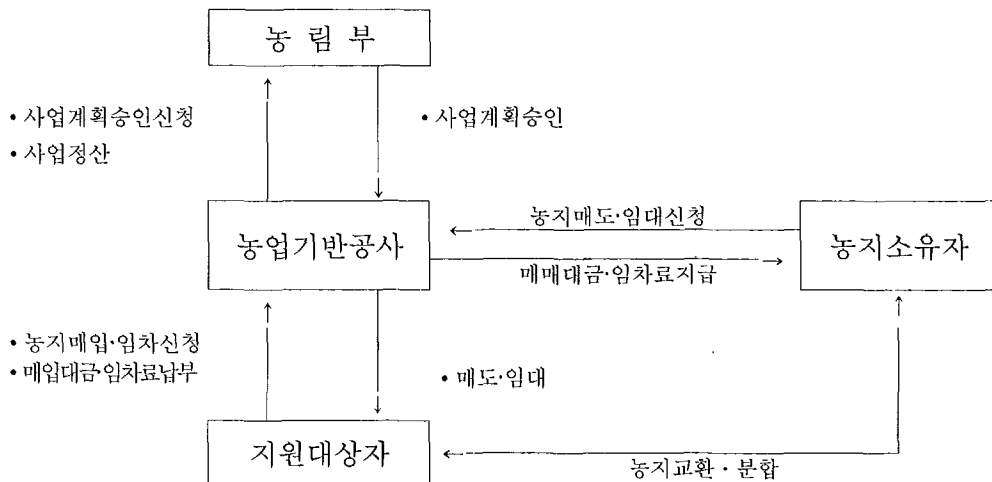
(2) 시·도단위

○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영농규모화사업부)

(3) 시·군단위

○ 농업기반공사 각 시·군 관할지부

다.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시행요령 >

가. 농지매매사업

(1) 일반농지 매매사업

(가) 농지매입(공사가 농지를 매입할 경우)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을 우선하여 다음순위에 따라 매입. 다만, 쌀전업농 또는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하 “쌀전업농등”이라 한다)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 및 쌀전업농등의 소유 답과 연결된 진흥지역밖의 답도 매입가능
 -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②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답
 - ③ 전업(轉業)을 위해 0.1ha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단,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ha까지 허용)
 - ④ 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⑤ 벼이외의 타 작목으로 주 작목을 전환하기 위해 0.1ha까지 벼농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ha까지 허용
 - ⑥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 사업지역내의 답
 - ⑦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중 농작물 경작에 이용될 수 있는 농지
 - ⑧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기간만료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답
 - ⑨ 공사 보유농지중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답
- 제주도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감귤과수원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 감귤과수원을 대상으로 다음순위에 따라 매입(다만, 과수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지역과 연결된 진흥지역밖의 감귤과수원도 매입 가능)
 - ①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소유의 과수원
 - ② 전업(轉業)·은퇴 또는 타 작목 전환을 위해 감귤농사를 완전히 포기한 자의 과수원
 - ③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과수원중 감귤 경작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감귤전업농의 규모화·집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수원

※ 우량감귤과수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한해·동해를 받는 지역은 제외

- (1) 해발 250m이하의 감귤과수원
- (2) 경사도 15%이하의 감귤과수원
- (3) 토지적성등급이 3급지이상의 감귤과수원
- (4) 감귤과수원이 7ha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감귤과수원

○ 매입대상 제외농지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구입자금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 각종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세부사항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 지급대상요건의 예외농지 ②항과 같음)
-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중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매입가격의 결정

- 공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공사의 현지조사에 의한 가격등을 감안하여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가격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
- 현지조사시에는 조사대상 농지가격 등에 대한 농지관리위원등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농지가격 등의 허위·담합을 사전 예방

○ 매매계약의 체결

-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매입대금의 지급

- 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나) 농지매도 (공사가 농지를 매도할 경우)

○ 매도대상자(아래의 각항 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된 자)

- ①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다만, 소유경영규모가 5ha이상인 쌀전업농은 선정이후 자력에 의한 경영규모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②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소유논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인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④ 농어촌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 ⑤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또는 과수(감귤)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과수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②의 기준을 준용

○ 매도대상 제외자

- 쌀 및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자기 보유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농지매입신청자가 당해 농지의 매도대상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대상에 포함
- 주경작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도·광역시 밖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을 지나는 경우에는 그 들녘에 한하여 매도
- 만 65세이상(2001년의 경우 1936년 12월 31이전 출생자) 쌀전업농. 다만, 쌀전업농육성지침에 의한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기간중 지원조건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은 자 (2001년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까지 위반자)

- 영농권별 지원한도
 -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 평야지대 : 10ha(20ha)까지
 - 중간지대 : 7 ha(15ha)까지
 - 산간지대 : 3 ha(7ha)까지
 - ※ ()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매도한도
 - 영농권별 지원한도를 원칙으로 하며 영농권별 지역실정에 따라 개별 경영체별로 농기계보유현황 및 농업 노동력등을 고려한 기존 소유 규모를 포함하여
 - 쌀전업농 : 10ha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ha까지
 -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지원우선순위
 - ① 농지이용증진사업지구내 쌀전업농
 - ② 영농규모화사업 시·군계획에 의한 동일영농권내 쌀전업농
 - ③ 자력에 의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한 전업농
 - '95년이전 일반전업농에게 지원한 농지를 승계 또는 매입하여 영농 규모를 확대한 전업농
 - ④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 농업인의 농지매입 희망자 또는 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
 - 4-1. 집단화가 가능한 자
 - 4-2. 전업농규모 도달가능성이 높은 자
 - 4-3.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가 지정한 자
 - ⑤ 기타농지 매입희망자
 - 5-1. 집단화가 가능한 자
 - 5-2. 전업농규모 도달가능성이 큰 자(진흥지역내 경영규모가 큰 자)
- ※ 지원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지원
 - ①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지원신청한 농업인 또는 경영체
 - ② 기지원자중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업인 및 경영체
 - ③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과계 졸업자등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으로 매도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매도계약서에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 임대, 대리경작 등 제한을 위한 “특약사항” 및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전매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의 체결

-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공사는 매매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매도대금의 수납

- 일 시 불 : 농지매입농가가 원할시 일시불로 수납
- 분할상환
 - 금 리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4.5%
 - 상환기간 : 20년간 균등분할상환

○ 신청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농지매매사업 등 원리금 상환연기

- 공사는 농지매매자금(농지구입자금,교환·분합사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상환원리금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연기
 - 천재지변 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조사된 농작물피해조사대장상의 공사지원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상환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지원 받은 농지가 필지별 3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한하여 1년간 상환연기

(2) 장기임대차 간척, 개간농지 매매사업

- 매입대상농지
 -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개간 농지 (답에 한함)
- 지원대상자
 -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와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업인이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
- 매매협의 조정
 - 공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매매 협의 조정 요청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본 지침 중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 매입대상농지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매입가격 결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기준.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며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매수청구자와 매매가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관리위원회등의 조정·중재를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매입제한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서 형질 등이 변경되어 매수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토지
 -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협의를 합의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중재가격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매도우선순위

-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① 동일 영농권내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②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영농 규모화사업에서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법인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벼이외의 다른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와, 공부상 지목이 답이 아닌 농지
 -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②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
 - ③ 농업경영규모가 3ha이상인 농업인 ④ 기타 농업인

 - 동 순위에서의 매도우선순위의
 - ① 연령이 낮은 자 ② 농지의 집단화 정도
 - ③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④ 경영규모가 큰 자
 - ⑤ 농과계학교 졸업자 ⑥ 영농경력이 많은 자
- ※ 기타 지원조건등 세부절차는 별도지침에 의함

나. 농지임대차사업

○ 임대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답의 경우 다음순위에 따라 임차
 - ①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답(제주도의 경우 과수원)
 - 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③ 전업(轉業)을 위해 0.1ha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 0.2ha까지 허용)
 - ④ 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⑤ 벼 이외에 타작목으로 주작목을 전환하기 위해 0.1ha까지 벼농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단, 1필지의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ha까지 허용)
 - ⑥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자경하고 있는 답과 1km이내의 비농업인의 답
 - ⑦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간 벼 경작에 계속 이용된 농지

-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원(감귤재배)의 경우 전업(轉業)·은퇴 또는 타작목 전환을 위해 감귤농사를 포기한 자의 과수원

- 임차대상 제외농지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는 제외
- 대상지역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 임대 대상자(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아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①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②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담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④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또는 과수(감귤)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과수농업 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②의 기준을 준용
- 임대대상 제외자
 - 쌀 및 과수(감귤)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고의로 자기 보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농지임차신청자가 당해농지의 임대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대상에 포함

- 수 경작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도·광역시 밖의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을 지나는 경우에는 그 들녘에 한하여 임대
- 만 65세이상(2001년의 경우 1936년 12월 31이전 출생자) 쌀전업농. 다만, 쌀전업농육성지침에 의한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영농권별 지원한도
 -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한 경영규모
 - 평야지대 : 20ha(40ha)까지 • 중간지대 : 15ha(30ha)까지
 - 산간지대 : 7ha(15ha)까지
 - ※ ()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
- 임대한도
 - 영농권별 지원한도를 원칙으로 하며 영농권실정에 따라 개별 경영체별로 농기계보유현황 및 농업노동력등을 고려하여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하여 경영규모
 - 쌀전업농 : 20ha까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0ha까지
 -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임대차 기간 : 5~10년
- 지원 우선순위
 - 매매사업에서 정한 지원 우선순위와 같음
- 임대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당해임차료등을 고려한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현물로 결정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는 당해년도 약정수매가격(1등급)을 적용하여 환산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권설정등기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 희망자에 따라 임차권 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농업인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임차료 지급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청구한 때(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지급 모두 가능)

○ 임차료 수납

- 공사는 계약 총금액을 매년 균등분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납
-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 임차료의 감면대상

-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청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천재지변 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조사된 농작물피해조사대상상의 공사지원농지의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서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 미만	0%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 감면기준 변경시는 변경을 적용

○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기반공사가 부과하는 경비중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노임, 종묘, 비료, 농약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 신청서식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다. 농지교환·분합사업

(1)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사업

○ 신청자격(아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① 농지이용증진사업 지구내 쌀전업농
 - ②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③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농업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담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④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분합사업의 청산금 지원대상자
 - ⑤ 제주도에 한하여 과수(감귤)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또는 과수(감귤)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과수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③의 기준을 준용
- ※ 전업농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

○ 대상농지

- ① 답끼리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의 경우는 과수원(감귤)끼리의 교환·분합도 포함
- ②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를 주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답도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4.5%, 10년 균등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 및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자금을 지원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가 동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분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경지정리사업 실시에 따른 교환·분합사업

○ 지원대상농지

- 환지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답

○ 지원대상자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 원지에 환지를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산금 정수 해당액(일시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4.5%, 10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및 방법

- 경지정리사업실시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 채권확보

- 지원액 1,000만원 이하
 - 동일 시·군·구내 거주하는 농업인 1인의 연대보증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 지원액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동일 시·군·구내 거주하는 농업인 2인의 연대보증과,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다만,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시 연대보증 해지 가능
- 지원액 3,000만원초과 : 환지등기완료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로 대체(연대보증인 입보 불가)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농림부장관은 다음 년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동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30일 이내에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다음 년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11월 30일까지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지부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3) 사업정산

- 공사는 당해년도 농가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 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별지 제6호서식)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

(4) 기타

-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농지매매자금·농지임대차자금과 지원농지의 재매입·매도시 필요한 자금은 2000년도 해당 사업비에서 지원
- 직접지불제사업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을 추진
- 사업비신청 및 배정시 시·군별 영농규모화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우량 영농권에 사업비 우선배정
- 공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권별 영농규모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사후관리

(1) 일반사항

- 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 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 농협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잔액에 대한 현황을 공사에 통보하고 농림부 또는 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공사에 명단 통보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농업기반공사등 공공기관은 관련자료 조회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협조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

(2) 지원농지의 관리

(가) 사후관리상황조사

- 공사는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및 임대차사업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한 농지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6월말까지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상황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후계농업인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 지원농지의 전매, 증여, 임대, 전대, 담보제공, 대리경작, 무단전용 여부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상실 여부
 - 쌀전업농으로 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벼이외의 타작물 재배 여부 및 경영규모 축소여부
- ※ 담보제공 여부는 '99까지 지원농지에 대해서만 조사
-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FIMS 사후관리 P/G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매도농지 : 지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 구입자금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 매매사업으로 '98년이후 지원받은 쌀전업농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할 경우 : 당해농지 회수

(나) 회수농지의 가격결정

- 공사가 회수하는 농지의 가격은 실제거래 가격범위 내에서 당초 매도 가격에 다음의 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다) 전매·임대 등의 동의

-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당해 농지의 전매, 임대, 대리경작 또는 담보제공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자치구·읍·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타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제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농가의 개인파산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쌀전업농에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95년이전 일반전업농에게 지원된 8년특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를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쌀전업농 또는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 전매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농지에 대한 농지매입대금(상환이자를 포함한다)의 전액을 상환한 경우
 - 농지매입대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공사에 이미 상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담보제공 동의는 '99년까지 지원한 농지에 한함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의 경우
- 각종 선거에 당선되어 직접 영농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공공사업등 전용농지 처리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거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당해 농지에 대한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공사로부터 전매동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업경영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라도 사전에 해당면적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전용된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

(마) 사후관리위반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기타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은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 단,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안날로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 단,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2001. 1. 1이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 적용. 다만, 지원당시 계약서 정한 위약금보다 현규정 적용으로 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부과

(바) 채권관리

- 공사는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 및 농협은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다. 보고

- 농업기반공사의 각 시·군관할 지부장은 매분기마다 사업추진실적을 지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각 지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 (필요시 시·군등 행정기관에 통보)
- 농업기반공사 매분기마다 시·도별, 사업별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농업기반공사는 매도 및 구입자금 지원농지와 임대농지에 대한 전매, 임대 및 전대등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후관리 상황조사결과를 매년 7월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관할 농업기반공사 각지부

나. 신청자격

-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타작목전환 농가 등
- 농지매입 :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간척·개간농지 경작농업인, 영농복귀자, 감귤전업농(제주도에 한함) 매수청구농지
- 농지임대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타작목전환 농가등
- 농지임차 :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복귀자, 감귤 전업농(제주도에 한함)
- 농지교환·분합 :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정수 해당자

※ 2001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다. 신청절차

- 2002. 1. 1이후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각지부에 제출(신청서식은 농업기반공사 각 시·군 관할지부에 비치)

라. 신청서식

- 농지매도 : 별지 제1호서식
- 농지매입 : 별지 제2호서식
- 농지임대 : 별지 제3호서식
- 농지임차 : 별지 제4호서식
- 농지교환·분합 : 별지 제5호서식
-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사업시행자에 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

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원)

과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농지관리기금						
○ 이익금						

나. 지출 (단위:원)

과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 농지교환·분합						
○ 손실금						

2. 사업별

가. 농지매매 (단위:농가,m²,원)

시도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D)	미매도 (B-C)			
		농지매입(B)			농지매도(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나. 농지장기임대차

(단위:m²,원)

시도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D)	미임대 (B-C)		
		농지임차(B)			농지임대(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계											

다. 농지교환·분합

(단위:농가,m²,원)

시도별	예산 (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건수	필지수	지원농가수	면적	금액(B)	
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 서식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분기)

1. 총괄

(단위:ha,호,백만원)

사업별	계획				신청접수					보조금지급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	금액	%	농가	면적	%	금액	%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도별 신청실적(금분기/누계)

(단위:호,ha,백만원)

시도 별	계획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금분기 년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쌀 전업농육성 지침

1. 목 적

- 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주도할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
-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우리나라 쌀생산량의 5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21세기 우리 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
-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기술·정보·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
- 지방 농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 지방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 농업경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

3. 법령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4. 연도별 선정계획(쌀전업농)

	계	'92-'99	2000	2001(잠정)	2002
선정량(호)	100,000	71,529	7,467	10,000	11,004

※ '99년까지 시행해온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구입 지원은 2000년부터 농업 기계화사업을 통해 일반농업인과 동일조건으로 지원

5. 2001년도 시행요령

<개 요>

가. 내용 설명

(1) 배경

- WTO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 등을 위해 '92년부터 핵심시책으로 추진

(2) 지원대상

-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쌀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쌀전업농”이라함)로 선정한 자

(3) 지원내용 : 농지 매매자금 및 임차료 선급금

(4) 호당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임대차 사업시행요령 참조

나. 2001 선정계획량 : 10,000호

※ 시·도별 선정계획 : <별표 1>

<추진체계>

가. 추진기관

- 시장·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쌀전업농 육성지침에서 ‘시장·군수’라 함)

나. 담당기관

- 시·도, 시·군의 농정과 혹은 이에 준하는 부서

다. 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

-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55세이하인 농업인
 - 56세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농업후계인력의 명의로 신청가능
- 쌀 이외 다른 품목의 생산·재배를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과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시설·농기계자금등)을 지원받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음 (*)'99 신청자부터 적용
- '99이전 기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불가

〈 농업후계인력 〉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동거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
- ※ 군복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후계인력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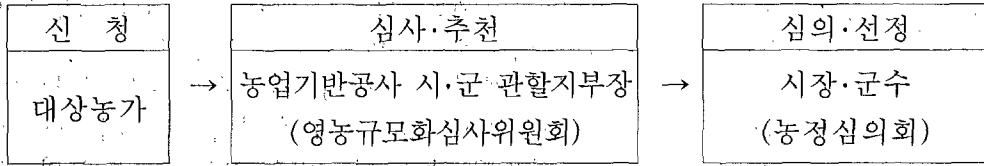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영농경력, 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수준 등을 종합 평가, 평점 400점 이상인 우수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 별표2)
- ※ 이 기준은 쌀전업농 선정시에 적용되며 농지매매·임대차자금지원은 영농규모화사업지침에 따름

(3) 선정우선순위

- 벼재배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자
 - 경영규모가 큰 자
 - 경영규모가 같은 경우 평점이 높은 자, 연령이 낮은자 순으로 선정
- 경영규모가 3ha미만인 경우
 - 당해연도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따라 경영을 이양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하는 방법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
 - 확대후의 경영규모가 큰 자, 평점이 높은 자,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벼 재배경영규모가 큰 자
 - 경영규모가 같은 경우 평점이 높은 자,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4) 선정절차



가) 지침 게시·광고 : 한달 이상

※ 각시·도별 선정물량 배정은 농림부, 각 시·군별 선정물량배정은 각시·도가 함

나) 신 청

○ 2001. 1. 20 까지

○ 신청서접수기관 : 거주지 시·군(산업과등), 읍·면·동사무소, 각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

※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로 송부

○ 구비서류

- 신청서(제1권실시규정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7호 서식),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사본, 기타 <별표 2>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각 항목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제외)

다) 대상자 심사·추천

○ 2001. 2. 28 까지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장은 종합평점 400점 이상인 신청자 전원에 대한 우선순위(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추천

-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은 경영규모 등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영농권)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농지원부 등을 활용, 기초 점검 실시

· 사업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지역(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은 사업장 소재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에 문의하여 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실사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가 시·군 농정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소속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영농규모화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우선순위(안)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추천(별지 1호서식)
 - 개인별 규모확대계획이 해당 들녘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연령분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농지유동화 전망과 조화가 되는지, 같은 들녘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자간 경합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추천
- ※ 영농규모화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장), 쌀 선도농가 2인, 수도작 후계자 2인, 쌀전업농 2인,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 농협관계자 및 농지관리위원 각 1인씩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

라) 쌀전업농 선정

- 2001. 3. 31 까지
-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심의하고,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상의 쌀전업농육성목표를 감안, 대상자 선정

마)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완료 즉시 선정결과를 계통보고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별지 제2호서식)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99이전의 기타전업농육성사업 지원자 포함)

(1) 쌀전업농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의 장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장은 『전업농육성사업지침』과 『영농규모화 사업지침』에 따라 쌀전업농을 관리하며 쌀전업농의 농지구입·임차(차력확대 포함)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별지 제3호 서식)

- 시·군등의 농업기술센터의 장, 읍·면장

(2) 기타전업농 육성대상자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장, 읍·면장
- 농협지역조합장(읍자 취급기관장)

(3) 사후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자격취소시까지

(4) 사업추진상황 등의 점검

- 시장·군수는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선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토록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은 매년12월말까지 영농규모화자금을 지원받은 쌀전업농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
 -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은 영농규모화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쌀전업농에 대해서도 농지원부 등을 확인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경영규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익년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함

(5)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사업취소사유

〈공통사항〉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 파산, 금치산선고 등 중대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 농업인을 피선거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농협, 업종별조합 등의 조합장,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무자 등은 제외)
- ※ 회사, 공공기관 등의 상근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차량운전자, 주 2,3일근무, 2,3 교대근무 등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적용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사원·주주·조합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업농으로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전업농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농업이외의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사업계획 미이행자로서 시장·군수가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쌀전업농은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 기타 전업농은 농업기술센터의 장등의 검토의견서 필요)

〈쌀전업농〉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취소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당해 조치가 해당 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조치여부를 결정.
- 쌀전업농의 경영규모가 5ha미만인 자로서 선정된 후 3년간 경영규모확대실적이 없는 경우 및 임차기간 만료시 경영규모 5ha미만인 쌀전업농 이 임차기간만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단,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농지규모확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 및 지역여건상 농지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취소요건 적용여부 결정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이후 소유 논을 증여·매도·임대하여 선정시점에 비해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 '97년 이전 선정자의 경우는 '98. 1.1을 기준으로 함.
- 시장·군수는 전업농에 대한 취소 통보시 이상에 열거된 사업취소사유를 문서로서 첨부·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의 장, 읍·면장, 농협지역조합장,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 지부장 등 관리보조자는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시장·군수등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 사업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기타전업농에 대해서는 사업취소사유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확인즉시 전업농 선정 및 자금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의 경우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할 경우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금상환에 대하여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취소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분기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익년 1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6) 자격 승계

- 시장·군수등은 전업농이 사망, 신병, 결혼(여성전업농의 경우) 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거나 56세이상으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승계자가 55세 이하로 동일가구내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간다는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할 수 있음
 - 전업농의 자격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시·군 관할지부장은 승계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통보
 - 시장·군수등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계를 승인하고 즉시 유관기관에 통보 및 계통 보고(별지 제4호서식)

(7)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조치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사업지침에 따름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이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업계획변경 신청서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시장·군수가 쌀전업농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장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참고해야 함

○ 사업장소의 변경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점후의 사업지도는 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시·군, 시·도내 이전
 - 시장·군수는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시·도, 농업기술센터, 용자취급 기관)에 보고 및 통보
- 시·도간 이전
 - 시장·군수는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첨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전후의 시·도지사와 농업기술센터의 장,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전업농이 지원자금으로 타 시·군 관할 지역내의 농지를 구입·임차한 경우 자금을 지원한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동사업장의 사업지도를 함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관조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인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용자취급기관)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다. 영농규모적정화사업시행지침 및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의 적용

- 쌀전업농에 대한 영농규모적정화(농지매입·임차)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농규모화 사업지침에 따르고, 농기계구입자금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원당시의 쌀전업농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라. 기 타

- 농업기반공사는 전업농의 관리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 D/B구축하여 관리하고 경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영농기술과 경영지도 실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련기관 등은 농업기반공사의 쌀전업농 경영규모 변동조사 및 사후관리조사를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협조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는 전업농중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전업농 육성업무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등 사기진작방안을 수립·시행

6. 2002년도 전업농신청 및 선정안내

□ 쌀전업농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시·군(산업과),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
- ※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즉시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로 송부

나.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
- 사업시행년도(2002년) 1.1현재 55세이하인 농업인
 - 경영주 연령이 56세 이상인 농가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농업후계인력이 신청함
- 쌀 이외 다른 품목의 생산·재배를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과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시설·농기계자금등)을 지원받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음 (*'99 신청자부터 적용

< 농업후계인력 >

-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동거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동일가구내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에 제한은 없음)
- ※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후계인력으로 봄

다. 신청시기 : 2002. 1.20까지

라. 구비서류

- 신청서(제1권 실시규정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7호 서식),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기타 <별표 2>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각 항목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농지원부 제외)

< 별표 1 >

2001쌀전업농 선정계획

구 분	선 정 물 량	시도별 배정기준	비 고
	호		
서울	-	각 시·도별 농업진흥 지역 및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면적을 감안하여 비례 배분	· 신청물량을 감안 하여 추후 조정가능
부산	35		
대구	42		
인천	61		
광주	71		
대전	50		
울산	36		
경기	979		
강원	219		
충북	416		
충남	1,916		
전북	916		
전남	1,636		
경북	809		
경남	942		
제주	5		
유보	1,867		
계	10,000		

<별표 2>

쌀전업농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100	○ (경력-2) × 20 ※ 7년 이상 : 100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00	○ 농과계 학력 - 대졸 : 50점 - 전문대졸·최고농업경영자과정 : 45점 - 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중 자영농과) : 40점 - 일반농고 졸업 : 30점 ○ 농과계 이외 학력 - 대졸 : 40점 - 전문대졸 : 35점 - 기타(일반고졸 이하 포함) : 20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 1개월이상 : 50점 - 2주일이상 : 35점 - 3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 도,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학교 부설 영농 훈련기관 - 쌀 선도농업경영체 농장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경영규모	100	○ 경영규모/3ha×100 * 비재배경영규모에 한하며 규모 3ha 이상은 100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기계화수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바인더포함), 경운기, 동력분무기, 건조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종이상 보유 농가 : 50점 - 2종 보유 농가 : 30 " - 1종 보유 농가 : 20 " - 전혀 기계를 갖추지 못한 농가 10점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이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이상 : 30점 - 120%이상 : 20점 - 100%이상 : 10점 ○ 경영여건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정리 완료지역 : 20점 -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경작지간 거리가 500m 이내로 집단화 : 40점 ○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기록(신청시점 이전 1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20, 충실 35, 매우 충실 50 ○ 계열출하실적(RPC, 대형도정공장, 농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상 30, 60% 이상 25, 40%이상 20점 <p><가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농기계 조작·정비능력 관련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영농사·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20점 - 농기계전문훈련기관 훈련이수자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10점 ○ 농림수산정보센터 또는 특성화대학의 경영·정보화교육(3박4일과정 이상)이수 가산점 : 20 ○ 품질인증미 출하가산점 : 20 <p>(*)가산점은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항목에 합산하되 200점 초과점수는 사업계획 배점 한도까지 사업계획항목에 합산</p>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의욕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40, 우수 70, 매우우수 100 ○ 영농규모확대의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40, 강함 70, 매우강함 100
가 산 점		○ 수도작후계자 출신 50
계	700	

< 별지 제1호 서식 >

쌀전업농 추천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논경영규모

1) 추천순위 결정 근거

추천 순위	성 명	근 거

2)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 유

< 별지 제2호 서식 >

쌀전업농 선정결과 보고

1. 연령별·경영규모별

(단위 : 명)

구 분	29세 이하	30~ 34	34~39	40~44	45~49	50~55	계
1.0ha미만							
1.0~ 2.0							
2.0~ 3.0							
3.0~ 4.0							
4.0~ 5.0							
5.0~10.0							
10.0이상							
계							

2 성별 및 출신(농업인후계자 여부)별

합 계			남 자			여 자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계	후계자	후계자 이외

3. 학력별

합계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일반	농과계	일반	농과계	일반	농과계

4.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명부(사후관리 기관비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논경영규모	전화번호	기타특기 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

쌀전업농 사업추진현황보고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부)

(분기별 누계보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농지구입·임차지원(ha, 천원)					사업 부진 사유	비 고	중점관 리필요
			선정 당시 규모	전년 도말 규모	당년 확대 계획	당년 확대 실적	당년 지원 금액			

○○ (시·군)의 쌀전업농 사업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장·군수 귀하

(*) 사업부진사유 : 확대대상농지부족, 지가·임차료 상승,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포기, 사업추진불능 등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비교란에 표시

(*) 중점관리필요 : 필요, 불필요로 표시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초대상자				승계예정자의 ()
승계예정자				당초대상자의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 획변경여부				

위와 같이 사업 승계를 추진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변경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 내역	지원금액합계 (국비보조) (지방보조) (국고융자) (농협융자) (농지기금) 자 부 담 계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 귀하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주소	전문품목	취소사유 취소일자	지원자금회수현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계	당분기(년도)						
	누계						

- ※ 1) 전업농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내에 명기
-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진출, 사업포기, 직권취소 등으로 기재한 후 지침서상 사업취소사유를 ()내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후계자	출신여부	수도작() 복합() 일반농가()	현재경영규모	평
자금지원 신청액	농지매매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임차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농지교환·분합자금	: 천원	소요시기	년 월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평)			시 설		농 기 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 지 매 입	평				
농 지 임 차	평				
농지교환·분합	평				

3) 최근 5년간 인력육성사업자금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선도개척농·선도농업경영체)

연 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4) 2002까지의 경영계획(쌀전업농 규모로의 발전 및 경영개선계획)

* 향후 이 계획대로 경영규모가 확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적이 계획에 미달할 경우 사업취소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니,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약

연도별	경영규모(평)	벼재배면적(평)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나. 경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작성요령)

정부는 2002년까지 경영규모확대와 쌀생산비 절감 등 우리쌀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생산 전문농가를 확보하기 위해 5ha(15,000평) 이상 규모 쌀전업농 6만호와 3~5ha(9,000평 ~15,000평) 규모 쌀전업농 4만호 등 총 10만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보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앞으로 2002년까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먼저,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논 주위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중 앞으로 2002년까지는 논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논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논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 2) 다음으로 그 논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 (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등),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 3) 아울러,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쌀은 정부수매를 통해 팔 것인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팔 것인지, 다른 경로로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수확량을 늘려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2	토양개량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박중서, 사무관 이재환)입니다.

I. 토양개량제 공급

1. 목 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석회, 규산)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기공급에 의거 연차별 읍·면단위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 시용
- 농협이 토양개량제 구매공급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4. 연도별 지원계획

		'92-'98	'99	2000	2001(안)	2002	'03-'04
사업량		천톤 2,709	640	632	780	855	1,710
사업비	계	백만원 154,715	41,735	42,464	52,530	57,142	114,284
	보조	73,931	33,388	33,971	42,024	45,714	91,428
	융자	-	-	-	-	-	-
	지방비	34,290	8,347	8,493	10,506	11,428	22,856
	자부담	46,494	-	-	-	-	-

주) 지원비율 : '96까지(국비 25%, 지방비 25% 보조) → '97부터(국비 80%, 지방비 20% 보조)

5. 2001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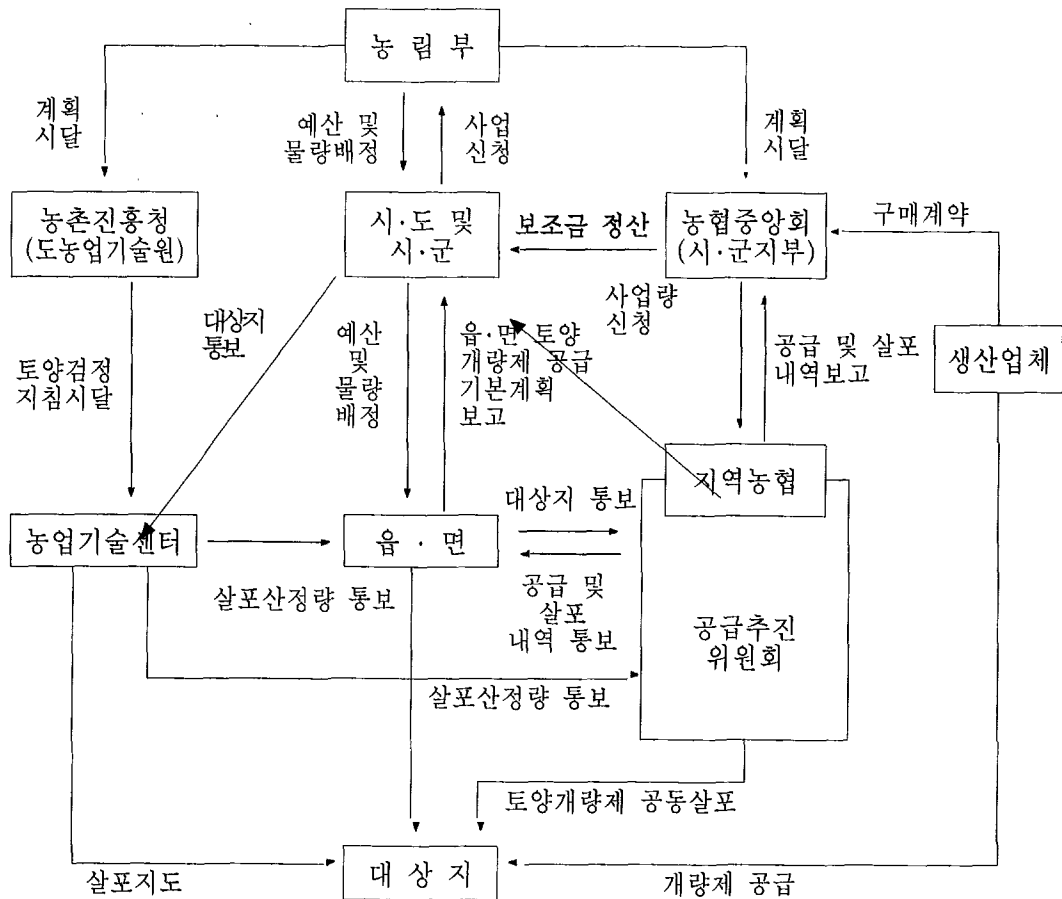
- 유효규산 부족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공급하여 토양개량

(2)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또는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밭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4) 사업시행체계



나. 2001 지원계획(안)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계	천톤 780	백만원 52,530	42,024	10,506
규 산	480	34,080	27,264	6,816
석 회	300	18,450	14,760	3,690

< 사업추진계획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농정과(산업계)

라.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장은 농림부의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거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의 비재배면적과 비 이외의 재배면적을 각각 4등분, 5등분하여 규산과 석회의 연차별 공급대상지역(리, 지번, 면적, 경작자 주소, 성명 및 예상물량 명시)을 선정
 - 단, 석회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와 규산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를 역순으로 하여 해당년도에 규산과 석회가 동시에 동일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도록 작성
 - 또한 2001년 석회, 규산 공급대상지역에는 '97~2000년까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포함시켜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마.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지역 확정

(1)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농협장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위 구성 : 지역농협장, 읍·면장, 농업기술센터 읍·면담당자, 이장, 작목반장, 영농지도자 등

- 추진위 임무 :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당해년도 공급대상지역(들녘,리동,농가,필지등) 확정, 비종별 공급량·살포방법·살포시기 등 세부계획 수립

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1)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농림부의 ‘2001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군의 경지면적을 토대로 『시·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배정

○ 시장·군수는 읍·면의 경지면적을 토대로 『읍·면별 토양개량제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배정, 지역농협장과 읍·면장에 통보하고 읍·면 공급 대상지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읍·면장은 시·군의 토양개량제공급계획에 의거 배정된 읍·면별 사업량에 대하여 『읍·면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가 확정 한 당해연도공급 대상지역의 들녘, 리동, 지번, 지적, 주소, 농가를 [별지제1호서식]의 ①~⑤항까지 작성, 시장·군수에게 통보

(2) 토양검정 실시 및 살포량 통보

○ 농촌진흥청장은 토양검정실시 방법, 토양성분별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살포량 기준,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 시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군수가 통보한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시달한 지침에 따른 토양검정(기존자료 활용가능)에 의거 살포량을 산정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⑥~⑦항까지 작성 지역농협장 및 읍·면장에게 통보

- 규산은 들녘별 평균살포량 산정 가능

- 석회는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하되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집단화된 들녘은 들녘별 평균살포량 산정 가능

(3)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

- 지역농협장은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별 (읍·면, 부락별, 들녘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장과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구매 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 함.
- 공급업자는 물량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리·동장에게 인계하고, 리·동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토양개량제를 필요지역에 집단 공급함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자비로 시용코자 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4)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읍·면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살포계획에 따라 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 살포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등에 인력을 지원토록 함.
 - 다만 석회는 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 개별살포 가능
- 지역 농협장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내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통보한 [별지제1호서식]에 ⑧~⑩항까지 기록하여 읍·면장에게 통보

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 시장·군수는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계통비료 수급 현황표) 이외의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를 징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완료후 50%, 나머지 50%는 살포완료 확인 후 지급 가능
 - 시·군은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 가능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
 -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한 연차별 공급기본계획 수립(읍·면장)
 - 공급대상지 들녘·리동·지번·지적·농가등 기초자료 관계기관에 통보(시장·군수, 읍·면장)
 - 사업량 보조금 배정 및 정산(시·도지사, 시장·군수)
 -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관한 행정 지원
- 지도기관(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정실시 및 토양개량제 살포 등에 관한 지침 수립 시달
 -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의 토양 검정
 - 토양개량제 살포산정량 확정 통보
 -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 농협
 -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정산

나. 보고사항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체결 결과보고
 - 보고기관 : 농협중앙회장
 - 보고내용 : 구매가격 결정내역, 계약물량, 계약조건 등
 - 보고기한 : 전년 10월말

- 시·군별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보고내용 :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한
 - 공급계획 : 매년 1월말 [별지 제2호 서식]
 - 공급 및 살포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 지역농협장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사업량 신청

다. 구비서류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라. 대상지(자)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 <사업 추진계획> 마항에 의함

(덧붙임 1)

2001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안)

(단위 : 톤, 천원)

시·도별	합 계				규 산				석 회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계	780,000	52,530,000	42,024,000	10,506,000	480,000	34,080,000	27,264,000	6,816,000	300,000	18,450,000	14,760,000	3,690,000
서울	831	53,985	43,188	10,797	303	21,513	17,210	4,303	528	32,472	25,978	6,494
부산	4,084	274,602	219,681	54,921	2,467	175,157	140,125	35,032	1,617	99,445	79,556	19,889
대구	4,876	325,733	260,587	65,146	2,722	193,262	154,610	38,652	2,154	132,471	105,977	26,494
인천	10,409	713,702	570,962	142,740	7,742	549,682	439,746	109,936	2,667	164,020	131,216	32,804
광주	5,862	397,677	318,142	79,535	3,912	277,752	222,202	55,550	1,950	119,925	95,940	23,985
대전	2,657	175,765	140,612	35,153	1,301	92,371	73,897	18,474	1,356	83,394	66,715	16,679
울산	6,035	408,222	326,678	81,644	3,902	277,042	221,634	55,408	2,133	131,180	104,944	26,236
경기	87,506	5,897,631	4,718,105	1,179,526	54,317	3,856,507	3,085,206	771,301	33,189	2,041,124	1,632,899	408,225
강원	46,876	3,079,363	2,463,490	615,873	20,683	1,468,493	1,174,794	293,699	26,193	1,610,870	1,288,696	322,174
충북	54,535	3,606,935	2,885,548	721,387	26,635	1,891,085	1,512,868	378,217	27,900	1,715,850	1,372,680	343,170
충남	108,198	7,387,881	5,910,305	1,477,576	77,232	5,483,472	4,386,778	1,096,694	30,966	1,904,409	1,523,527	380,882
전북	91,843	6,294,905	5,035,924	1,258,981	68,059	4,832,189	3,865,751	966,438	23,784	1,462,716	1,170,173	292,543
전남	138,293	9,391,160	7,512,928	1,878,232	93,278	6,622,738	5,298,190	1,324,548	45,015	2,768,422	2,214,738	553,684
경북	120,298	7,981,874	6,385,499	1,596,375	61,426	4,361,246	3,488,997	872,249	58,872	3,620,628	2,896,502	724,126
경남	74,423	5,017,558	4,014,046	1,003,512	46,373	3,292,483	2,633,986	658,497	28,050	1,725,075	1,380,060	345,015
제주	23,274	1,523,007	1,218,405	304,602	9,648	685,008	548,006	137,002	13,626	837,999	670,399	167,600

- * 사업량 : 경지면적의 90%를 공급대상면적으로 하여 산출
- 규산은 비재배면적의 1/4, 석회는 비이외의 작물재배면적의 1/5
- ha당 공급량 : 2톤

< 별지 제1호 서식 >

2001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현황

(군 면 들녘)

공 급 지 역			경 작 자		살포산정량		공 급 내 역		
리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10a당산정량	총산정량	공급비중	공급량	살포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m ²			Kg	Kg		Kg	

* 비중명은 규산질 비료는 분상·사상·입상으로 석회는 소석회·석회고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자 체 가 26-35

2001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									

< 별지 제3호 서식 >

자 체 가 26-36

2001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규산·석회 구분작성>

(단 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월	누계 (B)	비율 (B/A)	당월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명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신청서

신청내역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규 산	계			
분 상					
사 상					
입 상					
석 회	계				
	석회고토				
	소 석 회				

위와 같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농협장 (인)

○ ○ 시장 · 군수 귀하

II. 객 토

1. 목 적

- 사질논 등 생산력이 낮은 농경지와 휴·폐광산주변 오염 농경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질답 등 점질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점토함량 15%(논 18cm, 밭15cm 깊이까지)가 되도록 객토를 실시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토양의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92-'98	'99	2000	2001(안)	2002	'03-'04
사업량(천ha)	113	10	10	8	8	16
사업비(용자)	113,397 (79,522)	14,000	14,000	10,600	10,600	21,200

※ ()내서는 농업경영자금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객토사업 희망 농가

(2) 지원대상지

- 사질논·밭 등 생산력이 낮은 농지와 소규모 합배미 사업지역
 - 일반객토 : 대상지중에서 객토 미실시지역, 객토를 실시하였으나 적량 객토를 하지 않아 보완객토가 필요한 지역, 기타 병해충 및 재해상습·연작피해 등으로 객토가 필요한 지역
 - 합배미객토 : 토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 합배미 지역
- ※ 오염농경지 객토는 '99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통합

(3) 지원단가

- 일반 객 토 : 1,200천원/ha
- 합배미객토 : 2,200천원/ha

(4) 지원조건

- 국고 융자 100%(연리 5%, 3년 균분상환)

나. 2001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ha						
	8,000	10,600	10,600	-	10,600	-	-
일 반 객 토	7,000	8,400	8,400	-	8,400	-	-
합 배 미 객 토	1,000	2,200	2,200	-	2,200	-	-

※ 융자조건 : 연리 5%, 3년 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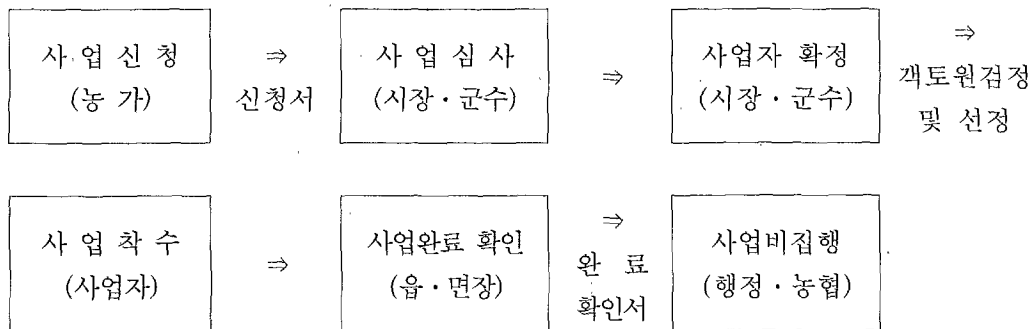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직할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농정과(산업계)

다. 자금지원예정자 : 2001년 사업신청 농가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변경

- 농림부의 2001객토사업 계획(안) (덧붙임2)에 의거 시·도지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사업량을 배정
- 시장·군수는 시·도의 객토사업계획에 의거 시·군 자체계획 수립
- 객토사업 계약은 사업자(농업인)와 객토 대행업자 간에 체결하고 시장·군수(읍·면장)는 조정
 - 농로·논두렁 보수 및 객토원 체토지 원상복구 사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민원 해소
 - 가급적 흙피기 작업과 동시 계약 추진

○ 객토원 선정

- 객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량객토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가와 협의하여 객토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선정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객토원 검정 실시

○ 시장·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토지역과 객토원의 질·양을 수시 확인

○ 시장·군수는 객토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책 강구(재정지원 포함)

○ 객토지에는 유기물 더주기, 10a당 30톤이상을 객토한 논에는 삼요소 비료를 20-30% 더 주고 깊이갈이를 실시(가급적 2-3회)

○ 사업계획 변경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반·합배미의 종류별 사업내용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추진 가능함.

(3) 객토방법

○ 논 객토

- 모래논 : 점토함량이 15%로 증대되도록 점질함량이 높은 흙을 객토
- 질흙논 : 점토함량 15%로 조절되도록 점질함량이 낮은 흙을 객토

○ 밭 객토

- 밭작토층 15cm 까지 점토함량이 15% 정도가 되도록 객토

※ 논·밭 객토량 산정방법 [덧붙임3] 참고

(4) 사업비 지원방법

○ 객토를 완료한 사업자(농업인)는 완료 즉시 논밭을 갈기전에 읍·면장에게 완료 확인 요청

- 읍·면장은 객토완료 후 논, 밭을 갈기전에 반드시 현지확인을 거친 후 객토완료 확인서 발행
- 사업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객토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용자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 ※ 객토완료 확인서는 농업인 개별 또는 연명으로 확인 가능
- 용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바.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군간 사업비를 전배조치 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 보고

- 시·도지사는 객토사업 완료실적을 다음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1)항'의 대상자에 5의가(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순수 농업생산 목적에 객토를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 개별 또는 공동(들녘별)으로 읍·면에 사업을 신청하되 들녘별 공동 신청시에는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객토사업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5 <사업개요> 의 가(1)항의 대상지에' (2)항의 객토 종류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객토원 운반거리 등 객토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들녘별(공동) 객토

※ 토양개량제(석회·규산)를 사용하는 종합농토개량지역을 우선하여 객토실시

- 2순위 : 벼 재배농경지 객토

- 3순위 : 개별 객토

○ 선정절차

- 시장·군수가 신청서를 심사한 후 객토방법 및 대상지를 확정

[덧붙임 1]

2001객토사업 계획(안)

(단위 : ha, 천원)

구 분	계		일반객토		합 배 미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8,000	10,600,000	7,000	8,400,000	1,000	2,200,000
인 천	9	10,800	9	10,800	-	-
경 기	170	246,000	128	153,600	42	92,400
강 원	3,561	4,429,200	3,405	4,086,000	156	343,200
충 북	231	313,200	195	234,000	36	79,200
충 남	199	264,800	173	207,600	26	57,200
전 북	385	614,000	233	279,600	152	334,400
전 남	325	485,000	230	276,000	95	209,000
경 북	3,008	4,076,600	2,541	3,049,200	467	1,027,400
경 남	112	160,400	86	103,200	26	57,200

[덧붙임 2]

논 객토량 결정

○ 10a당 객토량 (18cm깊이까지 15% 점토함량 증가시)

- 객토량 조건표

(톤/10a)

객토원점질함량(%) 객토대상 논점질함량(%)	20	25	30	35	비 고
8	131	93	72	58	아래식으로 환산
9	123	84	64	52	
10	113	75	56	45	
11	100	64	47	38	
12	84	52	38	29	
13	64	38	26	20	
14	38	20	14	11	

$$\text{객토량} = \frac{18(15 - \text{농경지점토}(\%))}{\text{객토원점토}(\%) - \text{농경지점토}(\%)} \times 1.25 \times 10$$

- 18 : 개량목표 깊이(cm)
- 15 : 개량목표 점토함량(%)
- 1.25 : 가비중
- 10 : 상수

밭 객토량 결정

※ 작토층 15cm를 찰흙 함량 15%로 개량할 때의 객토(10a당)

객토원토성 대상 밭토양	사 토	사 양 토	식 양 토	식 토
	톤			
사 토	-	-	60	40
사 양 토	-	-	36	23
식 양 토	120	144	-	-
식 토	124	158	-	-

[별지 제1호 서식]

객토사업신청서

성명(인)	대상지주소(지번)	객토종류	객토희망면적	희망객토량	사업비	비고
			ha	톤		

※ 연명 신청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객토완료확인서

성명	대상지주소(지번)	객토종류	객토면적	객토량	계약단가	용자대상금액
			ha	톤		

※ 연명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객토를 완료하였기 확인함.

2001. . . .

○ ○ 읍 · 면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제 외

2001 객토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도별	사업계획량(ha)			실 적(반기)			
	계 (A)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일 반	합배미
				면 적 (B)	진 도 (B/A)		
				ha	%	ha	ha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동과 (과장 김종수, 행정사무관 신봉운) 입니다.

1. 목 적

- 벼 등 주요농작물에 대하여 순도높고 활력있는 우수품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보급종의 상위단계인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량종자 보급종을 농가에 확대보급 하므로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대되어 식량의 안정적 확보기반 조성에 기여
- 식량의 자급화를 위한 주곡작물(벼, 보리)의 사업량 확대 및 농가 기호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품종 확보를 위하여 원종생산 지원면적의 확대 추진

< 주요작물 원종생산 지원면적 > (단위 : a)

	계	벼	보 리	감 자	옥수수	콩
2001년	18,265	5,548	3,630	5,087	500	3,500
2002년	18,723	5,825	3,811	5,087	500	3,500

- '98년부터 바이러스 이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자원종을 전면적 망실 재배로 전환함에 따라 씨감자소요량에 비해 망실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 인력, 포장여건 등을 감안 원종장 직영포장 중 망실설치가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망실면적을 확대추진하고, 부족면적은 농가망실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위탁 생산토록 하고 망실 설치에 소요되는 백망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3.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목록등제품종의 종자생산),
 동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 2005년	
원원종	사업량	115ha	20	20	20	22	79	
	사업비	계	1,036	188	188	188	206	715
		보조	1,036	188	188	188	206	715
원 종	사업량	1,212ha	201	201	201	221	796	
	사업비	계	8,942	1,634	1,634	1,634	1,797	6,469
		보조	8,942	1,634	1,634	1,634	1,797	6,469
감자원종 농가망실 재 배	사업량	3,953동	1,150	900	900	990	3,560	
	사업비	계	2,941	199	186	186	205	738
		보조	312	199	186	186	205	738
	비	융자	1,840	-	-	-	-	-
		자부담	789	-	-	-	-	-
사업비 합계		12,919	2,021	2,008	2,008	2,208	7,922	

※ 감자원종 농가망실재배 사업비 중 융자사업은 수요를 감안 '98년 까지만 사업을 추진함.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상업성이 낮은 주요농작물 종자생산 사업은 품종개발, 종자증식 및 보급까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나 종자산업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씨감자 수요량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무병건전한 우량 보급종의 확대생산에 필요한 원종장의 망실재배 가능면적이 부족하고 일시에 확대가 곤란하므로 원종생산 일부를 농가에 위탁 재배코자 당해년에 사용되는 백망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원원종 및 원종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종자 전량을 하위단계 채종을 위하여 무상인도
- 백망사 구입비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무병건전한 씨감자(생산목표량)는 익년도 보급종 채종시 농가에서 자체 사용

○ 지원종류 : 원원종, 원종 생산비(생산인부임, 재료비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 비	자부 담
			계	대출	보조		
계	221(ha) (900동)	2,008	2,008	-	2,008	-	-
○ 원원종	20	188	188	-	188	-	-
○ 원 종	201	1,634	1,634	-	1,634	-	-
○ 감자원종 망실재배 위탁농가 백망사 구입비 지원	900동	186	186	-	186	-	-

※ 원종 사업비에는 감자원원종 사업비(154백만원)가 포함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단, 감자원종 농가 망실재배사업 주관기관은 강원도 감자원종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031-467-0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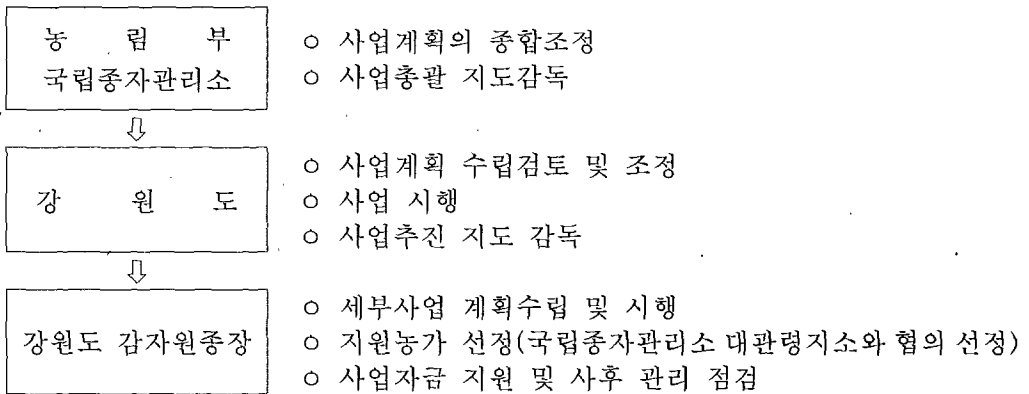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 각도 주관하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종자협의회를 개최 도별 생산계획(안)을 수립하고, 농림부에서 종자생산계획이 확정되면 곡종별 생산목표량을 각도 책임하에 생산목표량을 책임생산

[감자 농가위탁 백망사구입비 지원]



- 사업집행절차

- 원원종 및 원종 생산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 각도 농업기술원
- 위탁농가 백망사 구입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 강원도 농업기술원(감자원종장)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 농림사업평가지침에 의거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평가

- 사업비 정산

- 근거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한때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재료비, 인건비등) 계산서 및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사업비를 정산받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 생산]

- 채종단계별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 포장검사 : 벼, 맥류 등은 1회, 감자, 옥수수는 2회
 - 합동진단 : 곡종별 1회

[감자원종 농가망실재배]

- 사후관리 책임자 : 강원도 감자원종장
 - 사업비 지원 확인 후, 기 비치 운영되고 있는 관리대장에 지원실적을 기록관리
 - '98년까지 완료한 망실용자는 용자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3년간 용자지원사업 운용상황을 평가하여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 에게 보고
 - 기 설치된 망실시설은 휴경기간 중 차년도 감자원종 망실재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랭지 채소, 화훼 재배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농림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분기별 주요 영농작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원 실적 등을 종합평가 관리

나. 보고처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주요 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 생산실적 보고(보고기한 : 11. 30)
[별지 제1호 서식]
- 백망사 구입지원 농가 선정상황 및 지원결과 보고(보고기한 : 7.30)
[별지 제2호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다. 신청절차 : 각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 담당부서(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에 신청

라.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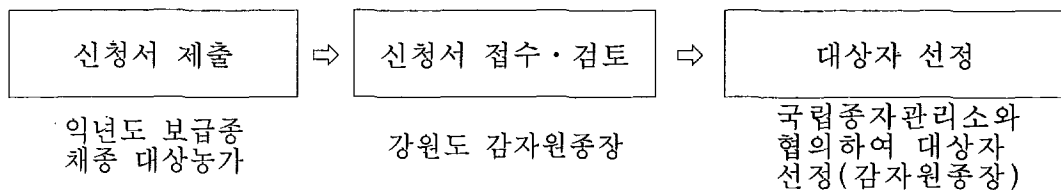
-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 [별지3호서식]
- 예산신청 세부내역(산출근거 포함) 1부

[감자원종 농가 망실재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강원도 감자원종장 (☎ 033-335-5963)

나. 신청자격 : 대관령지역의 익년도 감자보급종 채종대상 농가중 감자원종 생산 희망농가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감자원종 백망사구입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위탁농가 백망사 구입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
 - 기존 망실설치 농가중 익년도 보급종 채종대상 농가로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익년도 보급종 채종농가로 망실시설 확보농가
 - 감자원종의 위탁생산 희망농가
 - 포장관리 등 채종능력이 있는 농가

< 별지 제1호 서식 >

자체 가48-5

주요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 산 계 획			생산실적	비 율	비 고
			면 적	종자량	생산 목표			
			a	kg	kg	kg	%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48-3

백망사 구입지원 농가선정 상황

지역명	농가수	면 적	동 수	비 고
	호	a	동	* 100평형 동수로 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재

- 1) 망실설치 포장약도 별첨
- 2) 농가별 선정내역 별첨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보고

○ 지원방법 : (*현물지원, 자금지원 구분 명시)

○ 지원내역

구 분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백망사 설치결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호	a	동							
지역별										

- 주 1) 망실설치완료 확인서 별첨(별지3호서식)
- 2) 농가별 설치내역 별첨

2002년도 원원종·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 요구내역 (총괄)

(단위 : 천원)

		'99	2000	'01	'02	'03~'05
원원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원 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2. 곡종별 예산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합 계		a			
원원종	소 계				
	벼 맥류 콩 ·				
원 종	소 계				
	벼 맥류 콩 ·				

※ 사업비 산출내역은 a당 인건비, 재료비(농약, 비료, 기타재료)등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작성 별도 첨부

< 별지 제 4호서식 >

감자 원종망실 백망사 구입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백 망 사 지원신청		평 (동)			
소 재 지					
기 존 망 실 설 치 현 황		평 (동)	소 재 지		
망실재배계획		평 (동)			
익년도 보급중 생 산 계 획		a			

상기 본인은 20 년도 원종씨감자 농가위탁 망실재배를 위한 백망사구입 지원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표자)

전화번호 :

4	밭기반정비사업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 토목사무관 김일환)입니다.

1. 목 적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ha 이상) 위주로 정비
- 정주권 개발 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 생산 유통 지원, 품목별 주산단지 등과 병행실시
-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사 업 량		30	6.0	6.0	5.0
사 업 비	계	629,260	154,974	154,974	129,145
	보 조	486,880	124,482	124,482	103,735
	용 자	-	-	-	-
	지방비	142,380	30,492	30,492	25,410
	자부담	-	-	-	-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밭작물 관개용수 개발(암반관정, 양수장 등)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 밭경지 정리 : 원지형을 살려 밭두렁 정리 및 경지 정리

나. 지원기준

(1) 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 보조율 차등 지원(별표 1)
 - 인하지자체 :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국고 75%, 지방비 25%)
 - 인상지자체 :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인 지방재정력 지수와 농업 지수(경지면적, 농가인구)를 감안한(7:3) 차등보조지표가 낮은 하위 20% 해당 지자체(국고 85%, 지방비 15%)

※ 국고지원 차등보조제는 2000년 착수지구부터 적용함

(2) 지원단가 : 25,410천원/ha(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단가의 90% 이내 지원
- II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또는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사업
 - 단가의 100% 지원
- III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 용수개발중 암반관정 개발은 재배작물의 소비량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개발

<사업비 지원 단가 및 재원별 부담액 산출 예>

-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종합정비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사업비 단가 : 25,410천원/ha × 110% = 27,951천원/ha
 - 재원 : 국고(85%) 23,758천원/ha, 지방비(15%) 4,193천원/ha

다.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면적: ha, 금액: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000	129,145	103,735	103,735	-	25,410	-
사업비	5,000	127,050	101,640	101,640	-	25,410	-
조사설계비	(5,000)	2,095	2,095	2,09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정과, 농축산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등)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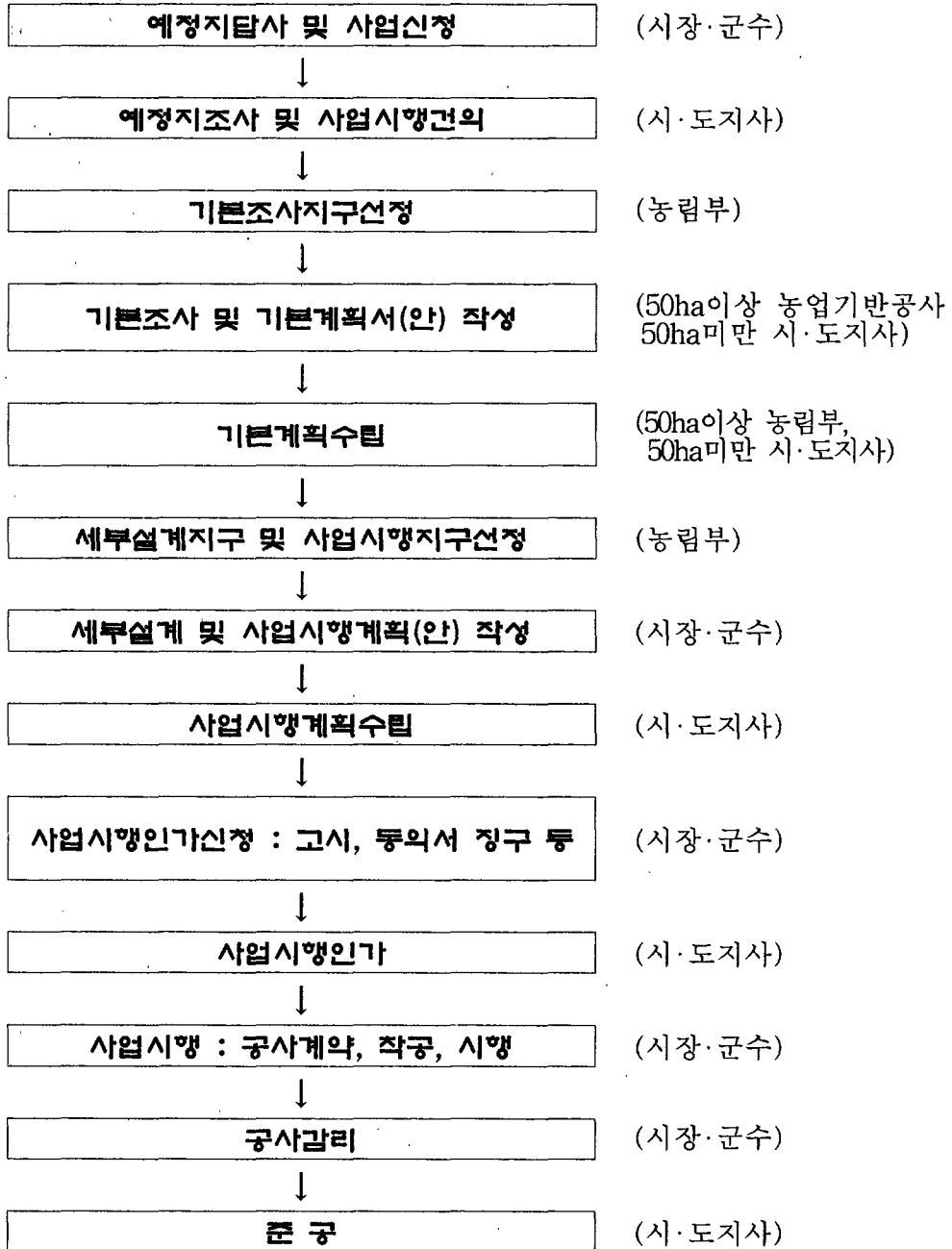
- 사업신청→예정지 조사→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사업 시행계획 수립→사업시행인가→공사발주 및 계약→공사시행→준공

※ 그림 1의 사업추진체계도 참고.

<그림 1>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일반선정 기준

- '98~'99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농림부시설51350-243('99.6.1)호 참조)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타법·타사업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논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논에서 재배하는 밭작물을 이전코자 하는 밭에 대하여 최우선 선정
- 농업진흥지역 또는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 우선선정
- 경사, 토양, 토심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구
-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되고 있는 지구
-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되어 있으며, 정주권 개발, 마을정비,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및 경지정리 사업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지목이 밭 또는 과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실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인근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포함개발 가능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사업예정지보고	시·도지사	전년 6월중	○지하수영향조사	시장·군수	6월중
○기본조사지시	장관	전년 9월중	○세부설계실시 시행계획수립	및 시·도지사	6월중
○예산 가내시	장관	전년 10월중	○사업시행인가보고	"	8월말
○기본계획수립 - 50ha이상 - 50ha미만	장관 시·도지사	12월중	○공사발주	시장·군수	인가즉시
○사업량 및 예산배정	장관	1월중	○추진상황보고	시·도지사	매분기말 익월10일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 대상지구 선정	장관	1월중	○준공결과보고	시·도지사	즉시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발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민대표,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특히 재배작물의 용수 수요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배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작로 정비 등 필요한 공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수혜구역에 대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개발용수량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논에 대한 용수공급 가능)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으로 급수면적을 늘리므로써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공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절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업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발판개 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판개편(1998.12 농림부)의 발판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 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발작물 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 하여 정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제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5) 발경지정리

-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
 - 발두렁만을 정리(발두렁정리)
 - 경사지에 원지형을 살려 정지(경사정지)
 - 평탄지 또는 시설농업을 위한 수평정지 등
- 정지계획 수립시에는 유기질 토양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계획하며, 무리한 정지 계획은 지양.
 - 토지소유자가 시설 농업 등의 영농을 계획하고 있어 수평정지를 원하며, 토양 보존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수평정지 추진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농업인은 마을회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98~'99기간중 조사한 발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3)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채소류 주산단지 포함여부와 작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 지구로 선정
- (4)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예정지 조사대상은 '98~'99기간중 조사한 발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 요구 등 불가피하게 대상지 외의 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별 사업 우선 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매년 6월말까지)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수혜면적이 50ha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기본계획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위 “나.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3)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 조사하여야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혜면적이 5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함
-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 하여야함.
-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할 것이며,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작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작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작목 전환 가능성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공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 경지정리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8)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산정함

(9) 농림부장관은 50ha이상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시도별로 배정한 당해연도 착수 사업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와 당해연도 기본조사중인 지구에 대하여 지구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을 건의함(1월말까지)

- 수혜면적 50ha미만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건의 내용, 기본계획수립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함
- (3)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6)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7)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중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등으로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 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8)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 부분에 대한 동파방지대책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 (9)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발 관정 등 시설물 유지 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0)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작목 등에 따라 1~3년으로 설정함

- 발작물은 연중 계속 재배되는 지역이 많아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휴경 보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ha 이하 및 단순공종 시행지구는 1년
 - 수혜면적 50ha 이상인 복합공종사업 및 타사업연계지구는 2년
 - 지역종합개발차원에서 시행되는 수혜면적 150ha 이상 지구는 3년

(1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12)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고시결과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덧붙임 농촌정비사업 공사계약시 준수사항 참조)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추진

-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비는 개발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지원되므로 사업시행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 (3)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등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발경지정리로 감보처리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함
- (2)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농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없이 기부채납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으로 하며, 용지매수시에도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시행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수혜민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수혜민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관련 규약을 정하여 시·군에 등록토록 하여야 함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카.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1)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타. 기 타

- (1)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시설51350-58('99.2.22)호 발기반시설 유지관리지침 참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함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혜농가들에 의한 관리조직을 만들어 관정 등 시설물이 선량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밭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수 유입방지 그라우팅, 폐공처리, 수위측정관, 적산유량계, 수질검사용 출수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나. 보 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예정지 조사결과보고	1	전년 6. 31	
○ 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	2	12. 31	
○ 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인가결과보고	3	인가후 즉시	시·도지사가
○ 공사입찰결과보고	4	입찰완료후	총괄보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5	분기말 익월 10일	
○ 준공결과보고	6	준공즉시	

※ 수시보고 : 사업추진에 있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하여야 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대상지 : '98~'99일제조사결과 발기반정비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인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군에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에 신청
 -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시장·군수는 예정지 답사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건의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별표 1]

2001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지자체

구 분	해당지자체	보조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국고보조율 인하 - 5%인하	○ 7개시 -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75%	25%	
○국고보조율 인상 - 5%인상	○ 33개 시군 - 충북(2) : 괴산,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7) :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수 - 전남(13) : 곡성, 구례, 장흥, 강진, 신안, 보성, 함평, 완도, 고흥, 진도, 해남, 무안, 장성 - 경북(6) : 의성, 영양, 봉화, 청송, 예천, 군위 - 경남(4) : 산청, 함양, 의령, 합천	85%	15%	

※ 기반정비사업 보조대상 지자체(167개 시·군·구) 중 인상, 인하지자체 이외지역 (124개 시·군·구)에 대하여는 기준보조율(국고 80%, 지방비 20%) 적용

자체 가26-16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I No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소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채소류주산단지정여부	작물 별생 산자 단체 조직 여부	정사 도	토지 소유 자	주민 호용 도	비 고
			시· 군	읍· 면	계	진 홍	비 진 홍	총 사 업 비			ha	수 원 공 ^ 관 정 V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ha	ha	ha				개소	m	m	m	ha	명		%	명	%	

- ※ ○ Code-No는 행정조사결과 부여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채소, 과수, 특작, 화훼 등 대표 재배작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또는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사업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 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사업지구 현황

- 위치 : 도 시 읍면 리
- 면적 : ha(진흥 : , 비진흥)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 현황

품 목				
단지명				

- 주요 재배작목

재배작목				
구성비율(%)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HP), 암반관정 : 개소(HP)
 - 양 수 장 : 개소(HP x mm x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공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도로정비 : m

진입도로 : m, · 경작로 :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또는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사업
- III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국고차등보조 대상 여부 : 여, 부 (국고 보조율 : %)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첨부할 것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 타

- 논에서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 _____ha를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사업시행상 문제점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년 월 일

_____시장·군수 (인)

자체 가26-17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1 No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 업 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 요 시 설					토 지 소 유 자	지 방 비 부 담 액
			시 · 군	읍 · 면	계	진 홍	비 진 홍	총 사 업 비	ha 당			수 원 정 공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정 지 공 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 응 도	채 소 류 주 산 단 지 지 정 여 부	작 목 별 생 산 자 단 체 조 직 여 부	사 업 시 행 에 따 른 제 예 상 접	조 사 설 계 여 부	비 고
사 업 명	관 련 기 관	예 산 확 보 여 부	관 련 기 관 과 협 의 내 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액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밭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으로 기입
- 조사설계여부 : 세부설계 대상지구는 ○표, 세부설계 제외지구는 ×표로 표시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제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밭으로 이동으로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자체 가26-18

발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〇 〇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 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받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받으로 이동으로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별지 제4호 서식]

총26-67

발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A)	예정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 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별지 제5호 서식]

총26-45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99까지	'2000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시행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발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작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군	읍·면		진 흥	비진 흥	채 소	화 회	과 수	특 작	계	국고	지방비	수원공정 수^관정 V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 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받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공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 작 로 : km<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수 원 공 : 개소<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³/일)·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³/sec-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밭경지정리 : ha○ 공 사 기 간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시 공 회 사 :○ 공 사 감 리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수중모타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²					
저 수 조	m ³					
(재 질)						
송 수 관	m					
(재 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이승찬, 토목사무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쌀자급기반확보와 농촌환경개선(일반경지정리)
- 경지정리 시행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획정비,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선택적으로 정비(간이 영농기반개선)
- 과거 경지정리된 평야부 우량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형농기계영농에 알맞도록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대구획경지재정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53천ha중 800천ha에 대하여 우선 추진
 - 농업진흥지역이거나 경지정리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실시
 - 2000봄까지 논면적 1,153천ha의 61%인 699천ha완료
 - 2001봄에 9천ha(구역10천ha) 완료, 가을착수 6천ha(구역 7천ha)
 - 시행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하여 쌀자급기반 유지
-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중산간지와 소규모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출입이 가능하도록 간이정비
 - '99년부터 시범추진한 1천ha를 2000봄에 완료
 - 2001봄에 1천ha 완료
- 대구획경지재정리는 기반정비가 미흡한 200천ha를 재정비
 - 2000봄까지 73천ha(37%) 완료
 - 2001봄에 6천ha(구역) 완료, 가을착수 3.5천ha(구역)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 일반경지정리 사업량(천ha)		164	14(19)	9(10)	10(7)	47
사업비	계	3,690,428	470,345	240,594	226,641	1,095,763
	보 조	2,630,413	321,800	193,820	181,867	880,090
	지방비	1,029,599	148,545	46,774	44,774	215,673
	자부담	30,416	-	-	-	-
○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량(천ha)		-	-(1)	1(1)	1(-)	-
사업비	계	-	8,327	15,307	7,807	-
	보 조	-	6,000	12,307	6,246	-
	지방비	-	2,327	3,000	1,561	-
○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량(천ha)		55	12(6)	6(6)	6(3.5)	21
사업비	계	1,414,336	249,830	116,612	138,351	676,761
	보 조	1,140,369	200,956	93,992	110,943	543,471
	지방교부금	273,967	48,874	22,620	25,147	-
	지방비	-	-	-	2,261	133,290

※ 사업량은 봄마무리 기준, ()는 가을착수 사업량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장
-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일반경지정리]

- 지원단가

· 기준 : 25,240천원/ha · 평균 : 27,011천원/ha · 상한 : 27,770천원/ha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간이영농기반개선]

- 지원단가 : 15,000천원/ha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대구획경지정리]

- 지원단가(재개발형)

· 기준 : 26,080천원/ha · 평균 : 27,907천원/ha · 상한 : 28,630천원/ha

※ 재개발형을 기준으로 집단화형은 90%, 시설개량형은 80%수준지원

- 지원기준 : 봄마무리 (국고)80%, (지방교부금)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가을착수 (국고)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사업내용

- 재래의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필지를 규격화 및 규모화
-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신설 및 확장 정비
- 용수로와 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
- 작토층확보를 위한 객·복토 등 토층개량
-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규모화를 위한 환지
- 농사용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 (집하장,건조장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보 조)	지방비 (지방교부금)	자부담
일반경지정리		234,448	188,113	46,335	-
<input type="checkbox"/> 일 반		226,641	181,867	44,774	
○ 사 업 비		223,869	179,095	44,774	-
- 봄마무리	10	201,891	161,513	40,378	-
- 가을착수	7	18,908	15,126	3,782	-
- 환 지 비	10	3,070	2,456	614	-
○ 조사설계	7	2,772	2,772	-	-
<input type="checkbox"/> 간이영농기반개선		7,807	6,246	1,561	-
○ 사 업 비		7,807	6,246	1,561	-
- 봄마무리	1	7,500	6,000	1,500	-
- 가을착수	-	-	-	-	-
- 환 지 비	1	307	246	61	-
대구획경지재정리		138,351	110,943	27,408	-
○ 사 업 비		137,039	109,631	27,408	-
- 봄마무리	5	125,735	100,588	25,147	-
- 가을착수	3.5	9,769	7,815	1,954	-
- 환 지 비	5	1,535	1,228	307	-
○ 조사설계	3.5	1,312	1,312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자)
- 사업시행자 : 시·군 구역은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농업기반공사 사장
- 시·군, 공사 혼합구역 : 시장·군수와 농업기반공사가 협의하여 결정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Tel.02-500-2664,5, Fax02-502-6734)
- 시·도 : 인천 농정과, 울산 농축산과, 경기 농업정책과, 강원 농산지원과, 충북 농산지원과, 충남 기반조성과, 전북 농지개발과, 전남 농업기반과, 경북 농지개발과, 경남 농업지원과, 제주 농업특작과
- 시·군 : 시군 건설과 또는 농정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지사, 지부

다. 자금지원예정자 :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통상의 사업시행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예정지조사,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고시·동의서징구,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공사계약 및 착공, 일시이용지지정, 공사완공, 반환지 및 등기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1)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 신청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의견 등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97조사대상지에의 포함여부와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의 포함여부를 기술함
- 일반경지정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편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향을 기술

(2)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영농불편으로 농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여부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일반경지정리), 농업용수의 확보(수원공 및 지구외 간선수묘)와 주변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도로계획 등 관련 타사업을 조사하고, 지방비 확보가능성, 수혜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다음 년도 사업시행대상지구 우선 순위를 농림부에 보고하면서 수혜면적이 100ha이상인 지구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기본조사를 신청함

(3) 기본조사실시

-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예정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행편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의한 시·도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 통보함(조사비용부담은 (13)예산의 지원 참조)
 - 수혜면적 10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실시함. 다만, 100ha미만에 대한 기본조사는 시·도지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실시하고, 50ha미만 지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시·도별 착수물량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는 정해진 착수물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세부설계를 실시함.
- 기본조사자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조사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도로계획등), 주민호응도, 현지역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시 문제가 예상되거나, 농림부장관시행 수혜면적 100ha 이상이 100ha미만으로, 시·도지사시행 50ha이상이 50ha미만으로 축소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사업시행예정자와 협의함
- 기본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시 영농불편사항(용·배수로, 농로 등)과 집단환지선호, 대구획화 실효성, 사전환지, 농지감보, 농업진흥지역편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대구획경지정리의 경우에는 개발유형별구역을 정함

- 국지적이라도 주민반대지역은 제외하며,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홍수유출 증가로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민원이 예상되어 배수개선이나 하천 정비사업 선행이 필요할 경우(병행사업 제외)는 설계를 중단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 등 관련사업 시행 및 계획 여부를 조사하여 1/3,000도에 Overlap 표시하고 특히, 도로사업으로 지구분단, 용·배수로 근본체계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 조사시 경지정리사업비 지원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만, 지자체에서 초과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술적인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지대농지는 침수를 고려, 원지만고를 낮추지(절토) 않음
 - 용수로구조물 단면은 최적계획으로 수립함
 - 배수로호안 또는 구조물화 대상은 지선급이상을 원칙으로 함
 - 농로의 확폭은 용배수로부지를 활용하고, 높이는 농기계진입이 쉽도록 낮게하며, 자갈부설 대상은 지선이상을 원칙으로 함
 - * 부락간 연락도로, 2개이상 경작도로 연결도로
 - 여타설계기준은 최신기준을 우선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요령[기정51350-354('95.10.13)]에 의함
- 기본조사자는 현지 도로관리청, 하천관리청, 도시계획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 수립은 50ha미만인 경우 시·도지사가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수립하고, 50ha이상 10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를 참고하여 수립하며, 100ha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립함.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이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과 시·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세부설계실시를 위한 지구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출함
-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참고)을 준용할 것.

(5) 세부설계실시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수립지구에 대하여 예산형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 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연계되는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병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예정자가 농업기반공사로서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업무 전담계획인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용역업체와 역할분담을 검토, 조정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외·내업계획(일정, 인원투입)을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 세부설계를 실시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사항,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 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세부설계자는 현장에서 세부설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착수하는 것은 아님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차기 영농준비에 차질없도록 함.
-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작업중 수혜 면적 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지원단가, 설계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세부설계를 보완토록함.

(6)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구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착수지구 신청을 함.
- 농림부장관은 당해연도 예산형편에 따라 사업착수지구를 선정하고 예산 지원조건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7)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수립 내용을 고시하고, 일부 사업 반대 지역은 사유, 해당면적, 제외 사업비 및 공사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적정성 유무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덧붙임.

(8) 공사계약

- 경지정리 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령 및 제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제반계약관련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
 - 국가계약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입찰 또는 중복제한을 금지
- 사업시행자는 공사발주, 계약체결(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과 착공예정일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개괄적인 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9)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정 계획
 - 사업시행자는 착공후 조속히 월별공정계획(정지,용·배수로,농로,공작물의 공정,일시이용지지정,장비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이때,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별 이양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완공하며, 이양시기가 늦는 지역도 가능한 5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대비토록 함
-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인적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인원 및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현장사무소 주소,성명,인원,일반 및 이동통신전화번호 등)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로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며, 현장 이탈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굴착, 집토, 자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할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 업무량과 배치가능인원,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적정인원대비 배치인원, 타직무와 겸직여부, 감리기술자격여부, 공사감리비 등을 검토함
-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 병행지구의 공사감리는 병행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감리소장의 겸임은 사업시행자가 허용여부를 검토

○ 사업관리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 하고, 시행전후 사진을 촬영보관하며,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현장에 민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공정거래위반이나, 부당한 계약, 부실시공 등을 수시로 확인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민원예방대책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4월말~5월초에 현장에서 수혜자회의를 개최하고, 수혜민들의 공사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조사하며, 회의내용을 녹음 및 정리한 후 사안별로 보내기전 또는 추수후 보완공사 하는 민원해소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흔히 발생하는 다음 유형의 민원을 유의함.

- 저지대 배수시설 민원대비 경지정리사업은 시한부 공사로 배수개선사업과 사전 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연계가 어려움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설명
- 배수로 구조물화 요구 민원은 ha당 사업비 제한으로 어려움을 설명
- 하천수위가 높은 저지대 농지를 절토시에는 침수피해
- 용수로 딱 하단 농지를 과도하게 절토할 경우 용출수 발생
- 논이 평탄하도록 물정지시 세심하게 시공
- 우기 대비 논둑이 높은 구역은 말뚝보강 또는 석축시공
- 배수로 사질 사면붕괴구간에 호안 등 보강
- 매설한 관이 중장비 통행 등으로 수로관 연결부위 하자발생 누수
- 복토작업중 섞인 석력을 토지소유자와 제거방법을 협의·조치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지대 성토구역의 수령답화
- 일시이용지정말목 위치 재확인, 관리(환지관련)

(10)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증감, 계획변경이 있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부에 시행계획변경결과를 보고함.

- 이 때,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도 기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계획 또는 지방비 투입 등 재원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만, 국고추가 예산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농림부에 확인한 후 승인 신청 또는 보고함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 및 1/3,000)
- 주요시설인 경우 변경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작성 : 기존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11) 용지매수 및 보상

- 농로,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구획정비로 감보처리하고, 용지매수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구획정비가 없어 감보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설부지를 매수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협조로 기부채납하는 지구를 우선 추진하며, 용지매수시에도 전체사업비는 예산단가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추진(간이영농기반개선)
- 사업시행자는 토취장등 보상비지급은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계약에 포함할 때에는 보상비 지불액을 확인하고 정산함.

(12)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준공검사)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만,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함.

(13) 예산의 지원

- 기본조사비
 -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100ha이상은 기준요율내에서 확보된 예산(국고)을 지원
 - 시·도지사가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50ha이상 100ha미만은 기준요율내에서 지방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세부설계비

- 세부설계비는 기준요율내에서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지방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사업비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하는 단가로 하며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증액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해당액 만큼 증액할 수 있음.
 - 다만, 환지비는 별도(외서로 표시)
- 사업시행중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증가없이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후 예산이 남는 지구는 부족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없도록 함.
다만, 지구별 국고지원은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함.

○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참조:개발45170-717('99.11.17.'99농촌개발사업실행검정 및 정산요령)]

(14) 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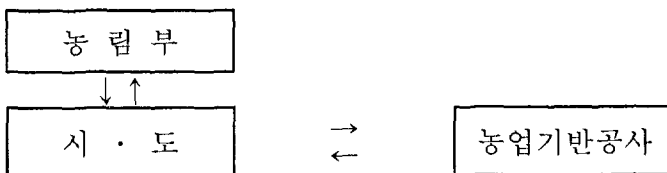
○ 환지업무 요령

- 환지업무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시달한 「환지업무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환지업무대행법인 : 농업기반공사 또는 10인이상의 환지사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수혜자 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 결정사항
 - 종전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 환지구역 분할결정
 -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일시이용지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협의
 - 미납청산금에 대한 가산금부과(5/100) 여부
 - 1000㎡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 여부
 - 기타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의 의결(환지청산금교부의 우선순위, 환지청산금 처리시 소요경비 처리방법) 등
- 사업지구내 공공이용시설부지를 확보, 농업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설환지제도 활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 창설환지계획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대한지적공사,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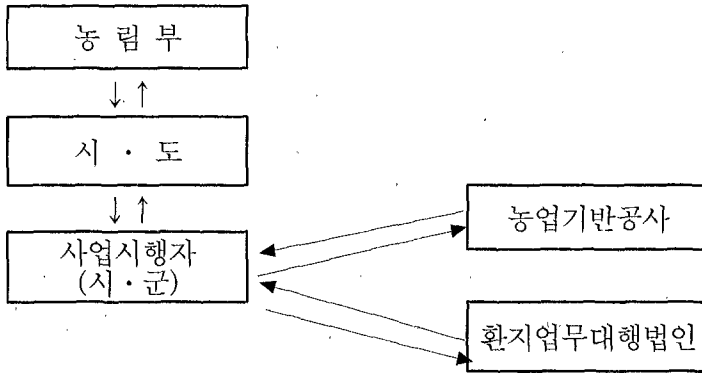
○ 환지업무 추진체계

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인 경우



- 농림부 : 예산내시
- 시·도 : 사업시행승인, 환지계획인가, 보조금지급, 업무완료보고, 업무추진 지도·감독
- 농업기반공사 : 환지사업 계획수립, 환지업무 현업수행, 환지업무 완료보고

나) 시·군의 사업시행인 경우



- 농림부 : 예산내시
- 시·도 : 사업시행승인, 환지계획인가, 예산재배정, 업무완료보고, 업무추진 지도·감독
- 시·군 : 환지업무계약, 계약체결보고, 환지업무 도서인도, 보조금 지급
- 농업기반공사, 민간법인 : 환지업무계약, 환지업무 도서인수 및 현업 수행

○ 기관별 환지업무 수행기능

- 농림부 : 예산내시 (시·도)
환지업무 대행법인 등록 및 지도, 감독
환지사업 총괄 감독
- 시·도 : 환지업무 시행승인 및 농림부에서 배정받은 환지사업비를 시·군, 농업기반공사에 재배정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환지업무 지도, 감독
환지계획 인가서 검토 및 승인
- 시·군 : 도에서 배정받은 환지사업비로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
계약체결후 의무이행사항 점검
환지업무 대행비 정산·보고

○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환지사업비 집행체계 정비

- 과목변경 :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305-02) → (변경) 자치단체자본보조(412-01)
- 국고보조율 변경 : (당초) 국고보조 100% → (변경)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환지업무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체결시에 현행 환지업무 추진 요령상의 업무추진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환지업무 추진시 지역적인 특성을 이유로 영농시기를 일실하거나 계약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

- 민간법인이 환지업무를 수주하여 추진중 부도로 해산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므로, 인력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업시행자 : 계약체결시 사후관리 등 미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입찰불응 또는 계약체결이후 법인의 부도·해산 등으로 환지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

- 환지업무완료 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시 철저한 인가심사 및 사후관리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

- 환지업무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 일시이용지 지정, 본환지 및 등기까지 일괄계약
- 환지업무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 법인등록증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예산회계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도는 업무유형별·시기별 환지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에 대한 대비책 등을 수시 점검하여 환지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대처

- 사업시행자는 환지대행법인이 업무수행시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환지업무관련 유관기관인 대한지적공사, 법원(등기소), 지적관서, 각종 협의대상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

○ 공사일정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 창설환지계획수립, 증·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 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 홍보, 공사착수신고

- 공사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 도서인계 · 일시이용지계획수립 · 도서작성 및 제출 · 일시이용지 지정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수혜자	2001. 1. 10 2001. 4. 10 2001. 4. 30 즉 시
확 정 측 량	「확정측량」 추진요령참조		
환 지 계 획 (본환지)	· 도서인계 ·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 신청 · 행정구역 변경신청 · 환지도서 납품 · 환지계획인가 신청 ·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 관할지방자치단체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시·도지사	2001. 9. 10 2001.10. 20 2001.10. 20 2001.12. 20 2002. 2. 10 2002. 3. 10
환지청산금 정 산	·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 인가일 부터 90일 이내
등 기	· 변경 및 대위등기촉탁 · 환지등기 촉탁 · 환지 등기	사업시행자 → 등기소 사업시행자 → 등기소 등기소 → 사업시행자	2002. 5. 31 2002. 6. 30 2002. 9. 30

○ 사전환지 시범추진

- 목 적 :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 대 상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농가의향조사결과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원하는 지구
- 추진계획 : 2000가을착수 시범지구에 대한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추진방안 결정
- 대상지구선정, 추진방법, 예산지원기준 등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달

< 확정측량 추진요령 >

- 정비사업은 지구경계의 불분명과 내분할 증감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고 확정측량 지연 등으로 본환지 계획수립에 지장이 있는바, 확정측량시행을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함
 - 확정측량은 지구계 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과 내분할 측량(지적확정측량)으로 구분하여 시행
 - 지구계 측량은 공사기간 중에 시행하여 구역 경계점의 조기 확인으로 토지 분쟁 요인해결과 측량수수료의 변동금액을 산출
 - 내분할 측량은 일시이용지 지정이 완료된후 즉시 추진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를 등록하도록 실시

○ 추진절차

주요업무명	기한	추진체계	비고
(1) 측량신청	1월	사업시행자→ 대한지적공사	
(2) 계약 및 착수	2월	사업시행자→ 대한지적공사	
(3) 지구계측량실시	2~4월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4) 내분할측량 실시	5~6월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5) 확정측량 도서 납품	7~8월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6) 확정측량 도서 인계	9.10	사업시행자→환지업무대행법인	
(7) 이동지정리 신청	9.15	사업시행자 → 관할지적관서	

- 사업시행자는 계약 1개월전에 대한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신청하고, 다만, 계약체결전까지 지구편입과 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한지적공사와 확정측량계약을 2월중에 일괄 계약체결하되 계약조건에 지구계 및 내분할 측량을 구분하도록 하며, 확정측량비는 면적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측량 수수료를 확정 가능하도록 함
- 대한지적공사는 공사감독(공사감리)입회하에 지구계 측량시 확정측량의 기준점 및 표석설치를 하고 불분명한 필지에 대하여는 경계확인하여 지구계 측량성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분쟁 예상지역은 주민과 협의하고 시공 보완 실시한 후 지구계 내외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환지업무대행법인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정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후 내분할사항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고, 대한지적공사는 공사감독(공사감리)입회하에 내분할측량을 실시함

○ 확정측량업무수행시 유의 사항

- 사업시행자는 계약의뢰 및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별 추진절차와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며 조기 준공정산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지구계 측량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구역면적의 편입 및 제외 여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결정해야 함
- 지구계 측량이 완료되어 기준점 표석을 설치한 경우 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다시 설치하도록 함
- 공사감독(공사감리)은 지적측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서류 제공 및 현지 확인시 입회하도록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추진

마. 사업비 실행검정 및 정산

- 농촌개발사업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의함
 - 환지비 정산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확정측량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정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바. 기타사항

- 일반경지정리 시행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함 [참조:정비16330-229('99.5.25)]
 - ①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관리 부서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포함여부 협의
 - ② 사업시행전 징구하는 동의서 내용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함
 - ③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 사업 준공시에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에 필요한 토지조서, 지형도,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 ④ 시·군 농지관리부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 농지관리부서에 제출
 - ⑤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 후 농림부장관(농지관리부서)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관정은 최대한 준치, 활용도록 하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폐공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폐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지하수법,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수리51322-444('94.9.23))』 등 관련규정에 의한 엄격한 폐공처리와 폐공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관정사후 관리 철저[참조 : 정비 16330-10142('00.9.28)]
- * 폐공된 소형관정(심도 10~30m, 구경 50mm정도의 층적층관정으로 PVC관이 많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눈·밭에 있는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소형관정 폐공시 원상복구 요령
 -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원상복구요령에 따라 폐공처리
- * 관체를 완전히 인양한 후 지표에서 1~1.5m 심도까지는 점토를, 그 이하는 시멘트슬러리를 주입한 후 깨끗한 점토로 다짐하여 되메움
- 폐공관리대장 기록 :
 - 경지정리구역내 소형관정을 폐공시킨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 *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수리51322-444('94.9.23))』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한 관정을 폐공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공관정 사후관리에 철저히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양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되지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에 준하여 전산입력 관리함.
- 시설관리자는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되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기능을 회복토록함
- 시설관리자는 기간농로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시설관리자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농지보전에 노력함.

나. 보 고

구 분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서식번호
2001봄마무리지구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7호
	준공결과 보고	즉 시	별지9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8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5호
2001가을착수지구	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보고	2001.1	별지2호
	가을착수 대상지구 선정보고	2001.7	별지3호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입찰결과 보고	즉 시	별지6호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7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8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5호
2002가을착수지구	예정지조사 보고	2001.3	별지1호
환 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상황보고	즉 시	별지10호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청 또는 농업기반공사

나. 신청자격

- 경지정리는 공공사업으로서 개인별, 소유토지별, 필지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구로서 해당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대표, 리동장 등
 - 비닐하우스, 감보면적 등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은 지역
 - 농업용수, 하천개수 등 경지정리와 병행추진에 문제가 없고 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사업시행으로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

다. 신청절차

- 농민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지사)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농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의서식이나 구두로 사업시행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는 경지정리 예정지를 현지조사한 후 조사보고서식에 의함

마.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

- '97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
다만, 대상지이외 지역을 주민요구등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 보고서 시·도지사에게 누락한 사유 등을 첨부
- 농업진흥지역 우선선정, 농업진흥지역밖은 경지정리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가능한 지역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농업용수 수원공 등이 완비되어 (차기 영농기내 완공포함)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업용수 부족지구는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있어야 대상지로 선정
- 사업비가 저렴하여 예산단가(지방비 확보포함)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초과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이 가능한 지구
- 타법, 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 공단, 도로계획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와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정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 하천직강·확폭 등 정비계획지역, 상습침수지역(저지대)이나 염해발생이 우려되는 간척농지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지에서 제외
 -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예정지, 기본조사, 세부설계중인 지구)
 -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는 되었으나 추진공정계획상 경지정리와 병행이 어려운 지구

< 간이영농기반개선 >

- 농지집단화 규모가 소규모이고 경사도가 높은 등 일반경지정리 시행이 어렵거나 지역주민이 간이식 정비를 원하는 지역
- 경지정리 대상지 중 개발여건이 불리하여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는 지역
- 경지정리 대상지 밖으로 휴경화가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

○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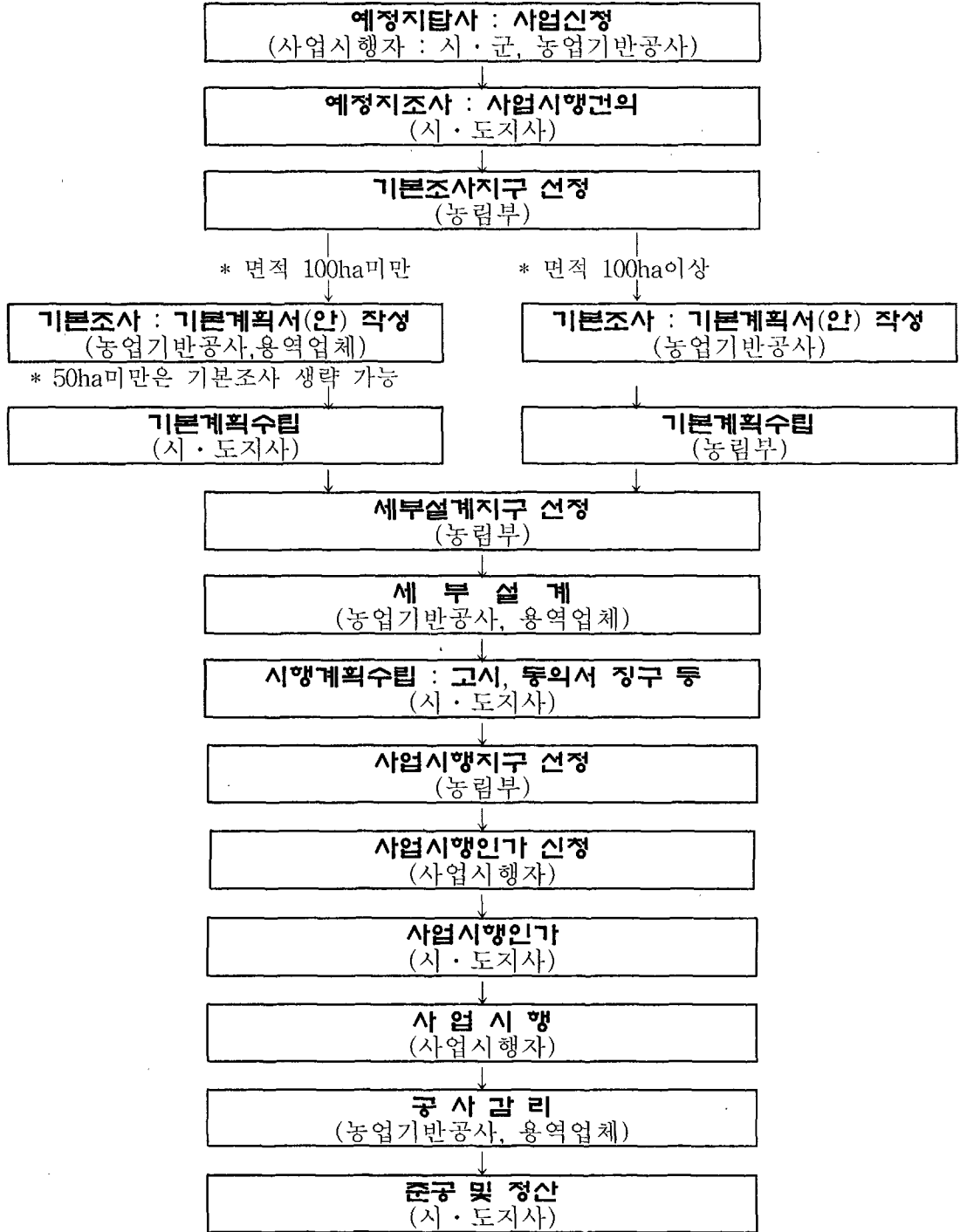
- 주민호응도가 매우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
- 사전환지, 타사업과 병행 및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는 농지정리된 연도가 오래되어 영농불편이 많은 지구

○ 선정절차

-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형편에 따라 선정·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참조)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1호 서식]

자체 가26-25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보고

【 일반경지정리 】

< 총괄 >

우선 순위	코드	지구 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예 정 자	추정사업비		용 수 확 보 율	주 민 동 의 율	진 흥 지 역 진 흥 지 역 가 능 여 부	진 흥 지 역 진 흥 지 역 가 능 여 부	조 사 설 계 추 진 상 황	병 행 사 업	
			시군	읍면	계	진 흥	진 흥 밖		총 액	ha당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97경지정리대상지조사시 부여된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신규, ○○년도조사(설계)완료								
	지구명						사업시행예정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시.군구역	기반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수혜:	ha	ha		ha	ha	ha									
지역 여건	경사도	동서 1/ , 남북 1/														
	도로	전체	km	미접속농지	ha	농로폭	지선:	m								
							지거:	m								
	용수로	전체	km	전용	ha	배수용	ha	월답식	ha							
					*농지기준											
	배수로	전체	km	전용	ha	용수용	ha	월답식	ha							
					*농지기준											
용수조건	용수확보율		%		수원공	*수원공명 (간선명:)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토양조건	토		대		*복토 등(ha, cm)											
투자소요액		백만원 (ha당 천원)														
사업시행효과																
시·도치사의견																
사 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 항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적극반대유무	*비닐하우스휴경, 감보면적 보상 등								
		진흥지역편입가능여부														
사 항	병행또는 연계사업	*사업명			추진 현황							병행사업비 확보계획				
	타사업관련	*도로계획 등														
사 항	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기타 특기사항															

- 주. 1. 기본조사,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그 결과 첨부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간이영농기반개선 】

< 총괄 >

우선 순위	지구 명	위 치		면 적(ha)						사 업 시 행 자	주민 동의율	사업비	
		시군	읍면	일반경지정리대상지내			일반경지정리대상지 밖					총	ha당
				계	진흥	진흥밖	소계	진흥	진흥밖				
											%	천원	

< 지구별 >

우 선 순 위													
코 드 번 호													
위 치 및 지구명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구												
사업시행예정자													
면 적(ha)	계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사업내용	논두렁정비	농로정비	용수로정비	배수로정비	간이용수원								
	ha	연장 m	연장 m	연장 m	시설 :								
사 업 비	천원(ha당)												
개발여건	경사도	주민호응도	수 원 공	용수확보율	영농상황								
	1/()	%		%	경작중	휴 경							
일반경지정리 관 련 사 항	경지정리대상지 여부		포함된 면적		경지정리지구 코 드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관 련 사 업	사 업 명		지구명(코드)		면적(ha)		관련공사내용						
시·도지사 의견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계획을 표기)

【 대구광역시 재정리 】

< 총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예정자	추정사업비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사업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기시행		연도 ○○ha 연도 ○○ha			
		조사설계추진현황		*신규, ○○년도조사(설계)완료			
	지구명	사업시행예정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ha		수해면적		ha		
지역 여건	경사도	동서 1/ , 남북 1/					
	필지구모	종전	m × m		계획	m × m	
	도로	전체	km	미접속농지	ha	농로폭	지선: m 지거: m
	용수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배수 결용	ha 월답식 ha
	배수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용수 결용	ha 월답식 ha
	용수조건	용수확보율 %		수원공	*수원공명 (간선명:)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토양조건	토 대책		*복토 등(ha, cm)			
	개발유형	재개발형	ha		집단화형	ha 시설개량형 ha	
		개발유형선정사유					
투자소요액	백만원 (ha당 천원)						
사업시행효과							
시·도지사 의견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적극반대유무 *비닐하우스휴경, 감보면적 보상 등	
	병행또는 연계사업	*사업명		추진 현황	관련부서와 협의여부		
	타사업관련	*도로계획 등					
	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기타 특기사항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총26-66

경지정리사업 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 보고

【 일반경지정리 】

< 총 관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예정자	추정사업비		용수확보율	주민동의율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사업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추진현황	기본조사: 년		세부설계: 년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시.군구역 ha	기반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사업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북토	ha,	cm	습지	ha	기타				
지구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계약요인 (관련사업)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 의견 (기관명)	*계약여건 등									
사업시행자 의견	*계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계약여건 등									
사업비 예산서	수입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대구회경지 재정리 】

< 총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예정자	추정사업비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사업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량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	년도		ha
	지구명			기시행	년도		ha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재개발형	ha	집단화형	ha	시설량형
사업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 m (당초: m × m)		감보율	%
	도로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도로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 ~ 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도	ha, cm	습지	ha	기타			
지구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기타의견	*집단.사전환지, 비닐하우스 보상제기 등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기타	*하천병목현상 등	
	제약요인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의견 (기관명)	*제약여건 등						
사업시행자의견	*제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제약여건 등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3호 서식]

자체 가26-24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구 선정보고

【 일반경지정리 】

< 총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추정사업비		용수 확보율	주민 동의율	조사설계 추진상황	병행사업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기본조사: 년					
	지구명	사업시행자		세부설계: 년					
면적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구역: ha	시.군구역		기반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사업비	수혜: ha	ha		ha		ha		ha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지구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병행사업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 의견 (기관명)	*제약여건 등								
사업시행자 의견	*제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제약여건 등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추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간이영농기반개선 】

< 총괄 >

우선순위	지구명	위치		면적(ha)						사업비		
		시군	읍면	계	일반경지정리대상지내			일반경지정리대상지밖				
					소계	진흥	진흥밖	소계	진흥		진흥밖	
											천원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 추진현황	기본조사: 년 세부설계: 년		
	지구명			사업시행자			
면적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일반경지정리대상지내 진흥지역 ha ha	일반경지정리대상지밖 진흥지역 ha ha		
	구역: ha 수해: ha				진흥지역 ha ha	진흥지역 ha ha	
	사업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ha	표준구획	m ×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지구여건	주민호응도	%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계약요인 (관련사업)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 의견 (기관명)	*계약여건 등						
사업시행자 의견	*계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계약여건 등						
사업비 수지 예산서	수입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대구회경지정리 】

< 총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예정자	추정사업비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사업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	년도		ha	
	지구명			사업시행자	년도		ha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수혜: ha	재개발형	ha	집단화형	ha	시설개량형	ha
사업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 m (당초: m × m)		감보율	%	
	도로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도로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 ~ 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지구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기타의견	*집단,사전환지, 비닐하우스 보상제기 등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기타	*하천병목현상 등		
	제약요인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의견 (기관명)	*제약여건 등							
사업시행자의견	*제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제약여건 등							
사업비 수지 예산서	수입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예산서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일반경지정리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 치		면 적 (ha)			사 업 시행자	사 업비		재 원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ha	시.군구역	기반공사구역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사 업 비	수혜:	ha	ha	ha	ha	ha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기 타					
제약요인 해소계획	*용수공급계획(용수확보율 70%이하지구), ha당 40백만원 초과지구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백만원)				
조사.설계기관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2000가을)		2차년도 (2001봄)		비 고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간이영농기반개선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 치		면 적(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 원		
	시군	읍면	계	일반경지정리대상지내			일반경지정리대상지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소계	진흥	진흥밖	소계	진흥						진흥밖
										천원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구역: 수혜:	ha ha	일반경지정리대상지내			일반경지정리대상지밖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진흥지역		진흥지역밖		
				ha		ha		ha		ha		
	사업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기 타				
병행사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조사.설계기관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2000가을)		2차년도 (2001봄)		비 고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대구광역시 재정리 】

< 총 관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원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총	ha당	국고	지방교부금	지방비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기시행	년도	ha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수해: ha	재개발형		집단화형		시설개량형		
	사업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지방교부금)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해자	명	사전환지여부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times m$ (당초: $m \times m$)		감보율	%		
	도로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도로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제약요인 해소계획									
병행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비	(백만원)		
조사설계추진현황		기본조사	년도	ha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	년도	ha	세부설계기관				
사업비수지예산서	구분	과목	총사업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비고
	수입	계	천원	2000가을	2001봄				
		국고							
		지방교부금							
	지출	지방비							
		계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추량비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5호 서식]

자체 가26-

경지정리사업 예산배정 결과 보고

【2001봄마무리(가을착수) 경지정리】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예산배정														
	시군	읍면			총 사업비				2000 가을착수				2001 봄마무리						
					계	국고	지방비	지방교부금	계	국고	지방비	지방교부금	계	국고	지방비	지방교부금			

주. 사업별(일반,간이,대구획) 구분

[별지 6호 서식]

총26-6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보고

□ 사업명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면적(ha)	총사업비	설계가격(A)	예청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시군	읍면							C/A	C/B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입찰일	낙찰자			계약사항			비고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 주. 1. 입찰방법 : - 일반경쟁(전국)은 “일반”으로 표기
 - 지역제한(도내)은 “도내”, 금액실적제한은 “금액”, 면적실적제한은 “면적”, 수의계약은 “수의”로 표기
 - 중복제한은 제한내용을 기재
 예) 면적 및 실적을 동시에 제한(중복제한)한 경우 “면적+실적”
 2. 일반경쟁외의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별지 7호 서식]

총26-45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명 :

지구명	위치		면적(ha)	사업시행자	총사업비(백만원)	공정계획(%)	진도 (%)			장비(대)		비고	
	시군	읍면					진주까지	금주까지			도자		백호우
								계	토공	공작물			

[별지 8호 서식]

총26-44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결과보고

[총 괄]

사업명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자 시 행 자	면 적 (ha)			사 업 비							주요변경 내용 변경사유	증가사업비 확보방안				
	시군	읍면		기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c=b-a)	재 원	총사업비			기지원액		증 감 (C-D)						
								기승인 (A)	계약 (B)	금회 승인 (C)	계	'00				'01			
합계							계												
							국 고												
							지방비												
							지방 교부금												
승인 신청							계												
							국 고												
							지방비												
							지방 교부금												
승인 결과							계												
							국 고												
							지방비												
							지방 교부금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결과 지구별 내역

□ 지구명 :

□ 위 치 : 시·군 읍·면 리·동 (사업시행자 :)

□ 면 적 : (기승인) ha (재개발: , 집단화: , 시설개량:)
 (변경안) ha (재개발: , 집단화: , 시설개량:)

- 변경사유 :

□ 사업비 : (기승인) 백만원 → (변경안) 백만원

- 변경사유 :

- 증액사업비 확보대책 :

(금액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예산지원액			증△감 (C-B)
	기승인 (A)	계 약 (B)	변경(안) (C)	계 (D)	2000	2001	
○ 합 계 - 국 고 - 지방교부금 - 지방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 보 상 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확정측량비 ○ 환 지 비							

주. 1. 농림부 지원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내서, 환지비는 < >외서

□ 공사변경 주요내역

- 정 지 : ha → ha, (증감 백만원)
- 용수로 :(총연장) km → km (구조물율: % → %), (증감 백만원)
- 배수로 :(총연장) km → km (구조물율: % → %), (증감 백만원)
- 농 로 :(총연장) km → km (자갈부설: km → km), (증감 백만원)
- 주요공작물(교량 등) : 개소 → 개소 (증감 백만원)
 - 구조물명 및 규격
- 기 타 : 복토(예: ha에 두께 cm~cm로 총 m³)등, (증감 백만원)

주.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의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는 총괄표로 대체

[별지 9호 서식]

총26-

경지정리사업 준공결과보고

【 일반경지정리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논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원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구역: ha		시.군구역 ha		기반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사업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진흥지역편입 완료예정일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기타						
병행사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세부설계		시공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수지예산서	구분	과목	총사업비		1차년도 ('00가을)	2차년도 ('01봄)	비고					
	수입	계	천원									
		국고										
	지출	지방비										
		계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간이영농기반개선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 치		면 적(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 원	
	시군	읍면	일반경지정리대상지내			일반경지정리대상지 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소계	진흥	진흥밖	소계	진흥	진흥밖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 적	ha	수혜면적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사업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주요 사업 내용	정 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용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배 수 로	m		구 조 물	m (구조물율 %)							
	객 복 토	ha,	cm	습 지			기 타					
병행사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세부설계		시 공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수 지 예산서	구 분	과 목		총사업비		1차년도 ('00가을)		2차년도 ('01봄)		비 고		
	수 입	계		천원								
		국 고										
	지방비											
	지 출	계										
		순공사비										
		자 재 대										
		보 상 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대구회경지 재정리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원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총	ha당	국고	지방교부금	지방비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기시행	년도	ha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수혜: ha	재개발형	집단화형	시설개량형				
	사업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지방교부금)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사전환지여부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times m$ (당초: $m \times m$)		감보율	%			
	도로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도로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병행사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년도		ha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	년도		ha	세부설계기관					
	사업시행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구분	과목	총사업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비고
				계	'00가을	'01봄				
		계	천원							
		국고								
	지방교부금									
	지방비									
	지출	구분	과목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일반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10호 서식]

총26-77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상황 보고

사업명 :

시행청	지구명	인원	확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교부액	미교부액		지연사유 및 대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참 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업무 지침

1.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면적이 50ha이상(경지정리사업의 경우 100ha이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업 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업기반공사는 위탁받은 사업중 공익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민간기업이 시행할 수 있다.
 - 민간기업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철저한 감독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기본조사 미흡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개발면적 100ha미만의 사업지구는 민간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촌용수개발·배수개선·경지정리·하구둑·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소득원 개발사업 등 2개이상 사업이 복합된 병행사업지구 및 농업종합정비사업
 - ② 토목·수문·지질·토질·토양·기계·전기·건축 등 다양한 전문직과 고도의 전문기술, 수리모형 실험 등을 요하는 사업
 - ③ 준용하천 이상의 주요하천이나 해안과 연계되어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 ④ 길이 100m 이상의 교량·터널·지방도급 이상 도로이설 등이 포함된 사업
 - ⑤ 용지매수 및 보상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등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

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 토목사무관 김일환)입니다.

1. 목 적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 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 재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km, 백만원)

구 분	'95-'98	'99	2000	2001 (예산안)
사업량	5.6	1.8	1.86	1.86
사업비	560,660	187,902	194,138	194,161
- 국 고	449,084	150,451	155,444	155,444
- 지방비	111,576	37,451	38,694	38,694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포장규모 : 경작로 폭 4m이상의 경작로를 폭 3m기준으로 포장
- 포장방법 : 비포장 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 공법을 도입하여 포장
- 확 장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 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나. 지원기준

(1) 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지원(별표 1)

- 인하지자체 :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국고 75%, 지방비 25%)

- 인상지자체 :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인 지방재정력 지수와 농업 지수(경지면적, 농가인구)를 감안한(7:3) 차등보조지표가 낮은하위 20% 해당 지자체(국고 85%, 지방비 15%)

(2) 지원단가 : 104,030천원/km

다.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 km,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어촌구조개선 특별 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94,161	155,444	155,444	-	38,717	-
사업비	1,860	193,585	154,868	154,868	-	38,717	-
조사설계비	(1,860)	576	576	576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4-9408-9)
- 시 도 : 농정국 (농림수산국)
- 시 군 : 건설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농어촌정비부(031-420-3246), 지사, 지부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구역 : 농업기반공사
- 시군구역 : 시장·군수

라. 사업시행절차

- 사업신청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사업대상지구 선정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 그림 1의 사업추진체계도 참고.

<사업대상지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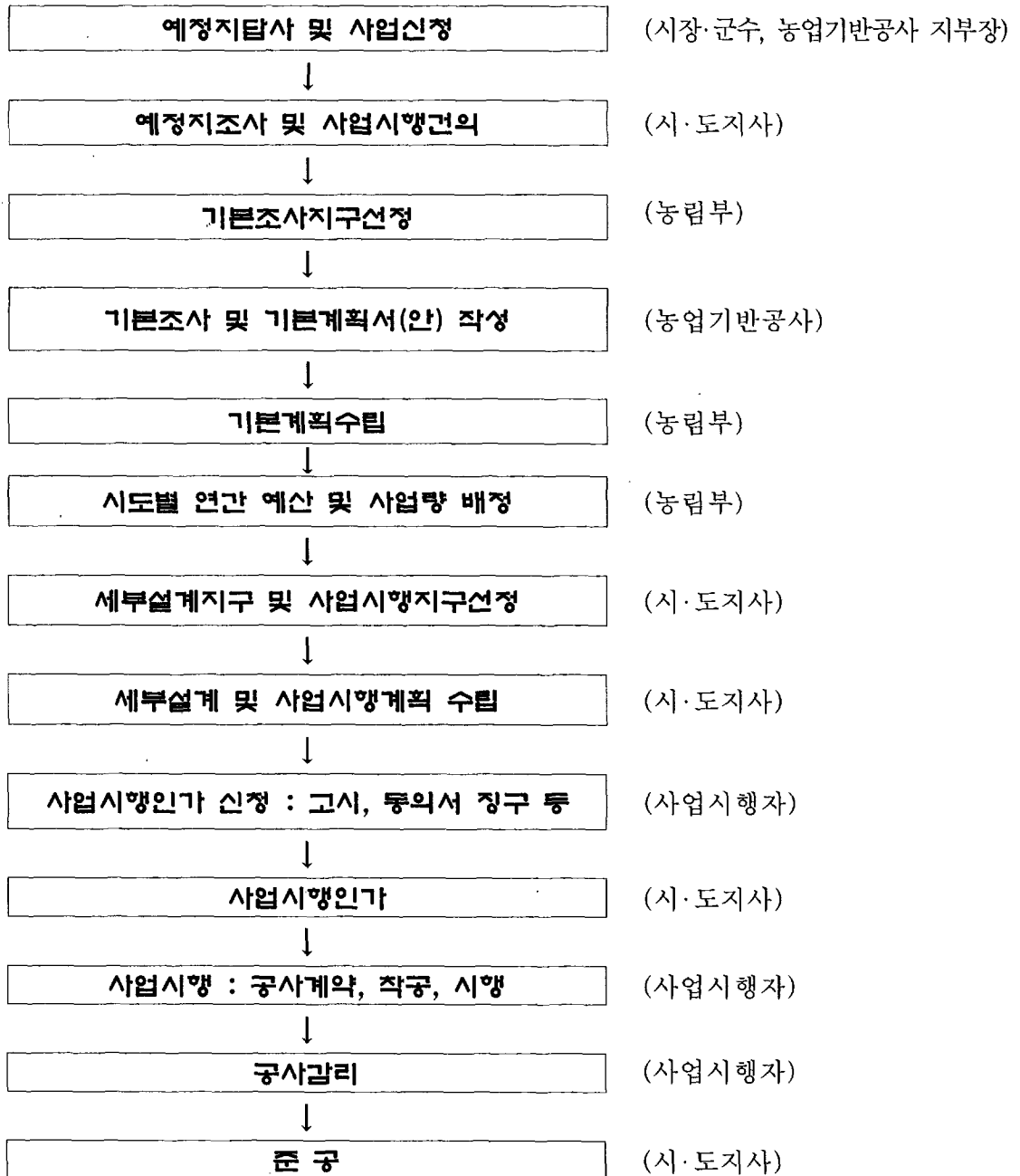
가. 일반 선정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여 한다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 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환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중형단구조물(교량,암거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중형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구환경지재정리사업 예정지로서 대구환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구는 제외

<그림 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 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환경지정리정리사업 완료된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중형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농업인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은 농업진흥지역 포함여부, 대구환경지정리 예정지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여 답사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이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지방비 확보 및 타사업 시행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4) 시·도지사는 지구별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매년 9월말까지)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기본조사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 기본조사를 실시함
 - 기본조사기관 : 농업기반공사

- (2)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
- (3)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4)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내용에 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6) 기본조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산정함
- (7)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시도별로 배정한 당해연도 착수 사업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함
- (2)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함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 협조요청하며,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게 세부설계를 직접 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3)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도로와의 연결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의 연결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
 - 농기계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3.0m이상)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등 설치계획 수립
다만, 국고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
 -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토록 계획
- (5) 세부설계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설계 및 시공요령(농림부, 농업기반공사)에 의하되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행자부) 등을 적용함
- (6)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들녘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대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토록 계획수립
 - 포장 대상노선의 중형단 구조물중 노후, 파손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병행시행토록 하며, 관개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일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라.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여부
 - 국고차등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 소요단가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여부
 - 타사업과 병행 추진할 경우 병행사업비 확보 여부 등

- (3)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추진

-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영농기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 지구내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노선간의 시행계획변경 또는 현지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사업비가 국고지원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부담함

바. 용지매수 및 보상

- (1) 경작로 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은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용지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부담함.

사.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함
 -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게 공사감리를 직접담당하지 못하고 다른기관에 위탁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협조요청하며, 농업기반공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함
- (3) 공사감리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아.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자.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1)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차. 기 타

- (1) 세부설계, 공사감리, 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관리요율 범위내에서 사용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다른기관에 위탁시행한 경우도 같음
-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사업완료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 유지관리 실시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는 도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서식번호	보고기일
○ 기본조사대상지 보고	1	전년 9월말
○ 예산배정 결과보고	2	배정완료후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3	인가후 즉시
○ 공사입찰 결과 보고	4	입찰완료후
○ 사업추진 상황 보고	5	분기말 익월 10일
○ 준공 결과 보고	6	준공 즉시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대상지 : 본 지침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건설과), 농업기반공사 지부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인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에 신청(구두 또는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건의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별표 1]

2001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지자체

구 분	해당지자체	보조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국고보조율 인하 - 5%인하	○ 7개시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75%	25%	
○국고보조율 인상 - 5%인상	○ 33개 시군 -충북(2) : 괴산, 보은 -충남(1) : 청양 -전북(7) :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수 -전남(13): 곡성, 구례, 장흥, 강진, 신안, 보성, 함평, 완도, 고흥, 진도, 해남, 무안, 장성 -경북(6) : 의성, 영양, 봉화, 청송, 예천, 군위 -경남(4) : 산청, 함양, 의령, 합천	85%	15%	

※ 기반정비사업 보조대상 지자체(167개 시·군·구) 중 인상, 인하지자체 이외지역 (124개 시·군·구)에 대하여는 기준보조율(국고 80%, 지방비 20%)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2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보고

우선 순위	들녘 명	지구 Code	지구 명	위 치		면적	지구내 농어촌도로현황				
				시군	읍면		총연장	포장		미포장	도로포장 계획 연도
								%			
합계											

경작로현황						사업구분	사업시행 예정자	관련사업 및 국고차등 보조율
노폭 구분	총 연장	포장계획			향후 계획			
		계	○까지 완료	%				
합 계								
6m초과								
5-6m								
4-5m								
4m미만								
계								
6m초과								
5-6m								
4-5m								
4m미만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 들 녘 명 :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들녘명으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들녘명
- 지구Code : 농림부 정비51340-114('98.5.14)호 또는 농림부 시설51350-10284(2000.9.21)호로 시달한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별 Code로 기재
- 지구명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명 기재
- 면 적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면적을 기재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면적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기재
- 지구내 농어촌도로 현황
 - 총연장 : 지구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면도, 리도, 농도의 총연장 (총연장=포장+미포장)
 - 포장 :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중 포장된 연장(%는 포장율)
 - 미포장 도로 포장계획 : 미포장도로 포장계획 연도(계획이 없을 경우는 미정으로 기재)
- 경작로 현황
 - 노폭별 지구내 경작로 총연장 및 경작로 포장계획 기재
- 사업구분 : 대중규모(면적 500ha이상), 대구획경지정리, 연계 및 병행, 일반, 기타지구로 구분
- 관련사업 및 국고차등보조율 : 대구획경지정리와 연계 및 병행지구는 해당사업 지구명, 국고차등보조 대상 시군일 경우에는 국고차등보조율

자체 가26-2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관련 사업 및 국 고 차 등 보 조 율
	시군	읍면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외 추가지방비와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로 외서로 작성
- 국고차등보조율은 국고차등보조대상 시·군에 대하여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수해 면적	농로 연장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국고차등 보조율	인 가 연월일	관련 사업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ha	km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외 추가지방비와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로 외서로 작성
- 국고차등보조율은 국고차등보조대상 시·군에 대하여만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총26-6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사 업 량	총사업비	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 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단, 노선별로 분리 입찰한 지구는 노선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 명	위 치		사업 시행자	○년계획		○월계획		○월실적		진도(%)		부진 사유	비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진도는 사업량 기준
- 부진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준공결과 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 명	노선명	위 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포장재료	인가 및 변경승인 (A)			준공(B)				증감(B-A)				중감 사유	관사 런업				
		시군	읍면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이외의 추가된 지방비,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등 관련 사업비는 ()외서 작성

7 배수 개선 사업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 토목사무관 김종하) 입니다.

1. 목 적

-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 수렁논 또는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작업환경 및 작물재배 토양환경을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재 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98	'99	2000	2001(예산안)
사 업 량	27	8	9	11
사 업 비 계	676,181	202,500	218,100	222,600
- 보 조	676,181	202,500	218,100	222,600
-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	-	-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지표배수개선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2) 지하배수개선 : 수렁논 또는 저습답에 지하배수 암거나 흡수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어 작물의 생육에 알맞게 토양수분을 조절
- (3)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의 예상되는 수해상습 농경지
 -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함
- (4) 지원조건 : 국고 100%(농림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한함)

나.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계		222,600	222,600	222,600	-	-	-
사 업 비	113지구	221,410	221,410	221,410	-	-	-
기본조사비	5,000ha	1,190	1,190	1,19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기반조성계)
- 농업기반공사 : 농업기반공사 지역사무소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청장, 농업기반공사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도지사의 예정지조사,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착공 및 완공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는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농촌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수해면적이 50 ha 미만인 경우는 시·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거나 자부담으로 시행함. 다만, 극심한 수해피해 지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 가능함.

(2) 우선순위.

-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습침수지역
- 주민호응도, 타법·타사업저촉등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는 지구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10년간) 등을 기술함.

다. 예정지 조사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면적과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 (3)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해면적이 50ha이상이거나 경지정리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기본조사를 신청함.

- (4) 수해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라.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수립

- (1) 수해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3)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역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함께 1개지구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 (4)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 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농업기반공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6)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7) 기본조사자는 지구별 수해면적이 50ha미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계속조사여부를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8)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천의 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

나)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

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라) 수혜지역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9)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를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10)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1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12)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지침”(5. 경지정리편 참고)을 준용할 것.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설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비 및 수혜면적이 10%이상 증감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 및 구조, 배수간선의 단면 및 노선 등 주요사항 변경 등

- (5) 세부설계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평년빈도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6)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 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7)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이때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실시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출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에정자를 사진에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시행인가보고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3) 지시조건의 보완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FAX(02-507-3964)로 상황 보고하여야 함.

사. 공정 계획

- (1)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의 공사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시 기간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시행계획의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보고토록하며 (단가변경은 가급적 계획변경에 우선하여 별도 처리토록 함.), 물량변경에 의한 계획변경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은 조 제3조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구조 변경과 주요 배수로 노선변경, 제수문·취입보 등 유수장애 시설물의 신설 및 위치 변경
- (2) 준공지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변경을 억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3)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작성요령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 제4-11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4)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결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차. 공사감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나)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다)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 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타. 기타사항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미정비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개수사업(국가·지방1급·지방2급)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연계성을 검토함.

파.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3)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다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하.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

(1) 예정지 조사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보고시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행지구임을 명기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조사를 요청함.

(2) 기본 조사

수해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병행지구임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농업기반 공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세부 설계

가)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배수개선부분과 경지정리부분을 총괄하여 설계하되, 배수개선사업계획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함.

나) 병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계획은 하류부 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간선으로 하되,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토량은 경지정리사업에서 유용하도록 계획함.

다) 복토계획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배수로(인수로)부지는 감보처리토록 계획함.

라)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해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 변경 등이 불가피할 때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시설관리과)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

마) 공정계획수립

병행지구 하류에 위치한 배수장, 배수문 등의 시설물이 홍수배제에 지장 없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지정리공사를 실시토록함.

(4) 예산 지원

- 가)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로 지원 및 정산함.
- 나) 배수개선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경지정리사업 해당 물량,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별도로 산출하여 ()내서로 표시함.
- 다) 경지정리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배수개선사업계획상의 경지정리사업비에 의거한 사업비 수지예산서, 공사비 내역 등에 []외서로 표시함.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도지사의 예정지조사,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착공 및 완공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2)과 같음

(6) 기 타

기타사항은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통합지침서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함.
-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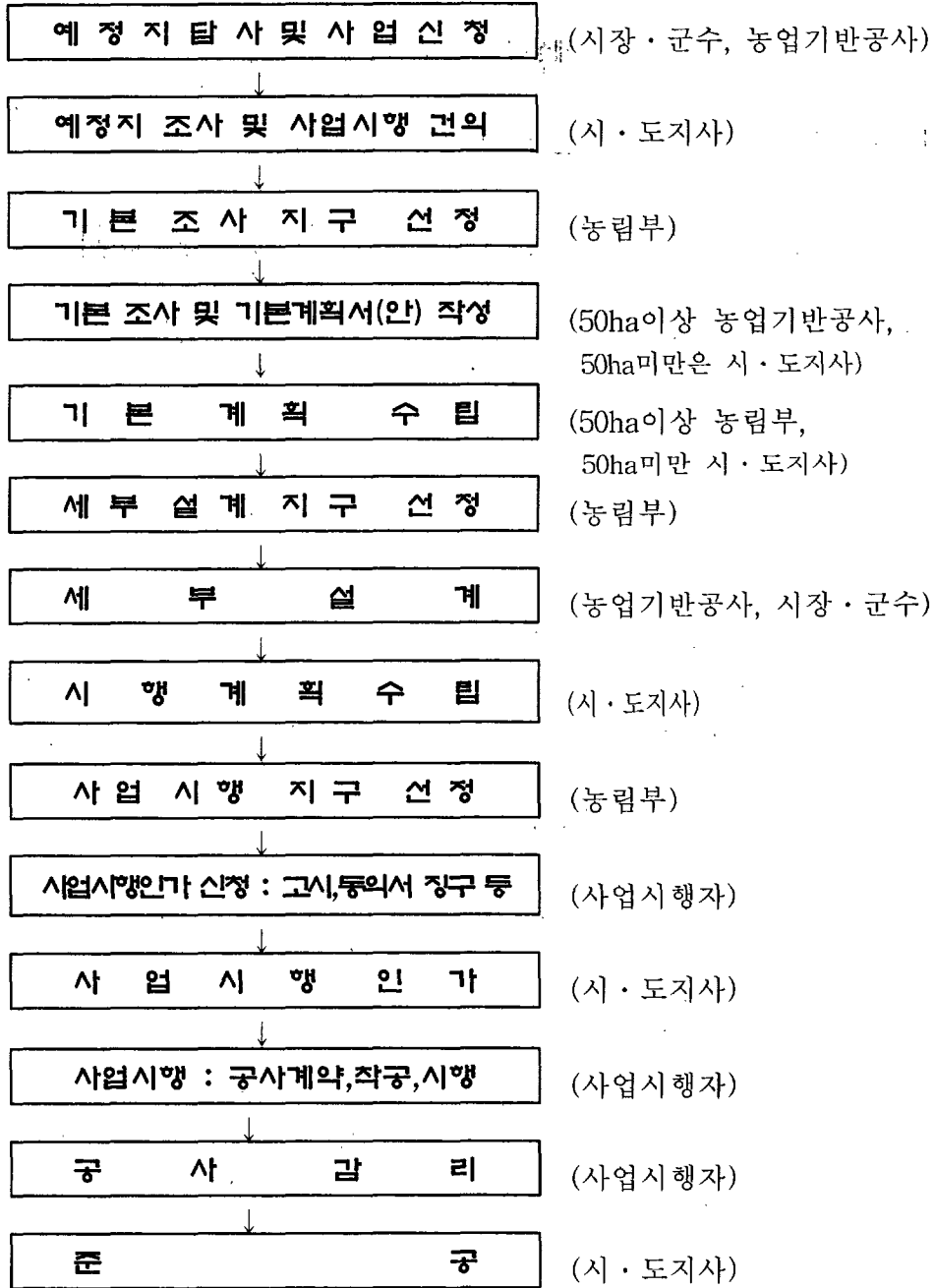
나. 보고 및 기타

-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포함)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3) 준공처리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4)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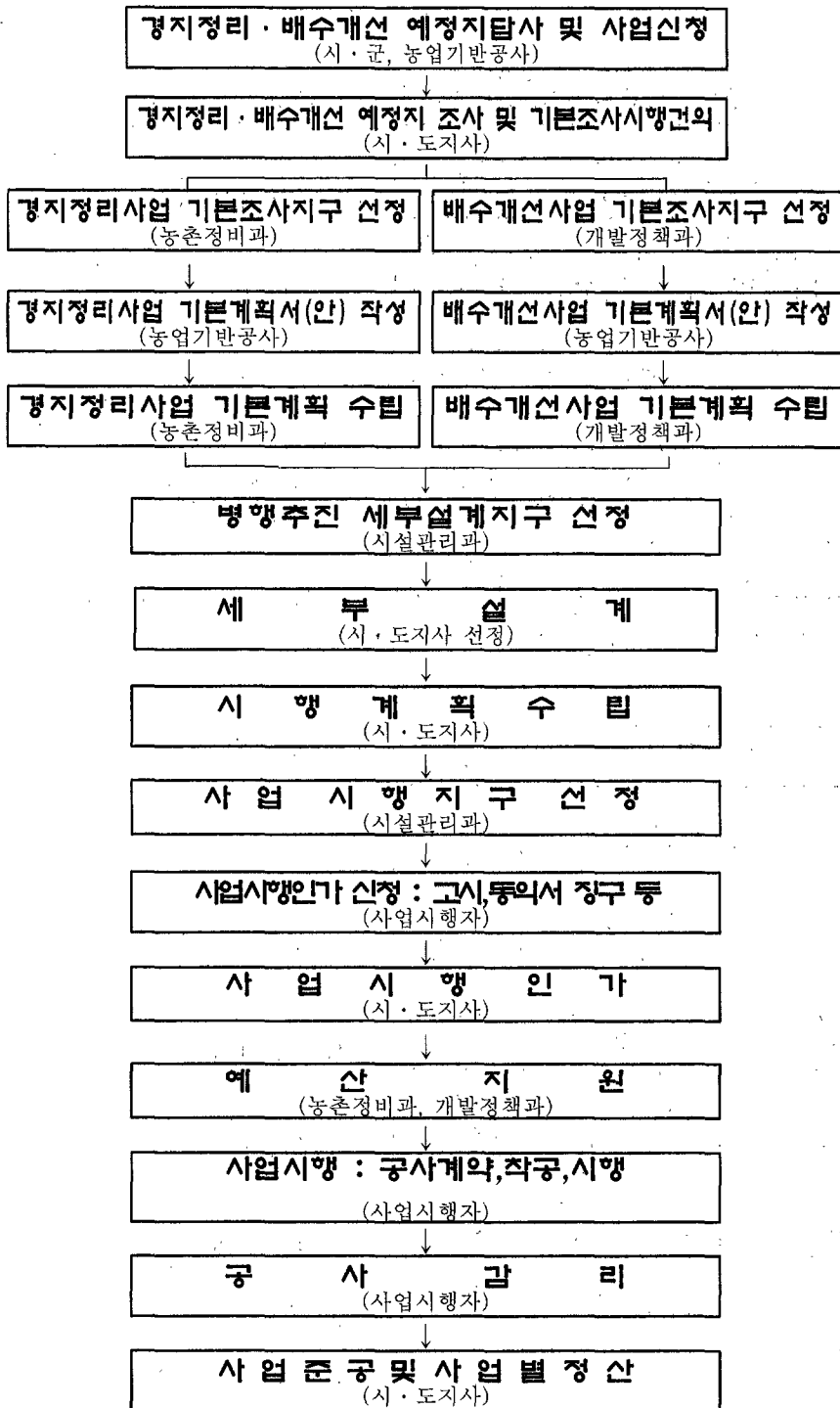
배수개선사업 추진체제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 표 2 >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총26-68

배수개선사업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업자 : (인), 작성자 : (인)

○위 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자 :

○지 구 명 : (내지구명 :), 면 적 : ha,

○ha당 중수량 : M/T,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중	년까지	년이후	년도	공정(%)
과 목	공 종 별	승인액	정 산 액	잔사업비	예 산 액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배수장부					
	- 평야수로					
	- 배수로					
	- 배수문					
- 자재대	소 계					
	-					
	-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월 별 계 획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별지 제2호 서식]

총26-46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구분	면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연도예 산
	시·군	읍·면							
계									
실행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진사유				
	계 획	실 적							
계									

- 주 : 1) 배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총26-69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치 :

○ 면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및 규모

- 배수장 : m x m x 대 (Q = m³/sec), 유역면적 ha
 m x m x 대 (Q = m³/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승수로 : m (최대단면 : b= , B= ,h= ,H=)

- 배수문 : m x m x 려, SILL m, 유역면적 ha,
 m x m x 려,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3-2호 서식]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지 기	고 방 타								

나.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별지 제4-1호 서식]

총26-70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 · 결과보고

심 사 서				
1. 지 구 명 : 2. 위 치 : 3.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배수장 : 개소, 배수분 : m× m× 런, 배수로 : km, 승수로 : km 6.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7. 공사개요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4-2호 서식]

9.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 및 심사의견
< 주의사항 > 승·배수로 변경시는 계획 변경 전 후의 수로조직표와 표준단면도를 첨부 또는 제시		

[별지 제4-3호 서식]

10. 지시조건
11. 심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국 고							
지 방 비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평 야 부 · 부 대 공 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 설계 비							
- 공사 감리 비							
- 사업 관리 비							
- 잡지출 · 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공사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 고
공사명	공종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6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 ²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7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정 산 내 역			보완전 잔공사비	보완후증감액				비고
공사명	공종별			년까지	년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계	
합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단 가			물량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단가개정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9호 서식]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물 량			단가	공사비	공사물량이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 1. 공사물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2. 본 조서는 자재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3. 공사물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4-10호 서식]

설 계 자 의 견			
당초 설계자 의견		금 회 설 계 자 의 견	
당초설계자 : 소속		성명	인
금회설계자 : 소속		성명	인

-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만 작성

[별지 제4-11호 서식]

농림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검토 내역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검토의견	
		확 인 자 : 소속	성명 인
		검 토 자 : 소속	성명 인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 토목사무관 박병태, 토목사무관 김종하)입니다.

I. 수리시설개보수

1. 목 적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국가관리방조제중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흠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오염물질제거 및 부족한 저수량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수지, 방조제 등 균열·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재해위험이 높은 수원공을 우선하여 개보수
- 양·배수장은 노후되고 작동이 잘안되는 시설 개보수
- 물을 공급하는 수로로서 물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흠수로 구조물
- 저수지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물이 부족한 저수지 준설(저수지준설사업)
-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 단면 보강
- 노후 및 작동이 잘안되는 배수갑문 개보수
- 집단화된 주변 밭도 포함하여 개발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지구수, 백만원)

사업명	구분	'92~'97	'98	'99	2000	2001예산(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량	511	110	120	95	114(366)
	사업비계	416,875	219,777	229,291	247,000	252,500
	- 보조	416,875	219,777	229,291	247,000	252,500
저수지 시설	사업량	1,019	89	95	80	80
	사업비계	95,736	8,000	8,000	8,000	8,000
	- 보조	95,736	8,000	8,000	8,000	8,000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량	31	9	9	10	7(29)
	사업비계	93,903	26,142	24,736	27,062	28,000
	- 보조	93,903	26,142	24,736	27,062	28,000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량	189	157	70	86	90(271)
	사업비계	59,045	40,000	40,000	40,000	40,000
	- 보조	22,548	28,000	28,000	28,000	28,000
	- 지방비등	36,497	12,000	12,000	12,000	12,000

※ () 시행지구수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I.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
- 물 관리시설 현대화

(2)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3)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4)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5) 2001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366	252,500	252,500	252,50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농업기반공사 지부

(2) 사업 추진절차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실시 (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 (농림부)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표1과 같음.

< 사업추진 >

(1) 사업대상지구 선정

- 수리시설개보수 정의
 - 농업용 수리시설로서 노후되거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타사업으로 설치한 흙수로 구조물화등을 포함함.
- 선정기준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를 급수하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설도 대상이 됨.
 - 대구획경지정리, 배수개선, 지표수보강개발 등 타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사업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저수지
 -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 시설의 운용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
 - 시설물의 노후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생활오수 등으로 수질오염 용수로

(2) 시설관리자 개보수사업 건의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3종시설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할 경우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사유와 농업진흥지역 면적,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또는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정부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 및 집단화된 발용수의 개발가능성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예정지 조사시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 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용·배수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에 따라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수해대책을 위하여 유역 또는 당해 시설의 체계나 계통별로 조사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저수지》

- 물 수지계산이 10년빈도에 적합한지와 단위저수량이 현재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사면 안전도 부족, 누수 등), 여수토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지역 수자원의 수급에 대한 전망과 수질의 변화 전망

《양수장》

- 하천의 수량감소와 수질의 악화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대책
- 홍수시 침수 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배수로》

- 수자원 이용·배분 체계의 개선 방안
 - 용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계획도와 수로조직표를 작성한 후 개보수 구간을 표시하고, 주요수로의 상류부터 하류의 순서로 시행하는 계획(안) 다만, 배수로는 하류부터 상류의 순으로 계획
 - 토공수로를 최소단면의 구조물로 하고, 단면축소에 따라 생기는 부지는 유지관리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안)
 - 주변의 밭개발 가능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계절 밭용수 급수대책
 - 용수로개보수사업 시행구간에 오페수가 유입되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우회수로 설치 등 오염방지대책을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
- 시·도지사는 시설물개보수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해당분야별로 시설현황, 개보수사유, 전문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의 자체기술검토가 어려울 경우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자가 부담함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종시설을 개수하는 경우
 - 저수지 제당을 덧쌓기 하면서 물넘이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저수지 물넘이 형식을 측구식에서 게이트, 사이폰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홍수배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배수장을 확장하거나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또는 감조구역에 설치된 농림부 소관의 배수갑문을 개수하는 경우
 - 수원공이 500ha 이상을 관개하는 지역의 용수로와 200ha 이상을 배수하는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경우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나)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기본계획수립 요령
 -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원공과 평야부(용수로)로 분리하여 기본계획수립
 - 수원공은 단위시설별로 수립함을 원칙으로하되, 총사업비가 10억원미만 소규모지구는 10억원 수준으로 타수원공시설, 용수로개보수를 포함하여 일괄 계획수립
 - 용수로는 수원공별로 전체계획(Master Plan)을 구상하고, 지구별 사업비를 20억원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수립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보수하여야 할 수리시설은 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은 기본계획서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 주변의 발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계절 발용수 급수대책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원공
 - 1순위 :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2순위 :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관리 지구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수리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시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재해위험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시설의 노후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 용수로
 - 1순위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산비탈 성토구간이 수시로 붕괴되는 수로
 - 2순위 : 물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보고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되 세부설계 추진에 따른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조사 측량 과정에서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용수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재정부담, 시설 내구년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사전 공급배분), 자연형태 유지로 환경친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다만,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원형암거시설은 유지관리를 고려 충분한 크기로 계획
- 세부설계실시자는 저수지, 양·배수장 설계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 시에는 제공하여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용역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 설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농림부장관의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신규착수지구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계획 고시 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고시에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등이 있을 경우 토지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동의서는 동법 제11조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첨부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6) 공정계획

- 시·도지사는 시행중인 개보수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준공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배수갑문, 제수문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착공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세밀히 재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시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은조 제3호 규정으로 정하는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시 계획되지 않은 타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추가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중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준공지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변경을 억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책정되어 잔사업비 전액을 예산배정받은 지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명년도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결과보고하는 사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공중에 한하며, 신규 공중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 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물량보완등 시행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9)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가 직접담당하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과 장기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해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10)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에 계상된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정밀안전진단으로 개보수하는 저수지는 조기완공토록 집중 지원함.
- 저수지 및 양·배수장 시설은 재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시·도지사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11) 사업 평가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12) 사업 준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13) 기타 사항

- 동일권역 내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검토함.
-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개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계획과 추진상황의 연계성을 검토함.

II. 저수지준설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
- 저수지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

(2)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담수호 포함)

(3) 지원조건 : 국고 100%

(4)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5)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계		
		계	보조	융자			
80	8,000	8,000	8,00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농업기반공사 지부

(2) 사업 추진절차

- 예정지신청(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시도지사)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농림부)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표1과 같음.

<사업추진>

(1) 기본방향

- 준설대상저수지는 가뭄상습지역의 주수원공중 토사퇴적량이 많아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를 우선하여 추진
- 저수지준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몰량을 조사하고 규모화 가능성을 판단한 후 지구선정(다수지구 분산지원 방식은 억제)
- 각 사업은 집중지원하여 조기 완공위주로 추진
 - 계속지구는 우선 마무리
 - 신규사업도 가능한 완공 위주로 추진
- 준설공사 지역과 사토장관리 철저로 부실공사를 방지
- 저수율에 따라 준설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시행

(2) 대상저수지 선정

(가) 선정기준

- 2000년 준설대상지 조사결과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지구
-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준설여건양호, 사업비저렴, 사업효과 높은지구
- 준설토를 이용할수 있는 지구
- 사토장 확보용이 및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 준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나) 우선순위

- 근본적으로 단위저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장기간 매몰되고, 다른용수원은 없어 가뭄피해가 빈번한 저수지를 우선 선정함.
 - 단위저수량은 적고, 유역배율은 큰 저수지
 - 매년 만수가 쉽게되는 반면 가뭄시는 쉽게 고갈되는 저수지
 - 저수지 유역내의 토사 유출은 많고 장기간이 경과한 저수지
 - 현재 실경작면적 대비하여 단위저수량이 적은 저수지(400mm수준)
- 단위저수량이 400mm~650mm 범위이면 「농업용수개발필요수량기준」의 10년빈도 단위저수량과 비교하여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 강우량(측후소별), 유역배율, 삼투량, 수로손실, 임상상태
- ※ 수리시설물 수원공 일람표(1987. 12. 발간) 내한능력 조사 자료 등을 활용.
- 시급성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는 순연
 - 하천을 보충수원으로 평야부를 양수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 수해면적이 저수지 축조당시 보다 많이 감소된 저수지
 - 2개이상 저수지가 수계의 상하류로 연계되어 저류량이 충분한 저수지
 - 퇴적된 현재의 단위저수량이 충분한 저수지 (650mm수준)
- 중장기계획에 의한 준설대상지중 시급성과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3)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설물관리자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물 부족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가뭄지역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여 준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선정(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

(4)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정지 조사시 저수율을 고려하여 준설효과와 공사의 난이도 파악
- 사토장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기본 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소규모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필요저수량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5)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신규착수 예정지로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토록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측량설계비는 사업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함유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골재의 품질 및 매장량에 대한 조사 실시
 - 저수지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과 적정한 공법선정
 -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하여 가능한한 유용토록하여 사토비 절감 (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사토장의 선정시 홍수시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역 이외의 장소에 사토장 선정

(6)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

- 저수지 및 담수호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함.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동의서는 동법 제11조상의 참가자격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첨부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사발주 등 : 사업시행자(농업기반공사)

(7) 공정계획

-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한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며, 육상작업으로 준설이 곤란할 경우 수중준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
- 가능한 관개기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 사업관리

○ 적정 사업량의 추진과 조기완공

- 사업은 조기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대규모지구는 저수율 변동,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적정사업량을 계획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당해년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 준설현장 관리

- 사업착수전 내용적측량을 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좌·우측에 20m 간격 격자망의 기준점을 각각 상하류로 2개소 설치하고, 만수위(물넘이 표고)를 기준한 假BM을 설치함.
- 내용적측량(준설지역)은 저수지 평면도 또는 지적도에 水準측량 결과를 표시하고, 水準측량은 기준점에서부터 20m간격으로 종횡단의 격자망 위치에 대하여 지반고를 측량함.

다만, 소규모 저수지에서는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할수 있음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함

○ 사토장 관리

- 사토장 위치도(1:1200) 및 2개 방향 사진 (pole대를 비교) 제출
 - 위치도에 운반거리 및 사토량 기입
 - 위치도 및 사진 별도 첨부
- 사토장 종횡단도 및 평면도 제출
 - 사토장 가B.M 위치 및 지반고 기입
 - 사토량 산출내역서 첨부
-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검 사

- 저수지내 검측은 농업기반공사 기술직원 2인이상이 하며, 공사를 일시 중단시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저수지 평면도 및 내용적계산서(또는 종횡단도)에 날인후 연도말 검정서류로 제출함.
 - 저수율이 상승하여 수중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하여야 함
- 사토장 검측을 실시한후 용적을 산정하고 연도말검정 서류로 함께 제출함

구 분	준설지역	사 도 장
착공전	○저수지 평면도 위치표시 ○수준측량 또는 종·횡단면도 ○사진	○지적도 면적 산출 ○지반높이 측정(가B.M 설치) ○종·횡단면도 ○사진
공사중	○사진	○사진
공사후	○측량 성과품 - 표고및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작업일지(기종, 대수, 토량 반출대장) ○사진	○측량 성과품 - 표고가 기재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사진

(9)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국고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준설사업비에 재투자하여야 함.

(10) 용지매수 및 보상

-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집행.
- 보상 업무는 농한기에 시행하여 작물보상이나 실농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1) 공사감리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시공은 관련 지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기함.
- 공사감리비는 사업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

(12) 사업비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사업공정 추진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함.
- 준설토가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절감된 사업비를 공제하여야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13)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Ⅲ. 방조제개보수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 배경

-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관리(국가·지방)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필요

(나)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국가관리·지방관리방조제

(다)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라) 지원조건 : 국가관리 : 국고 100%, 지방관리 : 국고 70%, 지방비 30%

(2) 2001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300	68,000	56,000	56,000	-	12,000	-
국가관리	29	28,000	28,000	28,000	-	-	-
지방관리	271	40,000	28,000	28,000	-	12,000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4) 사업추진절차 : [별표1] 참고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예정지신청)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 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및 착공 → 준공

<사업 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에 반영된 지구

(2) 우선순위

- 안전진단 결과 재해취약요소가 있어 재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 해일, 호우 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추진>

(1)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조사신청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지방관리방조제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의 반복성, 위험성, 노후정도,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 시행방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보수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 포함)
 - 사업별 추정사업비 현황
 - 사업별 추정사업비 내용(공사비포함)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사진포함)
 -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 또는 예정지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시 시설물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계획수립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조제 및 부속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중에 대하여는 제외함

(3)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할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B.M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필히 설치하여 보존 관리토록 함.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인가후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 위치평면도(1/50,000, 1/25,0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보수, 보강 단면(시행전후 구분)

(2) 공정계획

-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 수립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변경 등
-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 확보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구조도)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변경 전후 비교가 쉽도록 작성)
 - ④ 보고서식(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5)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 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 확인(사진 촬영)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사업비지원>

(1) 예산의 지원

- 재해대비 긴급성 고려 및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6.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주요공종의 사업 시행전후의 사진등을 기록 보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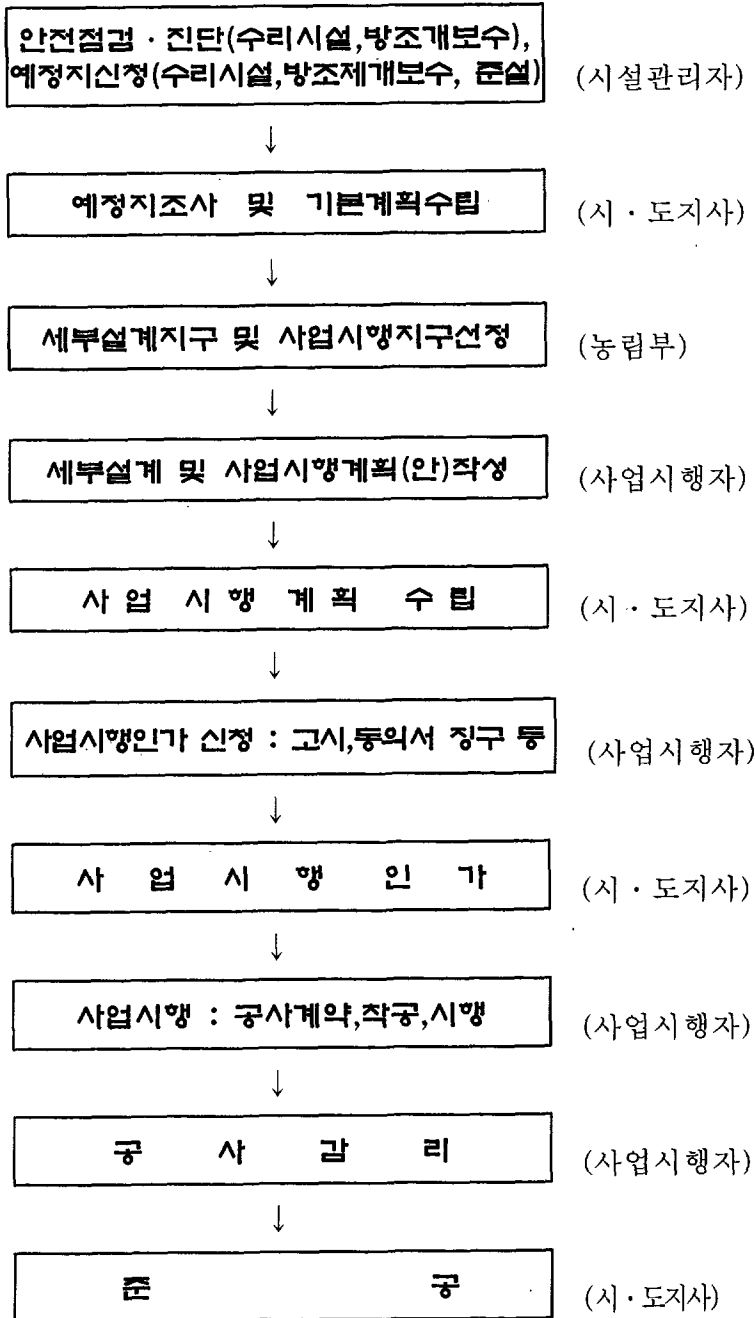
(2)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 보고(시도총괄표 포함) : 즉시보고 (별지 제1호 및 5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 보고 : 즉시보고 (별지 제4호서식)

[표 1]

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1호 서식]

총 26 - 13

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수리시설개보수, 방조제개보수)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착수연월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수리시설개보수, 저수준설, 방조제개보수)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지구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 수해면적 : ha
- 사업기간 : 년 ~ 년
- 사업시행자 : , 시공회사(토목: , 기전:)
- 주요사업내역(예)
 - 방조제(제당) : 총연장 m, 높이(→ m), 폭(→ m), 사석 m'(m')
 - 배수갑문(수문) : 기존 련 → 보수 련(교체 련, 보수 련)
 - 수제공(용수로) : 신설 개소, 보강 개소
 - 기 타 :
- 공사추진현황(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98 까 지		'99 계 획		2000이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국 비								
지 방 비								
○순공사비								
- 방조제								
·								
- 배수갑문								
·								
- 수제공								
·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비								
○축설비등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수리시설개보수, 방조제개보수)

(시·도)

지역 사무소명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개보수공종		총사업비	기 정산액
		사·군	읍·면	리·동			수원 공명	용수로 (km)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 3) 방조제개보수는 수원공명에 방조제연장, 용수로에 배수갑문 련수 표시
- 4)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산액	실행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2-2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저수지준설)

(사업량 : 천m³, 금액 : 백만원)

지 사 무 소 명	지구명 (저수지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추진현황				부진 사유	
		시 군	읍 면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계 획		실 적			진 도 (%)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방조제개보수)

1. 사업지구 현황

- 지구명 : (시설명 :)
- 위치 :
- 총사업비 : 천원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001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방조제개보수)

심 사 서

1. 사업명 :
2. 위치 :
3. 수해면적 : ha(○○지 ha, ○○지 ha)
4. 개보수공종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사업비 (천원)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증감		
	당초	변경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 비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 1) 방조제개보수는 순공사비 구분을 방조제, 배수갑문 등으로 함
- 2) 자재대는 순공사비와 구분하지 말고 순공사비에 포함 작성

[별지 제4-3호 서식]

용자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 산 액	당 해 년 도	차 년 도 이 후	계	단기인상	단기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

(시설 관리자 : 농기공 ○○지부)

1. 시설개요

- 저수지명 : (주, 보조, 부속 수원공 구분)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준공인가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제원(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 H= m, 길이 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총 저 수 량 : 천^m, 유효저수량 : 천^m, 사수량 : 천^m
 - 단 위 저수량 : mm

2. 준설 사업 계획

- 저수량증대 목표
 - 유효저수량 : (현재: 천^m) → (준설후: 천^m)
 - 골재매각 수익 발생시 : 골재명 천^m, 수익 백만원
 - 농경지복토, 성토재 유용시 : 용도명 천^m, 수익 백만원
- 현재의 저수율 : . % (년 월 일 현재)
- 준설사업계획

구 분	총계획	'97까지	'98실적	'99계획	2000이후	비고
사업량 (천 ^m)						
사업비 (백만원)						

※ 준설 1^m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시행인가일 :
- 계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2001. . ~ . [백호우: 연 대(일평균 대) 트럭: 연 대(일평균 대), 도차: 연 대(일평균 대)]
- 수익금 재투자 계획 : (언제 어느지구에 얼마 투자계획인지 표기)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대책)

I. 대·중규모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류성곤, 시설서기관 이원규)입니다.

1. 목 적

수해면적 50ha이상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타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년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96	'97	'98	'99	2000	2001 (예산안)	
사업량(천ha)	90	6	5	5	2	7	4	
사 업 비	계	4,335,498	435,344	338,413	443,022	301,465	308,322	309,864
	보 조	4,335,498	435,344	338,413	443,022	301,465	308,322	309,864
	용 자	-	-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	-

※ 주 : 농촌용수개발 10개년계획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대규모 용수개발 : 수혜구역 3,000ha 이상
 - 중규모 용수개발 : 수혜구역 50 ~ 3,000ha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추진 29지구
-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1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9,921	309,864	309,864	309,864	-	-	-
- 대 규 모	7,581	32,464	32,464	32,464	-	-	-
- 중 규 모	35,384	215,707	215,707	215,707	-	-	-
- 가뭄상습지 특별 대책	16,956	61,693	61,693	61,693	-	-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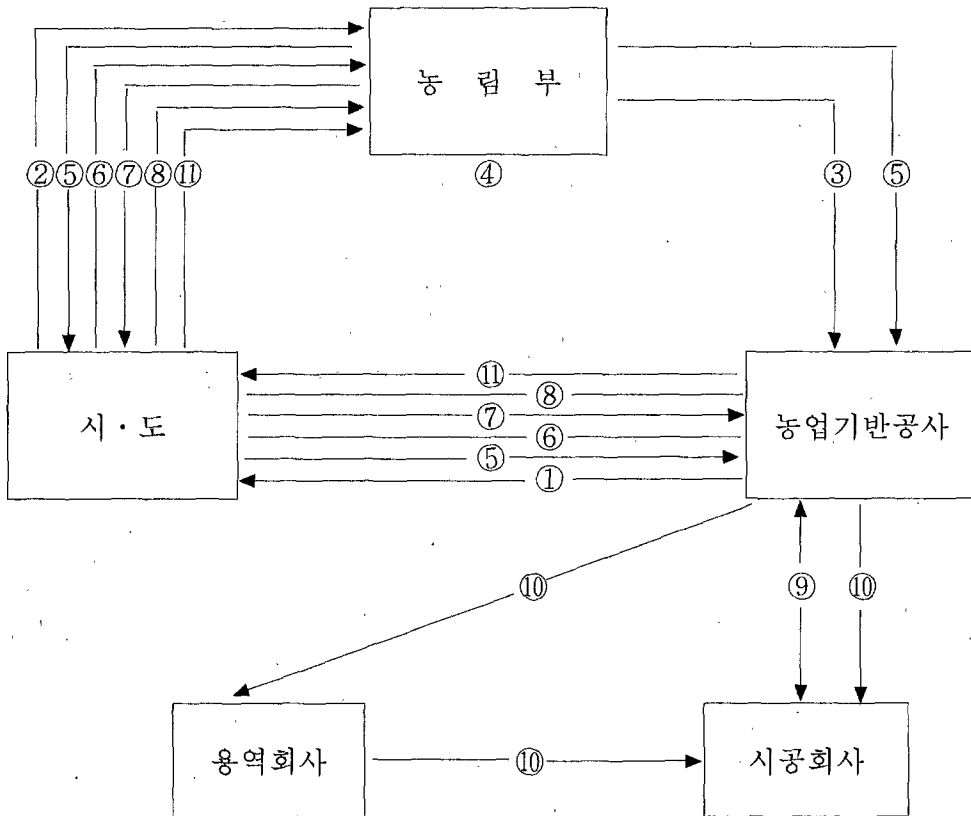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 (전화 : 02- 504- 9402, 9403)
농촌용수과 (전화 : 02- 504- 9406, 9407)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지사 및 지부(사업관리부, 기반조성부)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체계

(1) 체계도



(2) 체계도 설명

- ① 사업시행신청
- ② 예정지 조사보고
- ③ 기본조사 지시
- ④ 기본계획 수립
- ⑤ 세부설계 지시
- ⑥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 ⑦ 신규지구결정 및 예산내시
- ⑧ 사업시행인가 및 보고
- ⑨ 공사발주 및 공사 시행
- ⑩ 공사감리위탁 및 감리
- ⑪ 사업추진상황 및 준공 보고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2)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하에 선정 (도시개발계획등에 포함되어 타용도로 전용될 지역은 제외함)
- (3) 신규개발면적 비율이 50%이상이거나 주수원공의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구
- (4)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 (5)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지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함.
- (사)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설치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

(2) 양수장

-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압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합이 원칙임
- (나)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사업시행예정자(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3)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4)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군농업·농촌발전계획포함 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다.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 (2)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 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5) '99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을 참고하되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6)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7)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 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8)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농업기반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 (9)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조사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10)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 (1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12)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5.경지정리편 참고)을 준용할 것.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2)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세부설계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 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7)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통보한다.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사업비가 부족한 지구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비 또는 타지구에 배분된 사업비에서 조정하여 년내 준공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는 국고 추가지원 또는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 시행계획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나)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다) 터널, 댐등의 특수한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라)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마) 댐,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계획변경시 공사비 증감액이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 (4)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물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물지내 오염원은 담수천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정작을 방지할것.
-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것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농업 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6)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서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 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용수 51317-828('96.10.4) 참고)
-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차. 사업준공 및 검사

- (1)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3)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
- (나)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라) 시·도지사가 예산을 배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하여야 함.
- (마)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바)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사)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 (아)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자)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타.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자금운용 및 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4) 타법 관련사항

-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제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 함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예산확정 또는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2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 사업시행자 : 예정지답사보고서
- 시·도지사 : 예정지조사보고서

마. 기타사항 :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사업시행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효과, 위치도, 지역개발여건, 지역주민의견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시행자	위치			지구명	주요시설명	수해면적 (ha)	총사업비	년까지	년 계획					년 이후	비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도

년 월 일

(단위 : 천원)

사업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시·도 자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부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 2000까지 : ha ○ 2001년도 : " ○ 2002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감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도

(단위 : 천원, 년 월 일 현재)

위치 시군	읍면	사업 시행 시 지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면적	총사업비			기 정 산 액	잔 액	당해년도예산			실 형 액	진도 (%)		공 후 누 계 형 % %	비고 (부진 사 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으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호서식]

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및 승인신청시 도지사가 첨부할 서류

1.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2.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장관에게 승인신청시만 첨부)(별첨㉔서식)
3. 심사서(기술 및 관리)
4. 사업계획 개요
5.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6. 보조금산출내역
7. 보조금 재원별내역
8.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등 사무비에 대한 항목별 산출및 변경내역
9.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10.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11. 지급자재조서
12. 공사수량 이동조서(별첨㉕서식)
13.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14.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서식 ㉞]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

공 종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시·도지사 검토의견

- ※ 1.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과 도지사가 승인한 내용을 기재한다.
 2.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기재할 것

[별지서식 ㉟]

공사 수 량 이 동 조 서

공 정	규 격	단 위	공사수량		증감내역			사 유
			당초	변경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잡 비 기 타 계								잡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지급자재 수불부

결 재		년월일	품명 (공종)	규격	입하량		출고수량			사용보고량			재고량		비고
책임자	담당자				금회	누계	번호	출고	누계	번호	사용	누계	출고	사용	

중규모용수개발사업지급자재공급상황추진상황

년 월 일 현재

도	사업 시행 자	지구 명	자재명	총 소요량 (A)	분기별계획 (B)								(B/A) 누계진도	비고 (부진사 유)
					1/4		2/4		3/4		4/4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양회 철근 기계,전기	대 kg 조										

II. 지표수보강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의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 발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5~'98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사업량		10.3	2.7	1.0	0.6
사업비	계	110,356	30,000	30,000	32,325
	보조	96,081	30,000	30,000	32,325
	융자	-	-	-	-
	지방비	14,275	-	-	-
	자부담	-	-	-	-

* 사업량은 준공면적 기준임

* 사업비는 '96까지 국고 70%, 지방비 30%, '97이후 국고 100%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수원공 시설이 열악하거나 내한능력이 부족으로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되는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곡생산 기반 확충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 시설규모 확장

(3)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4)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비등 추가투입지구 우선지원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지표수보강개발	85지구	32,325	32,325	32,32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 (농정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 시·군 : 건설과
- 농업기반공사

다. 자금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라. 사업시행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지하수이용 시설 제외)중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시설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농업기반공사관리 구역으로 편입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지구 선정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시설도 개발가능
-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 용이한 유역배율이 큰 저수지 및 갈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양수장 및 취입보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2) 사업시행예정지 신청

(가)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나)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한능력조사표,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포함 여부, 위치도 등을 첨부.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 시·도지사는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전문기술자 참여하에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강개발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예정지조사 결과를 보고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예정지구현황 및 위치도 (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경지정리현황 기재)
- 주요공사계획 및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효과
- 개발여건 (기존시설현황, 사업계약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의견
- 기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나) 예정지조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0ha이상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다)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라) 기본조사자는 우선적으로 타법, 타사업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시행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재해 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

< 공통 >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충용수 개발이므로 유역상황 및 당해지역의 기존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 사업을 당해지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 또는 병행가능여부 검토

<저수지>

- 수해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기존저수지 유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 내한능력을 10년빈도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할 시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토방수로의 홍수배제 능력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시 그 대책안

<양수장>

- 하천의 갈수량, 수질현황 및 전망에 대한 대책
- 홍수시 침수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수로>

- 현행 용수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및 수로조직체계 개편 구상안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나) 세부설계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다음사항을 변경하여야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하며,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비 및 수해면적의 10%이상 증감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의 규모 및 형식 등 주요사항 변경 등

(라)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마) 세부설계자는 저수지, 양수장의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시는 제공하여야 함.
- (바) 시·도지사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여 설계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명하고 사업시행전에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 (사) 수혜면적은 수리안전담면적, 보강개발면적 및 신규편입면적의 합계 면적과 개발 면적으로 표시
 (예) 수혜면적 100ha(수리안전담 60ha, 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개발면적 40ha(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면적구분

- 수리안전담 : 내한능력 10년빈도 미만의 기설 수원공의 수리담을 내한능력 10년빈도 담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 보 강 개 발 : 기설수원공의 수리담면적에서 수리안전담 면적을 뺀 면적
- 신 구 : 보강개발로 인근 수리불안전담 신규 편입면적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가)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나)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진흥지역으로 편입
- (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 (라)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계속지구는 예산배정결과 포함)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 (마)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서를 첨부.
- (바)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

(6) 공정계획

- (가)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나)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 기·자재(마대, 말뚝, 증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7) 시행계획의 변경

- (가)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다만, 공사비를 국비외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저수지의 제당높이, 만수위, 물넘이 형식의 변경과 양수장 규모의 변경 등

- (나)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 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은 보완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3-1~3-5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다)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결과보고하고자 할 때에도 상기 (나)항과 첨부서류는 같음

- (라)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 소홀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조사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현저한 과오로 당초 조사설계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경우에는 조사설계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나)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 보상 등은 피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9) 공사감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라)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계획을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바)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수시 확인(사진촬영 포함)하여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함.
- (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함.

(10)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저수지 제당덧쌓기, 양수장 확장 등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평야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방비를 추가지원하여 추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국비 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의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11) 사업준공

-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결과, 매수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 (나)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

- ### (다)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12) 기 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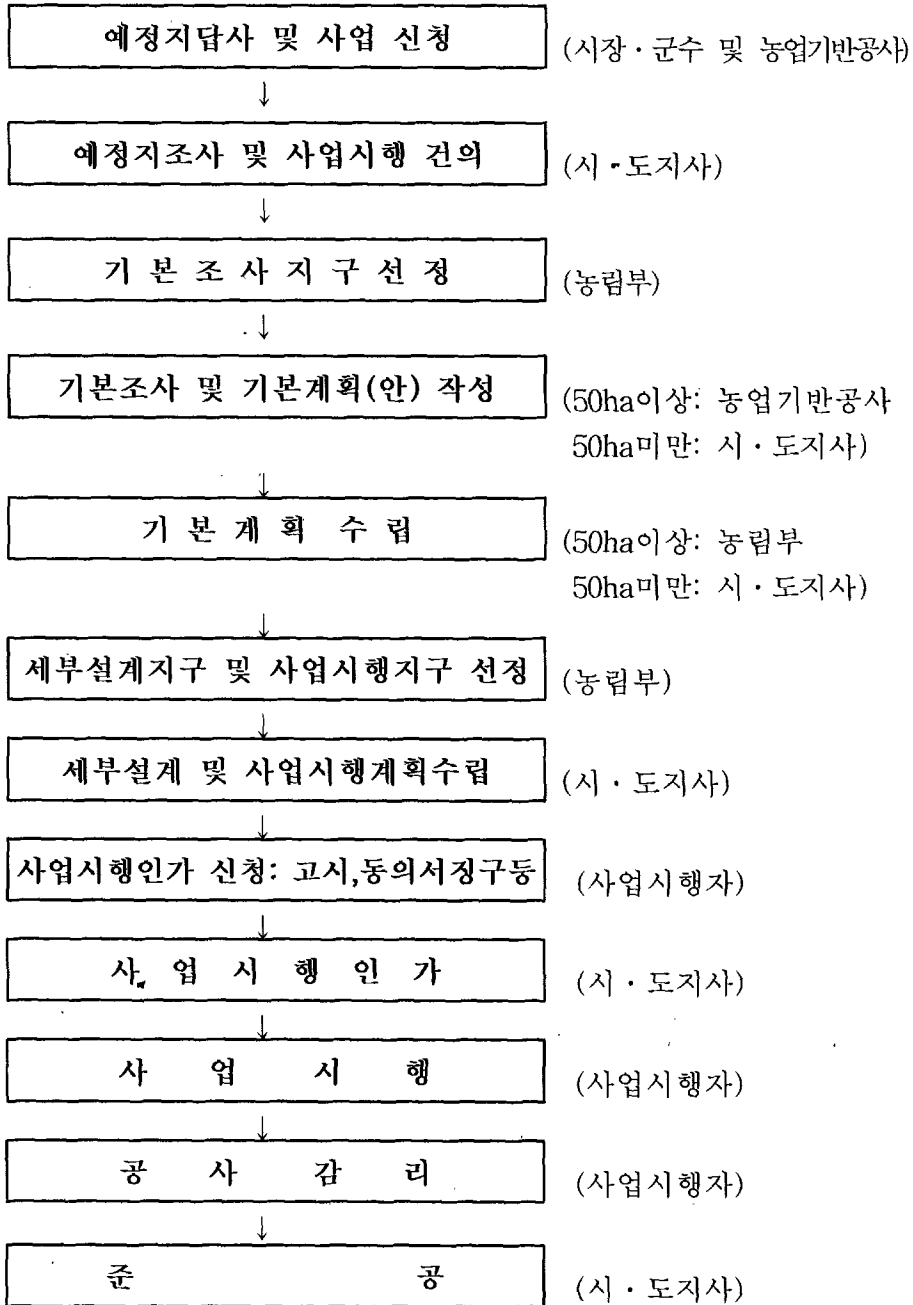
나.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농·촌)	지구명	위 치		수원공		주요사업내용		사업추진년도	사업비 현황				2001 주요 공사	2001분기별 사업비					
		시·군	읍·면	시설명	개발면적	시설명	사업량		총사업비	'00 까지	'01 계획	'02 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 공																			
- 계 속																			
- 신 규																			

※ 지구내역은 사업시행자별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2001년 /4분기)

(시·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시 설 명	개발면적 (ha)	사업착수년도	총 사업비	'00 까지	'01 예산	'01년 실액	진도(%)		공 래 계 실 형	누 계 진 도 (%)	'02 이 후	기 타 (부 진 사 유)
		시· 군	읍· 면								계 획	실 적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농조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예산추가지원 등 변경조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여 보고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승인결과보고)

1. 사업계획개요

- 위치 : 도 시·군 읍·면 리·동외(※사업구역위치도 S=1:25,000 첨부)
- 수해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내역
 - 저수지 : L= → m, H= → m(제당상상 m)
 - 여방수로 : L= → m, H= → m
 - 양수장 : HP × mm × 대 → HP × mm × 대
 - 용수로 : L= m(B×H= ×)
 - 이설도로 : L= m(B= m, con'c포장, 아스팔트포장, 사리부설 등 구분)
 - 기타
- 공사기간 : 20 . . ~ (당해년도 준공계획지구 표기)

2. 주요 보완내용

- 단가인상 : 백만원(%)
- 단가개정 : 백만원(구체적인 사유 및 금액변동내역 기재)
-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백만원
- 여수로·방수로 (L= m, H= m →) : 백만원
- 양·배수장 (HP x mm x 대 →) : 백만원
- 용수로 (B x L x H m →) : 백만원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증감내역				
	기승인	변경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낙찰차액	물량변경
합계										
공사비										
- 순공사비										
·저수지										
·양수장										
·평야부										
·부대공사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기타										

[별지 제3-2호 서식]

심 사 서

1. 사업명 :

2. 위치 :

3.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획	2000까지	2001계획	2002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공 종	보완내용		보완사유 및 심사의견
	당 초	변 경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00까지	2001계획	2002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99까지	2000계획	2001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 용자매수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3-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99까지		2000계획		2001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3-5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99까지	'00계획	'01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I.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류성곤, 토목사무관 김재홍)입니다.

1. 목 적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등 권역 중심으로 종합·일체화하여 추진하므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 및 중복투자 방지
- 조사·설계·입찰·계약 등의 사업시행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간과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합개발방식의 시범모델 개발을 위해 조사설계후 '99년 시범사업 착수
 - 사업지구수 : 4지구
- 농경지대구획화, 수로구조물화, 자동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된 영농기반 조성
- 전국의 464개 용수구역중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된 경지
 -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 내지 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이후
사업량(지구)	4	(4)	4 (4)	4	4	4
사업비(백만원)	125,958	1,769	3,797	22,022	19,677	78,693
- 국 고	113,725	1,769	3,592	19,820	17,709	70,835
- 지방비	12,233	-	205	2,202	1,968	7,858

※ ()는 세부설계지구수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 내용

(1) 추진 배경

- 지금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농업용수,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다양한 개발공종을 package화하여 연계 추진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절차간소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 세부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 및 사업시행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개발 지원방식의 도입이 필요
- '98~'99년 조사설계 및 '99하반기 사업 착수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체계 정착과 확대 추진

(2) 주요 사업내용

- 지구 수 : 4지구
- 사업내용 (선택가능한 세부사업)
 -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 대상지역내에서 복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종합개발
 - 농업용수 신규·보강개발 (저수지·양수장·용수로 설치 및 보강)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
 - 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 배수개선
 - 기타 종합개발이 가능한 생산기반정비사업

(3) 지원 대상

- 시장·군수(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지역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 가능
- 지원기준
 - 사업비 : 국고90%, 지방비10% (조사설계비는 국고 100%)

나. 2001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융 자		
		계	보 조	융 자			
4	19,677	17,709	17,709	-	1,968	-	

<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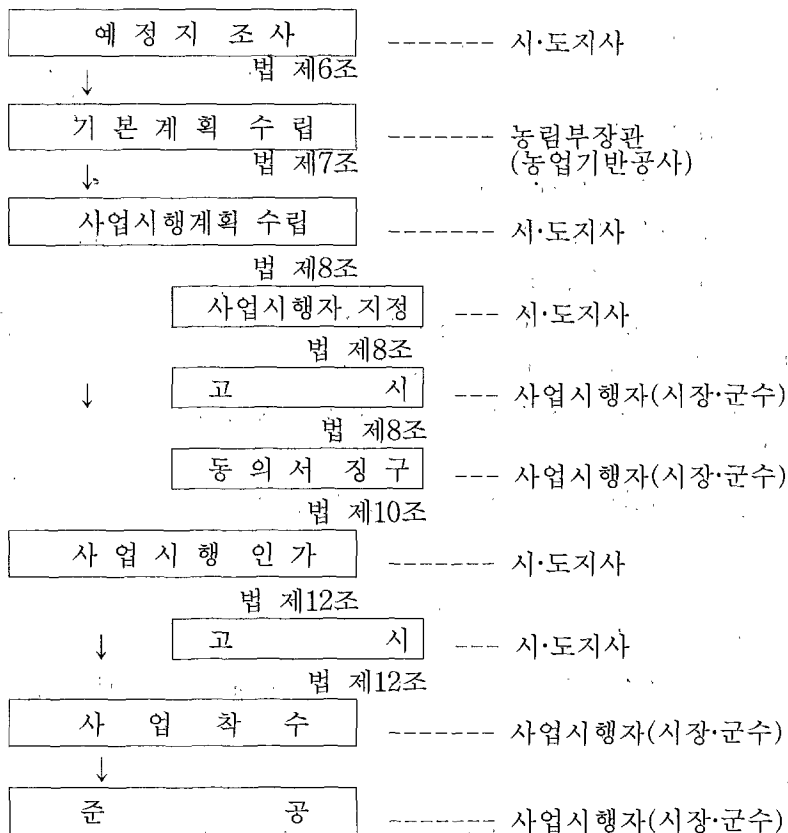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0-2666~7)

(2) 사업시행자 : 해당 시·군 건설과,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에 배정된 사업량·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시장·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나) 농업생산기반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시범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전국의 464개 용수자원구역중 농업진흥지역내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가 가능하고, 공사비·용지매수비, 설계·공사감리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
 - 개발대상지역이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되었으며,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 (다) 예정지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별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나) 기본조사시에는 공종(工種)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위탁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시행할 수 있음

(나) 세부설계시에는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존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세부설계를 완료한 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지구여건·예산형편 등을 감안한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한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함

(4)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라)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연도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나)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하되, 병행 시행이 가능한 공종은 최대한 병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 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 (다)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라) 사업비수지예산서의 연도별 내역은 총괄표 및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마)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정계획에 비해 공사추진이 부진한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바) 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변경

- (가) 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음 》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지구(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는 계획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라)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음

(8) 용지매수 및 보상

- (가)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르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나)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 적기를 놓쳐 작물경작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다)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의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 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9)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원은 경험이 많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거나, 자격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 할 수 있음
- (다) 공사감리원은 공중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중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 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

(10) 검 사

(가) 기성고 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연도말 검정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다)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를 기초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함
 - 사업준공시에는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 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종합개발을 통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지정리 병행시 지구내 도로, 용·배수로, 배수로구역의 감보처리 (용지매수비 절약)
- 용·배수로, 정지 굴착토량의 유용성토 처리(공사비 절감)
- 세부사업을 일괄 설계함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효율 인하(설계감리비 절감)
- 기타 입찰공고료 등 절감

(나)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하천개수가 되지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 고

- (1) 사업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수립시 (시·도지사 →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항[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 (2) 사업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
 - (3) 공정계획수립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첨부
- (4)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다. 기 타

-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개별사업의 시행지침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98년에 선정된 사업대상 4개지구에 대하여 2000이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체계 정착과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므로 “해당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제)정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제)정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 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 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공 사 비 ○순 공사비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											
계											

II. 지하수개발조사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류성곤, 토목사무관 김재홍)입니다.

1. 목 적

- 수맥조사 : 가뭄상습지역의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부존상태 및 개발 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개발성공율을 제고하고, 지하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개발 추진
- 해수침투조사 : 해안 및 도서지방의 지하수 과다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 해수침투의 영향을 조사하여 피해예방대책 수립
- 농촌지하수보전관리 : 농촌지하수 환경오염과 장애현상 예방을 위한 지하수 자원의 최적이용·관리 기반 구축과 보전·관리대책 수립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수맥조사로 지하수개발 성공률 제고
- 도서 및 해안지방의 지하 해수침투 영향을 조사하여 피해 예방대책 수립
-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지하수오염조사 및 지하수정보망 구축으로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보전·관리방안 마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제5조, 시행령 제2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이후	
사업비(국고) 합계	239,998	23,807	4,457	4,457	4,619	202,658	
수맥조사	사업량	88,169ha	34,169	6,040	6,000	5,400	36,560
	사업비	62,528	23,126	4,380	4,380	3,942	26,700
해수침투조사	사업량	181개소	55	7	7	7	105
	사업비	2,370	681	77	77	77	1,458
지하수보전관리	사업량	464개소	-	-	-	3	461
	사업비	175,100	-	-	-	600	174,5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추진배경

- 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이용과 암반관정 개발성공을 제고를 위한 지하수 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수맥조사 실시
- 지하 해수유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해안 및 도서지역의 지하 해수 침투조사 실시
- 농촌지하수의 환경오염확산과 장애현상 예방을 위한 농촌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최적개발·이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실시

(2)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

(3) 사업내용

- 수맥조사
 - 기본조사 : 지구답사, 지표지질조사 및 기설관정조사로 지하수 부존성 검토
 - 물리탐사 : 선구조조사, 전기탐사로 대수층의 분포확인
 - 수위관측공조사 : 지하수의 수위 및 유향 확인
 - 시추조사 : 지하지질구조, 대수층의 수리특성, 수질특성, 이용가능량 확인
 - 수문 및 토목조사 : 지표수와 관계, 개발가능면적, 이용시설 설계
 - 보고서(도면) 작성 : 제 조사자료를 포함하는 보고서, 도면 작성
- 지하수영향조사 : 수맥조사 결과 지하수개발·이용 가능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광역수맥조사 : 기존의 수맥조사 결과와 개발·이용중인 암반관정의 수위, 수질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군 또는 농어촌 용수 구역 단위의 광역적 수맥조사
 - ※ 시·도지사가 가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청할시, 시·군단위 (농어촌용수구역별 구분 표시)의 광역수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수침투조사 : 지하수 관측정설치 등으로 해수침투 및 채수량변화 관측 (관측정은 기존의 관정 및 조사 시추공을 최대한 활용)
- 농촌지하수 보전·관리 : 지하수 오염실태조사, 방치된 폐공처리, 지하수 정보망 구축 등으로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수립

(4)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1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4,619	4,619	4,619	-	-	-
수·맥 조사	5,400ha	3,942	3,942	3,942	-	-	-
해수침투조사	7개소	77	77	77	-	-	-
지하수보전관리	3개소	600	600	6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전화 : 02-500-2666~7)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절차(추진체계도)

예산내시→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지구선정(시·도협의)→ 조사시행
→ 성과품 제출(해수침투조사 관측정은 시군에 이관)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수맥조사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된 지구

- 해수침투조사
 - 장기관측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
- 농촌지역 지하수 보전·관리
 - 농촌용수구역 중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

(2) 우선순위

- 수맥조사
 -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시·도지사가 가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 해수침투조사
 -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중 우선순위에 의한 장기관측 계획에 의함
- 농촌지역 지하수보전·관리
 -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중 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한 지구

나. 2001년 시행계획수립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당해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내에서 2001년 암반관정 개발 및 해수침투조사 대상지구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에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함.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및 조사시행

농림부의 사업시행계획승인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사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세부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암반관정 개발대상지를 우선하여 조사를 시행함

나. 공정계획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을 우선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되, 지하수개발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조사물량을 조정하는 등 가뭄대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수립함

다. 용지매수보상

지하수개발조사사업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규정에 의함.

라. 사업 준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완료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선별 점검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조사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

마. 시추공 처리

- (1) 시추조사 성공공(150m³/일 이상, 단 도서지역은 100m³/일 이상)은 시장·군수에게 인계인수하여 시·군에서 확공후 개발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 시추조사 실패공
 - 지역주민이 시추조사 실패공의 이용을 요청시는 농업기반공사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취한 후,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함
 -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예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음
 - 시장·군수가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 시장·군수가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추조사 실패공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원상복구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당해연도 지하수맥조사 및 해수침투조사와 관련하여 굴착한 시추조사공 현황을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별지 제20호 서식(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에 따른 대장을 작성, 당해 시·군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도 비치·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제출한 시추조사공 현황 및 실패공의 원상복구결과(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 (3) 시추조사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지원

- (1) 지역별로 가뭄상습지역의 지하수개발 요구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대상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
- (3) 투자계획에 의한 조사요구 면적이 많은지역을 감안하여 지원함.
- (4) 농림부장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지구는 우선 지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시행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음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조사된 자료를 전산화 및 도면화 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지하수개발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백조사보고서를 시·도, 시·군에 배부 하여야 함

나. 보 고

지하수개발조사 추진상황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총민 26-2

지하수개발조사(수맥조사)사업 추진상황보고(/ 분기)

시·도별	사업량 (ha)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III.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 토목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물관리비용 절감 및 용수배분을 합리화하는 과학적 물관리 기반 구축
- 과학적인 농업용수공급·관리로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능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리시설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용수로 구조물화 및 용배수시설의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 시행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과 평야부 용·배수간선의 주요시설 위주 물관리자동화시설 우선 설치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물관리자동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 371권역 중 농업기반공사 87개지부에 지부당 1권역씩 우선 추진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1 (예산안)	2002	2003	2004	2005	2006-2015
사업량	지구수 (완료)	371	7	16 (7)	19 (16)	21 (19)	24 (21)	284 (305)
	계	509,800	5,250	15,000	22,350	27,650	51,450	388,100
사업비	보 조	509,800	5,250	15,000	22,350	27,650	51,450	388,100
	용 자	-	-	-	-	-	-	-
	지방비	-	-	-	-	-	-	-

※ 사업량은 착수기준이며, ()는 완료기준임

5. 2001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을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감시제어식물관리시스템을 설치
 - ※ TM(Tele-Metering) : 원격측정, TC(Tele-Control) : 원격제어
-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적용대상 시설
 - 수 원 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여수토 홍수조절문비), 취입보, 수문, 양수장, 관정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나.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관리 농업기반시설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라.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7	5,250	5,250	5,25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도지사)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세부설계(농업기반공사)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사업시행(농업기반공사) → 사업준공(시도지사) 순으로 사업추진 체계도는 붙임(표1)과 같음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농업기반시설중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원공 및 평야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율 높고 농업생산기반정비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구
- 광역 용수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구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완료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나. 우선순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해면적 300ha이상 지구중 유지관리시 물손실이 많은 지역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시 물관리효율개선 및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커서 증산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다. 예정지조사 및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수렴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고,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중앙관리소

- 중앙관리소는 설치공간 확보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기설공간 이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통신 프로토콜 및 입출력의 표준화로 시스템 기기의 설치후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는 지역 현지여건에 맞도록 수원공이 집단화된 평야 지역은 중앙감시제어, 독립된 산간지역 소규모 시설은 부분자동화시설 계획 검토
- 무선통신방법 선정시 통신시험에 의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함

(2) 저수지

- 기설 수원공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계획 및 물수지분석을 통하여 급수능력을 검토하고 기존 관개배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개배수체계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용수의 균등분배 및 적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용수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동일 수계별 수리시설물의 연계운영이 가능한 광역 물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여야함
- 몽리면적 100ha이상 주수원공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3) 양수장

- 기설 양수장의 급수능력과 하천의 유심이 변동되어도 양수능력이 충분한 지역을 계획함
- 양흡입 펌프의 교체 등 부분개보수시와 가동시 흡입가능여부(진공) 등 사업비를 고려하여 자동화가 용이한 수중펌프 설치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 주수원공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수원공은 주수원공과 연계운영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함

(4) 용·배수로

- 평야부 주요 간선의 제어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 간선수로의 분수문, 제수문등 용수의 조절·통제기능을 갖는 수로구조물을 개수하여 용수의 분배관리가 가능토록 검토하여야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독립된 산간지역의 소규모 수리구조물 등은 수동관리 또는 개별 자동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5) 물관리자동화(TM/TC)시설 유지관리

- 사업계획 수립시 낙뢰등으로 인한 기기고장시 부품확보 및 기기보수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침서 마련 및 유지 관리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물관리자동화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 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하여야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확정시 사업시행예정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기본계획확정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함

다.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도록 함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수혜민과 유지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함

마.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중앙관리소 등의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는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바.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주요기기의 사양·시스템변경, 신공법의 적용등 기본계획의 변경 및 총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설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아.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함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입은 당해사업 특별 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자. 사업의 준공 및 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예비검사 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후 준공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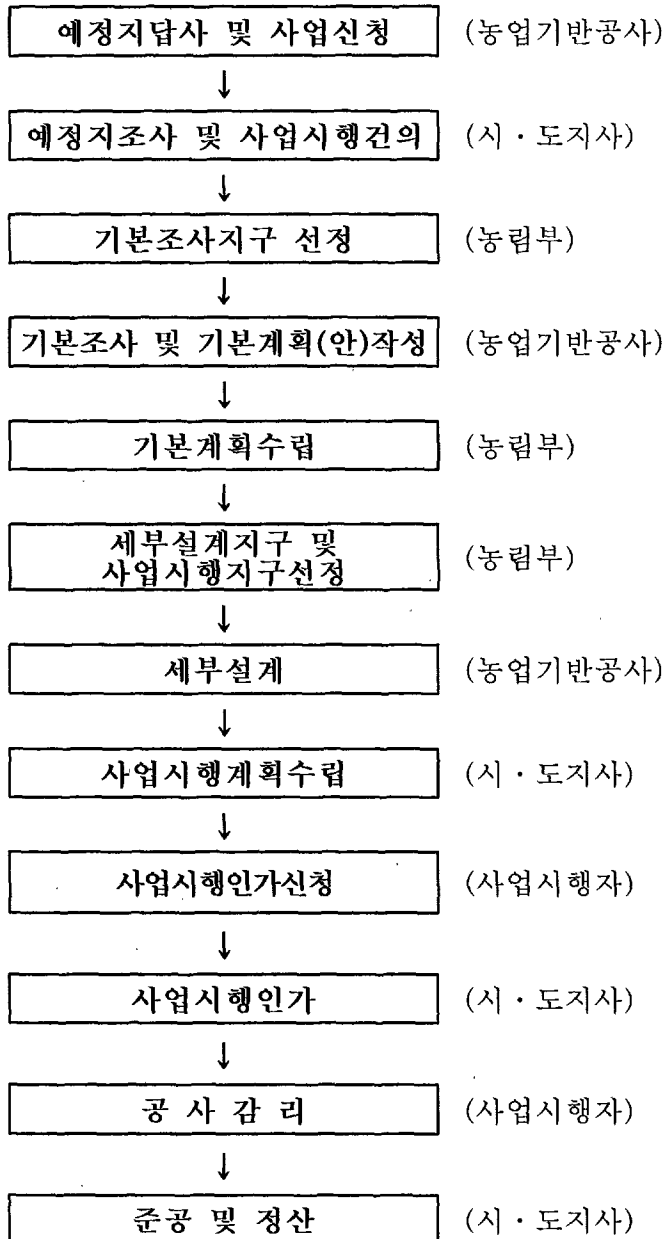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후 효과 및 시스템의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 반영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 사업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수립시(별지제1호서식)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제2호서식)
- 공사입찰결과보고 : 입찰완료후(별지제3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제4호서식)
-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별지제5호서식)
- 준공결과보고 : 준공처리시(별지제6호서식)
- 예산배정결과보고 : 예산배정 또는 변경시(별지제6호서식)

<표1>

물관리자동화(TM/TC) 사업추진 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지부

2. 인가내용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에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지시(검토) 사항 이행내용

검토사항	이행사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4. 종합검토의견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도면(1/25,000)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입찰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_____
- 위치 : _____ 도 _____ 시·군 _____ 읍·면
- 수혜면적 : _____ ha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_____ 지부

2. 입찰결과

- 입찰공고일 및 방법 : _____
- 현장설명일 : _____
- 입찰일시 : _____
- 입찰결과

(금액 : 천원)

발주구분	설계금액	예정가격(A)	낙찰가격(B)	낙찰율(%) (B/A)	입찰방법
계					
토목					
기계					
전기					

3. 입찰참가업체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추진상황보고
(2001년 월말 현재)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년도예 산
	시·군	읍·면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 주 : 1) A4용지 횡으로 작성
 2) 매분기별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3) 추가예산내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4)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5)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비 수지에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사비							
- 순공사비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5-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5-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구명 :
- 위치 :
- 면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지부)
- 주요시설 및 규모
 - 중앙제어소 : 개소 (B × H)
 - 저수지 : 개소(취수탑, 사통전동화)
 - 양수장 : 개소,
 mm × hp × 대(Q= m³/sec)
 - 배수장 : 개소
 mm × hp × 대(Q= m³/sec)
 - 분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제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방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 사업효과
 - I.R.R : - B/C :

2. 연도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내역			비 고
				년	년	년	
합 계							
국 고 지 방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내역			비 고
				년	년	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IV.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박철수, 행정사무관 이춘식)입니다.

1. 목 적

- 세계식량시장의 수급불안과 통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원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여건 조성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위험 최소화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겪는 정보 및 기술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국가간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대 개도국 교역여건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정부주도의 개발보다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기술, 정보 등 간접지원
 - 농업기반공사의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을 활용, 투자상담 및 기술지원
- 지원방안
 -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 해외농업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을 조사, 민간업체에 제공
 - 농업기반공사, 농진청, KREI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농, 기후 토양, 수송, 투자관련제도 등 투자가능성 분석
 - 해외농업투자 기술지원
 -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의 분야별 기술자문
 - ※ 지원분야 : 기반조성, 농장설계, 저장, 가공 등 관련기술 및 정보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설치·운영 :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등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7(시작)	'98	'99	2000	2001 (예산안)
사 업 량(개소)	2	2	1	2	2
사업비(보조)	1,400백만원	498	120	200	200

※ 민간요청에 의하여 조사할 경우 조사비의 50%를 민간에서 부담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WTO체제 출범 및 수입자유화로 농산물의 해외의존도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해외식량공급기지 확보필요
- 민간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과 관련 전문기술 지원
필요
- 한정된 국내 농업자원의 극복을 위해 해외농업에 대한 관련자료 축적필요

(2) 사업 대상

- 민간요청조사
 - 사업지역 :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1개 지역
 - 지원대상 : 민간기업
- 정책조사
 - 사업지역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개 지역

(3)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방식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반공사
- 지원형태 및 수준
 - 정책조사 : 국고보조 100%
 - 민간요청조사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개지역	200	200	200	-	-	-
투자환경조사	2개지역	200	200	2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02-503-7298)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

- 투자환경조사
 - 해외 개발가능지 사전조사 및 투자환경 현지조사로 개발적지 파악
 - 투자환경에 따른 모델지구 파악 투자가능성 분석
 - 「해외농업투자기술센터」 운영 및 투자상담

○ 사업소요기간 : 2001. 1. 1~2001. 12. 31(1년)

○ 사업규모

- 투자환경조사 : 2개지역

(2) 사업비 집행방법

○ 민간요청조사

- 사전조사 : 국고보조 100%
- 본조사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정책조사 : 국고보조 100%

(3)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 2001. 1월
- 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 2001. 2
- 조사대상국가 결정 : 2001. 3~4월중
- 조사시행 및 보고서 작성 : 5월말~11월중순
- 사업비 정산 : 12월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사업 성과평가

(1) 목적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 후 평가실시
- 평가결과는 차기 조사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평가방법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회 개최

(3) 조치사항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향후 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조사결과 활용방안

(1) 조사결과 및 관련 정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역(국가)별, 업체별 분석·정리

- 민간기업, 단체, 개인 등의 해외투자 내용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집하여 종합 관리

(2) 관련정보는 투자 희망기업 및 민간인에 제공하여 해외농업투자사업으로 연계토록 지원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운영
- 관련정보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 관련단체 회원지에 수시로 게재
- 농업기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검색 가능토록 D/B화

나. 보고 및 기타

- 국가별 투자환경 세부조사계획 :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7일전
- 국가별 투자환경 조사결과보고 : 조사후 60일 이내
- 사업실적 및 평가보고서 : 최종 조사후 60일 이내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반공사 사업개발처(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

나. 신청자격

(1) 기본요건

- 대한민국에 본사의 소재지를 둔 민간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실수요업체를 포함

(2) 농지확보

- 자체 개발계획안이 확정되고 투자 대상국 정부와 토지구입 또는 임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를위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것

(3) 농업생산물 적합성

- 콩 , 옥수수, 밀 등 곡물생산을 목적으로 할 것

다. 신청절차

- 농업기반공사 기술지원단의 신청공고에 의하여 신청서 접수

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별첨)

- 기업현황
- 사업 계획서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민간단체 등 실수요 업체의 경우 이에 준한 기준을 적용)
 - 기업건실도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총자본회전율 등 평가
 - 기업경력 : 사업경력, 해외사업경력 등
 - 기술인력 보유 : 종업원수, 박사·기술사 보유현황, 해외사업종사인원 등
 - 사업계획 평가 : 농산물품목, 진출희망국, 개발계획규모, 기업자체 조사 수준, 계획실현성 및 적절성, 농지확보의 여부 경영의지 등
 - 타분야 진출효과 : 타분야 연계진출 가능성, 국산영농자재·농기계 수출 효과 등

- 신청 및 심의(지원) 절차
 - 농업기반공사에 신청, 지원자격요건 검토
 - 농업기반공사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지원 기술심의회 심의
 - 농림부 해외농업투자지원 실무협의회 심의 및 정책심의회 심의(필요시)
 -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지원 계약 체결 및 조사시행

I. 기업 현황

1. 회사 연혁 (농업분야사업을 중심으로)

연 월 일	주 요 내 용

* 기재요령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등을 기입

2. 자본금 현황

(최근 3개년 값)

구 분	년	년	년	평 균 값
총 자본금액				
자기자본율(%)				
총 부채금액				
부채비율(%)				

3. 총자본 경상 이익률 및 총자산 회전율(%)

(최근 3개년 값)

구 분	년	년	년	평 균 값
매출액				
경상이익				
부채				
자본				
총자본 경상 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 총자본 경상 이익률(%) = [경상이익 / (부채+자본)] × 100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 100

4.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 (년도) (단위 : 백 만원)

과 목	금 액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4.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 수익		
7. 영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2. 법인세등		
13. 당기 순이익		

5. 해외사업 인력보유 현황

가. 관련 조직 (조직표)

부 서 명 칭	근무인원	설치년도	업 무 개 요
XXX 처			
YYY 부			
ZZZ 과			

나. 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현 직위	성 명	기술분야	기술등급

* 기술등급 : 박사, 기술사 로 구분

II. 사업 계획

1. 사업개요

가. 의뢰국가명 :

나. 조사지역명 :

다. 시험재배 지역명 :

라. 사업규모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추진일정 ○ - -						
사업비 (천USD)						
개발면적 (ha)						
품목별 생산량(ton) - -						

※ 추진일정은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록

2. 사업내용

가. 사업업종 :

나. 운영주체 :

다. 생산품목 :

라. 가공 또는 판매계획 (국내반입 여부 포함)

마. 타분야 연계진출계획 (계수화)

※ 복합 영농계획시는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기술

3. 조사구분

농업투자환경조사(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농장개발기술지원을 구분하여 명시

4. 현장조사계획

가. 조사대상 지역 :

나. 조사기간 : 2001. 부터 2001. 까지 (일간)

다. 조사분야 및 항목

조사분야	조사항목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학 력

라. 조사비용

항 목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원)
총 액		
1. 항공료		
2. 여 비		
3. 조사재료비		
4. 현지인건비		
5. 기 타		

* 항목별 세항을 분리·기록하고, 세부산출내역에는 객관성있는 단가를 적용

5. 사업진행현황

6. 향후계획

7. 기타사항

V.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권상필, 토목사무관 김일환)입니다.

1. 목 적

- 농업용수 수질오염 추이의 평가·분석과 수질오염원인 규명으로 오염방지대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 관리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2년마다 전국 저수지에 대한 수질 실태조사(육안조사) 실시
-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농업 용수원에 대한 수질조사 실시
-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험 연구사업 실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농어촌용수오염 방지)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환경오염방지 상시조사 및 감시·측정체제유지)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량 : 지점, 금액 : 백만원)

구 분		'92-'98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사업량 (수질측정망조사)		200	350	450	500
사 업 비	계	4,599	1,677	1,420	1,270
	보 조	4,599	1,677	1,420	1,270
	용 자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농업용수 수질조사

○ 수질 실태 일제조사

- 2년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 실태 육안조사

○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 용수원에 대하여 수질 측정망을 설치하여
년 2회(관개기, 비관개기) 정기적인 수질조사 및 평가·분석

- 조사 항목

· 현장조사(6항목) : 수심, 수온, EC, DO, BOD, PH

· 실내실험(13항목) : COD, T-N, T-P, Cu, Pb, Cd, SS, Cl, K, Na, Ca,
Mg, Chl-a

○ 수질오염원 조사

-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원인 규명
및 오염방지 대책 방향 설정

(2) 농업용수 수질개선기법 연구

○ 농업용수 수질개선공법 개발, 처리 효율 분석 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추진

나. 지원 조건 : 국고 100%(실비지원)

다. 2001사업비(예산안)내용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70	1,270	1,270	-	-	-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500지점	1,000	1,000	1,000	-	-	-
○ 수질개선시험 사업	1과제	150	150	150	-	-	-
○ 수질정보종합시스템 개발	1과제	120	120	120	-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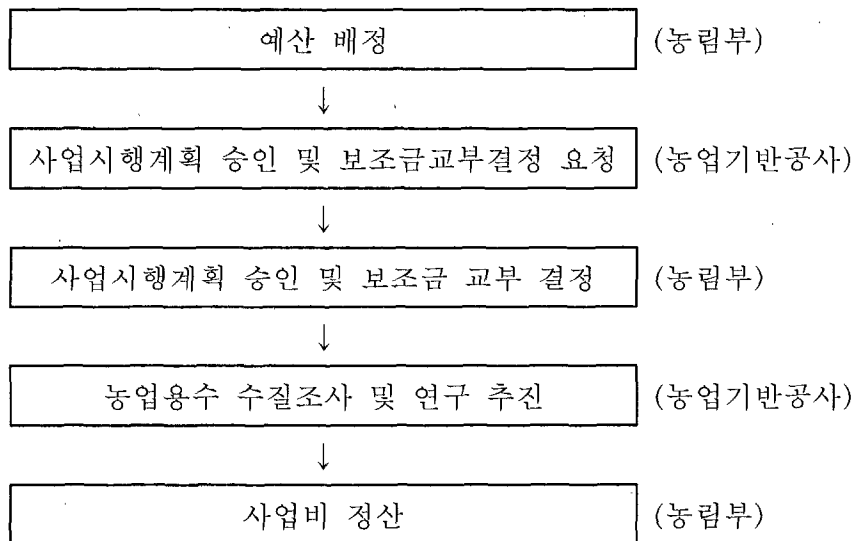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
- 농업기반공사 : 농어촌연구원 환경담수 연구실(전화 : 031-400-1801, 1857)

다. 자금지원대상자 : 농업기반공사

라.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림부장관이 배정한 예산에 따라 당해 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조사 및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학계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조사·연구 계획 개요

-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 총괄 조사·연구책임자

· 수질조사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등을 담당하는 책임조사자

· 연구참여자

※ 소속, 직급 등을 포함하여 실명으로 작성

※ 학계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 연구시에는 공동참여 예정기관 명시

· 수질측정망 설치계획

· 세부항목별 조사·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

- 소요 비용 등

(2)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작성한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함

(3)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조사 또는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관이 확정되면 공동연구기관의 세부 조사·연구계획과 조사·연구 총괄 책임자, 연구 참여자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나. 조사 및 연구 추진

(1)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조사 및 연구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함

○ 농림부장관은 농업용 저수지 수질실태를 조사토록 시·도지사 및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지시함

-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장·군수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수질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수질실태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함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수질실태 조사결과와 시·도지사의 수질실태조사보고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를 연2회(관개기, 비관개기) 실시하며, 매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농업용수 수질오염원 조사 대상지구는 전국 저수지 수질실태 일제조사 및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결과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조사토록 함
- (5)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과제가 완료 될 때까지 주요 연구 참여자를 교체하여서는 안됨
 -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당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계속 추진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공동연구기관 주요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으로 연구성과 달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6)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연 2회이상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과제별 평가회(중간평가, 연말평가 등)를 개최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평가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함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1)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연구비에 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2)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함
- (4) 기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실형 검정 및 결산 요령”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 지침, 규정을 적용함

I. 대단위농업종합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류성근, 토목 사무관 전경구, 이봉훈)입니다.

1. 목 적

강이나 하천 등 수계 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사업시행
-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지구의 준공계획과 연계하여 착수 추진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대상으로 부분완료 위주로 사업시행
- 대형시설물 등 부분 완공된 시설물 관리 철저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 업 량	3지구완공 6지구계속	1지구기본조사 6지구계속	1지구기본조사 6지구계속	1지구착수 6지구계속	2지구준공 5지구계속	
사 업 비	계	14,835	2,582	2,444	2,479	(?)
	국 고	10,655	1,682	1,689	1,579	(?)
	기 금	4,180	900	755	9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 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70년초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영농환경열악 및 식량부족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재원 및 기술부족으로 소규모 저수지, 경지정리, 간척 등의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그 실적도 미미
 - 한·수해 발생, 인력·축력에 의한 영농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저조
 - 외국원조에 의한 국민식량 조달
- 대규모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필요성 대두

(2) 주요 사업내용

- 저수지·방조제·하구둑·양수장 등의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여 농촌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3) 지원 대상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지구 보상비는 전북도지사)

(4) 지원 조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대행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 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나. 2001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국고·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금				
계	124,430	247,900	247,900	157,900	90,000	-	-
금강Ⅱ	43,000	29,000	29,000	29,000	-	-	-
미호천Ⅱ	4,430	24,000	24,000	24,000	-	-	-
홍보	8,100	18,000	18,000	18,000	-	-	-
영산강Ⅲ-1	13,160	43,000	43,000	13,000	30,000	-	-
영산강Ⅲ-2	7,840	15,000	15,000	5,000	10,000	-	-
새만금	28,300	113,400	113,400	63,400	50,000	-	-
영산강Ⅳ	19,600	5,500	5,500	5,500	-	-	-

< 추진 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0-2666,2667)

(2)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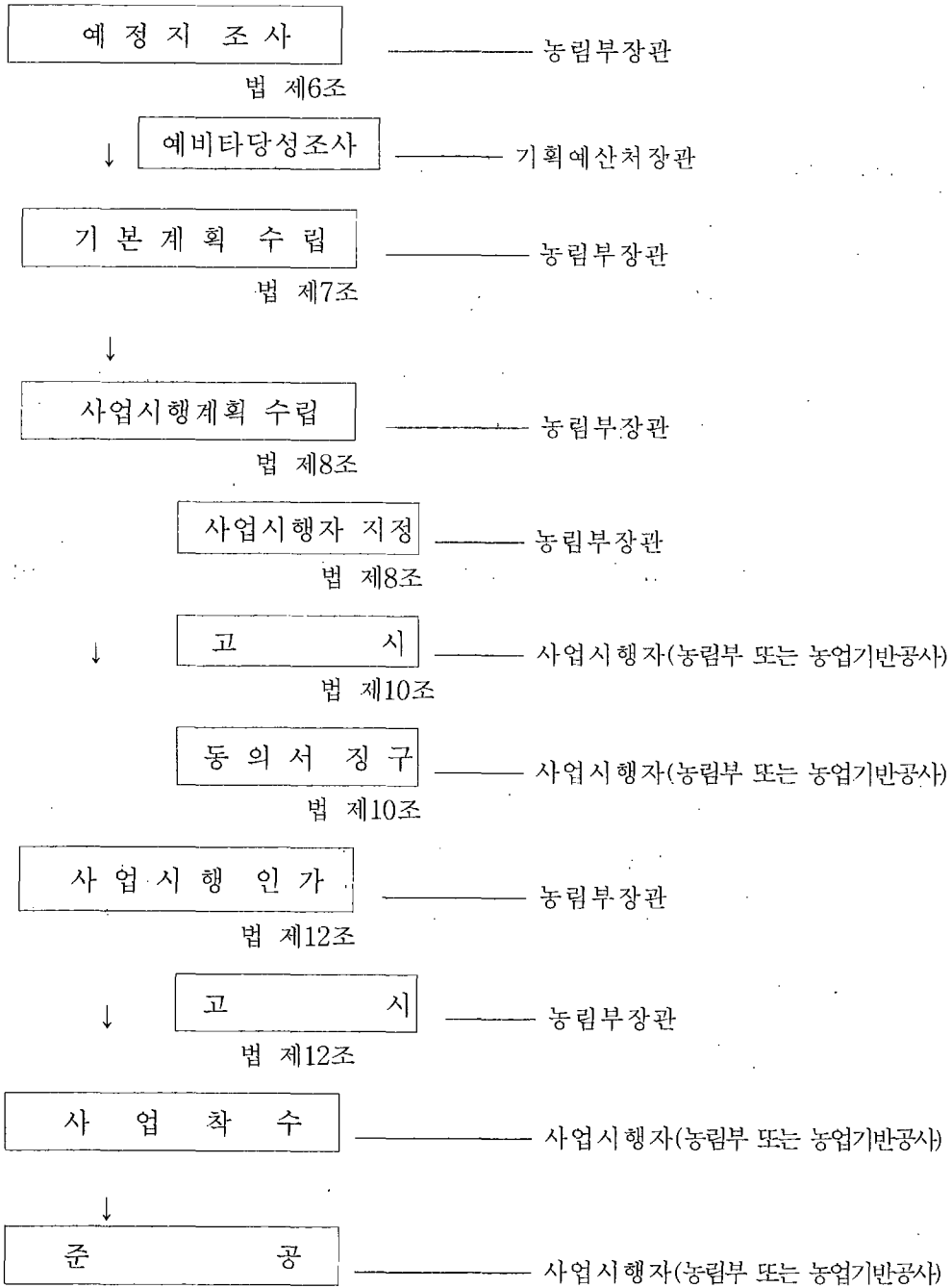
가) 영산강Ⅲ-1·Ⅲ-2·금강Ⅱ·미호천Ⅱ·홍보 : 농업기반공사

- 본 사 :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사업처 (031-420-3450)
- 영산강Ⅲ-1·Ⅲ-2지구 :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 (063-270-6430)
- 금강Ⅱ지구 :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 (063-453-0843)
- 미호천Ⅱ지구 :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 (043-290-3391)
- 홍보지구 : 농업기반공사 홍보사업소 (041-634-2808)

나) 새만금 : 농림부

- 사업대행자
 - 공사 분야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063-540-5821)
 - 보상 분야 : 전라북도 새만금지원사업소 (063-282-8518~9)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 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3,00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 (다) 예정지 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예비타당성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성이 인정되고,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 (나)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나) 기본조사시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적용,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 (다)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5.경지정리편 참고)을 준용할 것.

(4)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지시함
- (나) 세부설계시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적용,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라)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 착공이 필요한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공구는 기본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마) 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를 준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할 수 있음
- (바) 간척농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시에는 영구간(갯골)에 대한 과도한 매립계획을 지양하고, 수질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5)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6) 사업시행인가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나)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7) 년도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년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다)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
- 2) 사업계획개요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 6) 기타사항

(라)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력개발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마) 년도초의 사업시행계획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후 20일이내에 월별세부공정계획서를 제출(별지 제2호서식) 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에 앞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 2)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 3)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 4) 사업별 추진상황
- 5) 기타사항

(8)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2호 규정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음 》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및 토취장의 변경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다)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라) 계획변경시에는 계획변경 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규명 및 당초 설계자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협의의를 진행하여야 함

(9)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 3)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매수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4) 분할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를 하여야 함
- 5)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명의 또는 농업기반시설 인수 예정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나) 어업권보상

1) 보상물건조사 실시

- ① 당해 사업지구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②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③ 평가용역은 작업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및 집행

-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확정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집행

(10)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할 수 있음

(다) 공사감리원은 공중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3급이상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 (사)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아) 기타 공사착수이전, 공사착수단계, 공사시공중 등 단계별 공사감독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규정('96.6.18, 농림부 고시 제1996-31)』에 의함

(11) 검 사

(가) 기성고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년도말검정

- 1) 사업시행자는 연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검사 1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은 주요공종을 발체·확인함
-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부의 주요공종 발체확인 이 끝난 경우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체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공사완공증명을 발급함
- ④ 공사준공후에는 조사설계자, 공사감리자와 시공회사가 표기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업준공

-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준공을 확정함

(12) 유지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기완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나) 유지관리사업비는 실비정산함
- (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지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책정된 예산을 유지관리비 이외 타사업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예산 미확보지구와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잠수입으로 충당하되 잠수입이 부족할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라) 유지관리비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목 적
 - 2)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하여야할 사항
 - 3) 유지관리비 부과 정수
 - 4) 유지관리요원관리
 - 5) 유지관리사업내역
 - 6) 시설물현황
 - 7) 유지관리인원현황
 - 8) 세부운영지침
 - 9) 사업수지예산표
 - 10) 지구별 예산내역서

(13) 자금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비 국고의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4) 기타 사항

- (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하천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다)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사행이 요망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이 준공된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 고

-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기타

본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264-4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개발면적 :

착공일 :

증수량 :

M/T

준공예정일 :

< 수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도별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국외농지잡수입 ·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도별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264-4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개발면적 :

착공일 :
 증수량 : M/T

준공예정일 :

< 수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승인액	까지	계획	이후	
국외농지잡수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승인액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및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총민 26-3

○○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까 지		계 획					누계 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국 외 자 농지기금 잡 수입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까 지		계 획					누계 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1.순공사비												
○												
○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계												

II.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과장 류성곤, 토목 사무관 전경구, 이봉훈)입니다.

1. 목 적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척지와 유희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음.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농지매각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사업효과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농지의 대체 개발
- 담수호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공급기반등 수자원개발

(2) 국토종합개발 및 균형 발전 촉진

- 해안오지개발로 수산업 위주에서 복합영농구조로 변경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내지 제28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	2001 (예산액)
간척면적 (ha)		19,054	19,054	19,054
사	계	1,144,226	153,300	149,203
	국 고 (농지관리기금)	1,144,226	153,300	149,203
업 비	용 자	-	-	-
	지방비	-	-	-
	자부담	-	-	-

※ 시행중인 12개지구의 자료임

5.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간 척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막고,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담수호를 조성하고 간석지를 매립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여 농업 용지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키 위한 사업임.

2) 주요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
- 양·배수장 ○ 용수로
- 배수로 ○ 방수제
- 도 로

(2) 지원조건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금액 : 백만원)

지구별	농지조성 (ha)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농지관리기금)	용 자		
계	19,054	149,203	149,203	149,203	-	-	-
진 촌	347	3,100	3,100	3,100	-	-	-
화 용	4,482	28,800	28,800	28,800	-	-	-
남 포	837	6,600	6,600	6,600	-	-	-
석 문	2,831	14,500	14,500	14,500	-	-	-
이 원	777	6,100	6,100	6,100	-	-	-
군 내	464	7,600	7,600	7,600	-	-	-
고 금	159	3,400	3,400	3,400	-	-	-
고 흥	2,361	28,700	28,700	28,700	-	-	-
해 남	2,367	10,800	10,800	10,800	-	-	-
사 내	513	6,003	6,003	6,003	-	-	-
삼 산	280	13,600	13,600	13,600	-	-	-
시 화	3,636	20,000	20,000	20,000	-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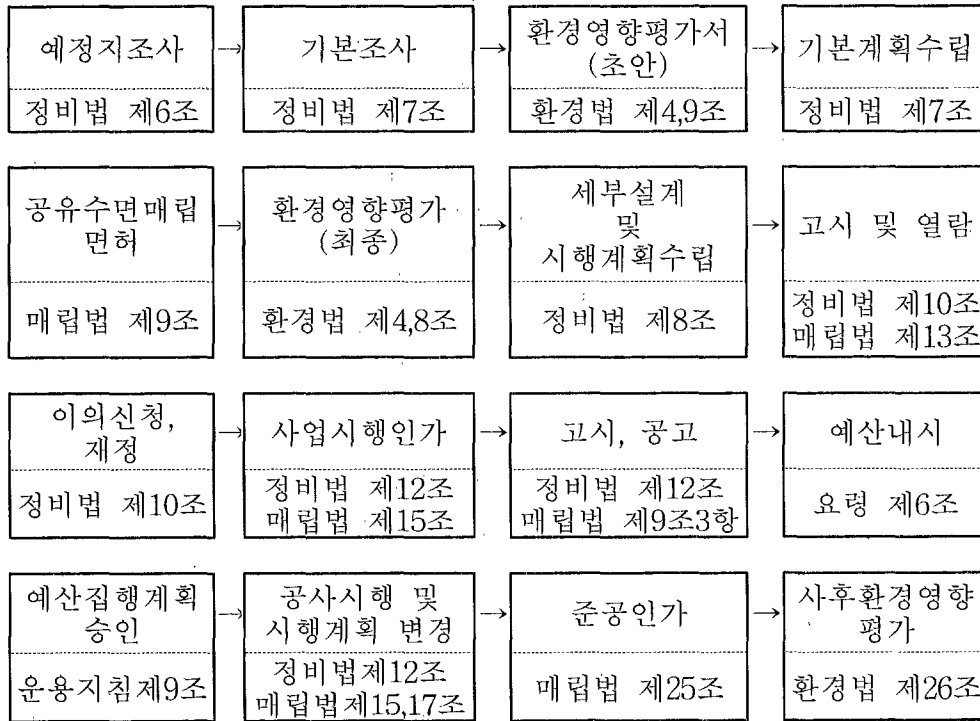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0-2666~7)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농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

<사업시행체계도>



주) 매립법 : 공유수면매립법
 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환경법 : 환경영향평가법
 요 령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요령

라.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 (가)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나)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 (마)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바) 주변지역개발 연계 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계획수립

(가)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제4조내지 제7조에 의해 결정된 매립기본 계획지구 및 간척자원조사가 완료된 지구중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이하같은)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결과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다)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 2) 사업별 투자소요액
- 3) 사업시행효과
-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 5)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6) 기타 사업시행시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

(2)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농림부장관은 매립면적 50ha이상 사업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

(다)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본조사실시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라) 기본조사시는 주민의 의견이 수립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 (마)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 3) 사업비 수지예산서
 - 4) 사업비 내역(공사비 포함)
 - 5) 사업효율분석결과(B/C, IRR 등)
 -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바)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과 기본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사)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시·도지사는 매립면적 50ha미만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자)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5.경지정리편 참고)을 준용할 것.

(3)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 조사

- (가) 기본조사실시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피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기본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함.
- (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척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의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라) 환경영향평가(최종)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 요청하여야 함.
-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부장관의 최종 협의내용의 이행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를 내용으로 함.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 생태계 등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조사해야 하므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영향평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아) 담수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폐수 발생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정비법 제19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4)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 실시함.
- (나) 세부설계시에는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다)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확정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설계비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마)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바) 농림부장관은 제(마)항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계획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되도록 함.
- (사)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다) 매립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3) 세부설계도서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5) 사업비 내역 명세서(공사비 포함)
-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 실시계획을 인가한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2) 공정계획

- (가)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계획)이 인가된 공종에 한함.
- (나)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입찰계약 상황을 도지사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사업추진상황은 제2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제출) 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조달청장에 공사계약을 요청함에 있어 우수 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강화와 제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사장)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당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매년1월15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농업기반공사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는 승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마)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은 사업효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공유수면매립면허일, 시행인가일, 착공 등)
 - 2) 사업개요(매립면적, 개발면적, 간척농지면적 등)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공종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연도별 수지예산서
 - 6) 기타사항

(바)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인가권자(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승인통보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월별 세부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권자(시·도지사)는 향후 단가인상, 투자효과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특히, 공정계획 작성시 인력, 자재확보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사) 이상의 공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종이 단순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고, 인가권자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하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원안승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공정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라)~(바)항에 따름.

(아) (바),(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나 천재지변, 예산변경 또는 투자효과제고,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요자 할 때에는 (라)~(사)항에 따름.

(자) 시·도지사(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 시·도지사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변경 및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지원에 의한 보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 변경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단, 단가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10% 초과 공사비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시공한 물량변동 결과의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함.

(4)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다)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중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 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바)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사)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5) 어업권 보상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 1)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2)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1)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2)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다)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6) 검 사

(가) 검정 및 정산

- 1)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년도말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사업 실행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행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인가권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정신청 즉시 년도말 검정은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행검정 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년도말에는 12월 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 등은 농지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7) 사업준공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매립면적이 3,000ha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10항)

(8) 사후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9)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 (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나)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수령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다) 관리비는 효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라) 잡지출인 이전등기, 공부정리비는 사범서사법에 규정한 효율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10) 예산 및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 (나)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 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는 통보 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정함.
- (라)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마)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 (바)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로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불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 (1) 월별공정계획보고 (제1호 서식)
- (2) 월별사업추진현황 (제2호 서식)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제3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4)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서식5 준용)

【별지 제2호 서식】

총26-71

월 별 사 업 추 진 현 황

< ○○○도 >

(금액 : 백만원)

지 구 명	공 종	총계획		년도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 계 진 도 % (A/C)	년이후			
		사 업 량	사업 비 (A)	사 업 량	사업 비 (B)	진 도 (B/A)	년도 계획		월말까지 누계					당 해 연 도 진 도 % (E/C)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업 비 (C)	계 획		실 적						진 도 % (E/D)
									사 업 량	사업 비 (D)	사 업 량	사 업 비 (E)					
○○○	계																
	· · ·																
○○○	계																
	· · ·																

※ 공종은 공사비(방조제, 배수갑문, 용수로),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 등으로 작성하되, 사업물량을 정확히 기재

※ 계획대 실적.이 85%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공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 40513-14611보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비 수지예산서

- 지 구 명 :
- 매 립 면 허 일 : 면 허 자 : 매 립 면 적 :
- 사 업 시 행 인 가 일 :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 개 발 면 적 : ha(간척농지 ha)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2000까지	2001계획	2002이후	
농지관리기금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2000까지	2001계획	2002이후	
1. 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12	지역특화사업 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담당관 이양호, 행정사무관 신성암)입니다.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 추진하게 함으로써 농림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특화 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림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및 투자효율성 제고(사업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 추진노력을 평가하여 실적가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정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

3. 근거법령

- 농림업무평가규정(농림부 훈령 제976호 '99. 1. 30)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92-'98	'99	2000	2001예산안	2002-2004
○ 지역특화사업	계	1,890	1,234	1,457	1,634	13,806
	국고	1,102	720	820	920	7,560
	지방비	788	514	637	714	6,246
- 일반특화사업	국고	552	360	500	560	5,260
	지방비	552	360	500	560	5,260
- 실적가산금	국고	550	360	320	360	2,300
	지방비	236	154	137	154	986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예산은 별도(2001년부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에 포함 편성)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 추진경위

- 일반특화사업 예산은 '97년부터 소액보조사업을 단일 세항으로 통합편성하여 지자체에서 소액보조사업 세부사업간에 탄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99부터는 포괄보조금형태로 지원하여 추천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실적가산금예산은 '97년부터 지자체의 농림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대상 사업 : 추천사업과 추천사업이외 사업으로 구분
 - 추천사업 : 4개분야, 10개 세부사업(19개 단위 사업)

분 야 별	세부사업명(단위사업명)
① 소규모 생산기반 조성 (3 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소규모 지표수, 논농사용 지하수, 원예용 암반관정),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오염농경지 객토
② 지역특화 농산물 생산지원 (3 개)	농기계·자재구입(소규모 농자재구입, 병해충 공동방제기구입), 종묘생산 지원(마늘 경쟁력제고, 백합종구 자급화, 벼육묘 공장 설치), 병해충방제 지원(벼병해충방제, 채소류 병해충방제)
③ 농·특산물판매촉진지원 (2 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④ 친환경농업 지원, 기타 (2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목재파쇄기 구입, 푸른들가꾸기운동 지원,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 설치), 우리밀 생산지원

* 추천사업의 사업소관과 및 지원내용은 <붙임1> 참조

- 추천사업 이외 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예산사업(이하 “기존사업”이라 함)을 제외한 모든 농림사업.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특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경우 시·군당 2개이내의 품목은 기존사업도 지원 가능

(3) 지원기준

- 추천사업 : <붙임1>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 추천사업 이외사업 : 시·도지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설정
 - ① 지원내용이 예산과목(지자체자본보조) 성격에 맞는 사업이어야함
 - ② 시·도지사는 유사한 기존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지원기준을 결정해야 함
 - ③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인 사업 및 해외투자사업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지원조건

- 일반특화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50%이상 부담 가능)
 - 시군수리시설개보수 : 국고70%, 지방비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 실적가산금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배정기준 및 내용

(1) 분야별 배분

- 실적가산금은 『쌀생산 및 농산시책 평가』에 220억원, 『농림업무 평가』에 140억원을 배정
- 일반특화사업은 전체금액의 75%인 420억원을 일괄 배정하고, 나머지(140억원)는 사업을 공모하여 배정
 - * 사업공모 : 지자체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을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계	보 조	용 자			
합 계	-	163,429	92,000	92,000	-	71,429	-	
○ 일반특화사업	-	112,000	56,000	56,000	-	56,000	-	
- 일괄배정	-	84,000	42,000	42,000	-	42,000	-	
- 공모사업	-	28,000	14,000	14,000	-	14,000	-	
○ 실적가산금	-	51,429	36,000	36,000	-	15,429	-	
- 쌀생산대책평가	-	31,429	22,000	22,000	-	9,429	-	
- 농림업무평가	-	20,000	14,000	14,000	-	6,000	-	

(2) 시·도별 배정

- 실적가산금 : 지자체에 대한 쌀생산 및 농림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일반특화사업중 일괄배정 예산 : 시도별 농업비중, 사업추진실적, 예산요구액에 따라 배정
 - 농업비중 : 70%(농가호수 30, 경지면적 20, 농업진흥지역 면적 20%)
 - 지역특화사업 추진 실적 평가 : 20%(전년도 10, 당년도 10%)
 - 예산요구액 : 10%
- 일반특화사업중 공모사업 예산 : 2001년초에 공모방식으로 시·도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 실장)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 예산을 배정

다.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총괄)
 - 각 사업과(사업별 추진)
- 시·도 : 농정국 농정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또는 산업과)

(3) 자금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4) 사업 시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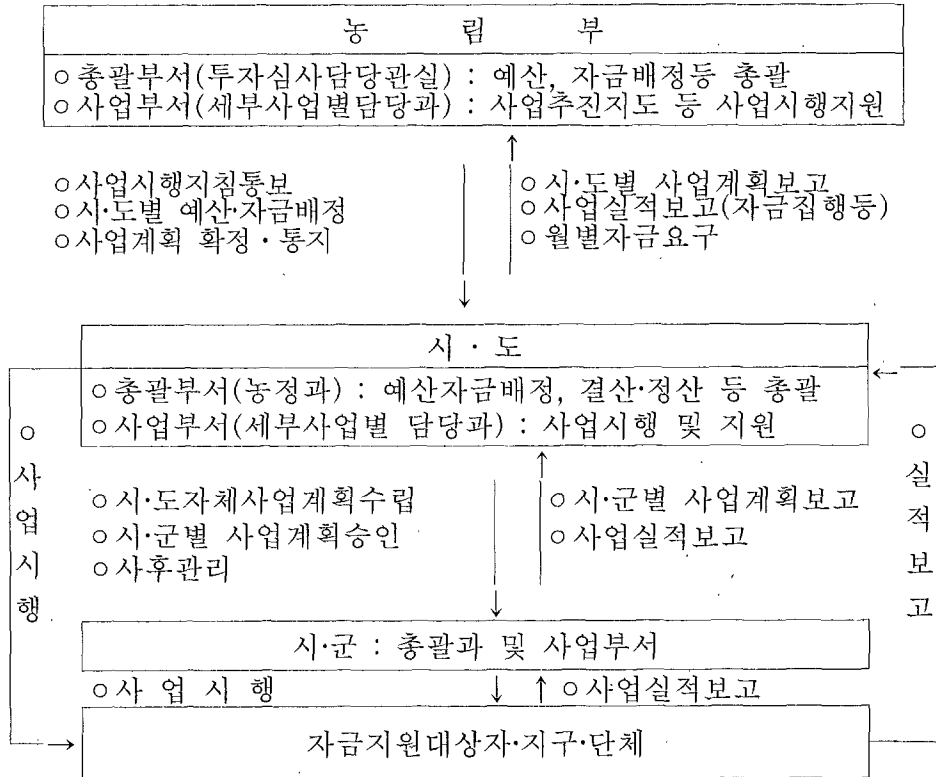
- 시·도지사는 추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후 사업을 시행하고, 추천사업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와 사전협의후 사업시행
- 일반특화사업
 - 일괄배정사업은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또는 협의후 사업 시행
 - 사업의 선택, 지역별 배정,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추진
 - 공모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시·도지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조건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후 사업 시행

○ 실적가산금 사업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또는 협의후 사업시행

* 쌀생산대책평가 실적가산금은 쌀생산 기반정비, 생산시설, 영농기자재 등 쌀생산 관련 사업에 사용

< 사업시행체계도 >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일괄배정 사업>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2001. 1.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하고 사업시행

- 다만, 추천사업이외의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와 사전협의후 사업시행

<공모 사업>

-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 2001. 1. 15일까지 농림부에 신청
 - 신청사업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
 - 시·도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 총액한도는 공모사업 예산의 1/3(46억원) 범위 내로 함
- 농림부는 사업타당성을 검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후 당해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사업 담당과 및 투자심사담당관실)에 보고후 사업 시행

<실적가산금 사업>

-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및 실적가산금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부로 보고 또는 사전협의후 사업 시행(제출서식 등은 일괄배정사업과 같음)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공통>

- 시·도지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고 당해지역의 여건과 특성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가.사업개요”의 (3) 지원기준 및 (4)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사업

- 지역적으로 특화가 가능하고 다수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연구기관 등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검토된 사업
- 수혜대상이 다수인이며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 노동력·자재비 절감, 품종개량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농산물수급안정 및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시행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민 호응도와 사업성이 높아 확대시행이 필요한 사업

※ 지원 제외 사업

- 기존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다만, 지자체장이 장차 지역특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경우에는 시군당 2개 품목이내에서 기존 사업도 지원 가능)
-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다수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 사업
- 주된 시설(사업비 기준)이 음식·숙박시설인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업
- 지원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및 경상적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예산을 시·군에 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예산 배정시 적용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2) 사업계획 변경

- 추천사업의 세부지원 기준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를 변경하거나, 추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한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추천사업의 “세부사업” 상호간에,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내의 “단위사업” 상호간에 예산을 변경, 집행할 수 있음
-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여건변화시 신속한 계획 변경 등 포괄보조의 취지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괄배정·실적가산금사업의 분류는 추천사업의 “세부사업명”까지만 내역을 명시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1002호 '99. 11. 8)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관련증거 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의 관리 및 자금신청

- 시·도별 지역특화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농림부 총괄부서(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세부사업별 계획을 소관 사업과에 통지하고, 사업과에서는 사업 추진 지도·점검, 사업실적 보고,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 총괄부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에 보고
 - 시·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소관 사업과에 보고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시·군별 사업집행의 적합성 등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다음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토록 함
- 시·도 총괄부서에서는 9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상황과 그 이후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용예상액이 있을 경우 일괄배정·실적가산금사업은 우선 시·군간 전배조치를 하고 공모사업 집행잔액과 전배잔액은 10월말까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로 보고
 - 불용액 비율이 높은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배정시 불이익 조치 (반영비율 : 20%)
- 월별자금소요액의 신청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사업 담당부서)는 시·군에 자금 배정시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익월 자금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소요 전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신청하여야 함(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수)

마.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훈령 제1003호 '99. 11. 16) 제39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2) 보고·기타

○ 자금배정 요구

- 시·도 총괄과(농정과 등)에서는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농림부로 자금배정을 요구

○ 실적보고

- 시·도 총괄과(농정과 등)에서는 전반기 사업추진실적은 사업시행년도 7. 31까지, 하반기사업 추진실적은 다음년도 1.31까지[별지 제4호서식]으로 농림부로 보고
- 시·도 사업과에서는 소관사업에 대해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같은 서식에 의하여 농림부 사업과에 보고(논농사용 지하수개발은 [별지제5호 서식])

○ 정산보고

- 시·도 총괄과(농정과 등)에서는 사업비 정산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다음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첨부물은 e-mail)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예산배정

가.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예산신청 전산입력후 2001. 3월 말일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 예산(일반특화사업 및 실적가산금 포함)을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로 제출, 신청
 - 추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
 - 전산입력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생략한 지역특화사업 총액을 입력.
- 농림부는 신청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요구 및 필요시 추천사업이외의 사업을 추천사업에 편입

나. 예산배정

- 일반특화사업중 일괄배정 예산은 시도별 농업비중(농가호수, 경지면적, 진흥지역면적), 예산 신청내용,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로 배정
 - 시·도지사는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예산배정
- 일반특화사업 중 공모사업 예산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배정
 - 선정기준은 본 지침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 실적가산금 예산은 2001년도 「쌀생산 및 농산시책 평가」와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 소규모농업용수개발 <소규모지표수>	농촌용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50ha미만 가뭄상습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지표수 개발 ○ 지원단가 : 80백만원/ha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50%(지방비 50%이상 부담)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논농사용지하수>	농촌용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 ○ 대상지역 -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가뭄상습지역 논 ○ 지원내용 - 수원공시설 : 착정공사(집수정은 집수 압기 포함), 우물자재설치, 양수시험 및 수 질검사 등 - 이용 시설 : 모타(수중)펌프, 전기시설, 양수장옥 및 송수관로 ○ 지원단가 : - 암반관정 1공당 40백만원 * 수맥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개발전에 수맥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수맥조사(지하수영향조사 포함) 미실시 지역은 지방비에서 조사비 추가 지원 - 집 수 정 : 개소당 개발소요액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이상 ○ 시설 설치기준 - 암반관정 : 우물구경(mm) 150 200 250 착정구경(mm) 200 250 300 착정심도(m) 50~100

주 : 세부사업명중 “○”로 표시한 사업은 세부사업이고, “< >”로 표시한 사업은 단위사업임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p>* 기준채수량은 150톤/일/공. 단 도서·해안지역 및 산간오지 등 대체수원개발이 어려운 특수지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00톤/일/공까지 조정시행 가능</p> <p>- 집 수 정 : 심도 8m 내외, 구경 3.5m 내외, 채수량 4~7천톤/일</p> <p>○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p> <p>○개발실패공의 원상복구</p> <p>- 개발실패공은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함</p> <p>※ 준공상황판, 분기별 추진상황보고 :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참조</p>
<원예용암반관정>	채소특작과	<p>○지원대상자 : 대상지역의 법인경영체 또는 3호 이상이 결성한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전업농</p> <p>○대상지역</p> <p>-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지역 또는 염수·한해상습지역의 시설원예단지</p> <p>○지원단가 : 암반관정1공당 45백만원</p> <p>○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 50%이상</p> <p>○시설기준</p> <p>-구 경 : 200mm</p> <p>-채수량 : 150m³이상(고지대등 수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경우 100m³까지 시장·군수가 하향조정가능)</p> <p>-시공 :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하수법에 의한 유자격 민간 관정개발업체</p> <p>-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수원 확보</p> <p>-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절차 준수</p> <p>※개발실패공은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함</p> <p>○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p> <p>○사후관리</p> <p>-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완공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p>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시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지원대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시설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제당, 여수토, 취수시설), 양수장, 취입보 중 기능이 저하되거나 균열, 파손 등으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 개보수 - 토사퇴적으로 물부족을 겪고있는 저수지의 준설 - 누수·붕괴 등으로 재해대비 및 물관리가 필요한 용수로의 구조물화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 담당자가 조사한 소요사업비 ○대상지구선정 : 시·군 사업담당과의 신청에 따라 시·도 사업과에서 선정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오염농경지객토	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대상지역 : 휴·폐광 주변 중금속 오염농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등 전문조사기관 토지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농경지 ○ha당 지원한도액 : 5,950천원/ha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기계·자재구입 지원 <소규모 농자재구입>	농산과(등화장치:농업기계자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 : 농업인 ○지원대상 농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물꼬, 논두렁보호설비, 경운기트레일러용 등화장치, 병해충방제 장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물꼬 : 8천원/개 - 논두렁보호설비 : 4천원/m - 등화장치 : 50천원/조(부착비 포함) - 방제복 : 35천원/세트 - 방제모 : 350천원/세트 ○지원조건 : 국고 50%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 시험연구기관(등화장치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성능 등이 인정된 제품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면적, 비재배면적 및 농가희망량 등을 감안, 시·군(구)별 공급계획 수립·시달 - 시장·군수 책임하에 구매 공급하여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가당 지원한도는 농가경영규모, 필지당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읍·면장)는 지원공급된 자재 설치(방제장비는 인수)여부를 확인한후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병해충 공동 방제기 구입>	농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시장·군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공동 방제용 고성능 방제기 구입 비용 ○ 규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출력 180마력/2,500rpm - 송풍량 : 2,750m³ 이상/분 - 분사노즐 : 디스크노즐(135개 이상) - 송풍부회전각도 : 200 ° - 물탱크용량 : 1,500 ℓ 이상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반경 : 120m이상 ○지원단가 : 145백만원이내/대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이상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내용년수동안 관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묘 생산지원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특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 : 마늘주산단지 시장·군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의 정상구(종구)수매가격과 농가공급가격과의 차액 지원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지형 : 420원/kg - 한지형 : 720원/kg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50%이상 ○사업규모 : 1차년도 단구를 공급하여 생산될 정상구 물량을 당해 연도 사업 규모로 책정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시 파종기, 수확기, 마늘쪽분리기 구입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마늘 주산단지 시장·군수, 농협 - 지원기준(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파종기 : 경운기용 1,500, 트랙터용 6,000, 관리기용 680천원 • 마늘수확기 : 트랙터용 3,900, 경운기용 600천원 • 마늘쪽분리기 : 9,500천원 ※ 세부시행요령은 별도 시달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백합종구자급화사업>	과수화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지자체, 화훼영농법인체 또는 백합생산농가 ○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0만구(3ha)이상 자급할 수 있는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 300 ~ 500만구이상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 백합종구생산기술 등 노하우가 있고 백합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 대상품종 : 오리엔탈계 및 아시아틱계 종자를 주로 하되, 나팔나리게통(철포)은 무병 Virus종구 공급을 목표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합구근센터:1,300백만원/개소당 - 백합구근생산단지 : 2,000백만원/단지당 ※단지당 100만구(약 3ha)생산 기준 ※동 지원기준 단가 이내에서 단지실정에 맞게 사업규모 결정 ○ 지원조건 : 국비 50%정액보조(지방비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중간자구입자금은 20%이상 자부담 ○ Virus정밀검정 등 포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의 포장검사 실시 및 Virus이 병주 제거 등 무병종구생산관리 철저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구의 선별, 소독, 저장 등 수확후 관리 철저 - 종구의 규격화 및 상품화 관리 - 농기판매용 종구의 사후책임보증 실시 - 백합수출단지 농가에게 우선 공급 등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벼 육묘공장설치>	농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시장·군수 ○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이내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시설 : 파이프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컨테이너, 최아기 -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에어컨 육묘상자, 상토 ○ 지원조건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대상지역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구 등 쌀생산 주산 지역으로 벼재배면적이 100ha이상 가능한 지역 - 벼 육묘시 자동관수장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전력(200V, 380V)사용이 용이한 지역 -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어린모 육묘시설이 없어 위탁 육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 -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고 가급적 원예작물 모종 생산,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 활용도가 높은 지역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병해충방제 지원 <벼 병해충방제>	농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벼 재배농가, 시장·군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방제 : 농약대 - 항공방제 : 헬리콥터 용역대 - 대상병해충 : 벼물바구미·도열병·벼멸구 및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병해충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방제 : 30천원/ha - 항공방제 : 25천원/ha ○ 지원조건 : 국비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 원 기 준
<채소류 병해충 방제>	채소특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채소 재배농가 ○ 지원내용 : 해당 병해충방제 농약대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마귀병(배추) : 1,150천원/ha - 흑색썩음균핵병(마늘) : 3,000천원/ha ○ 지원조건 : 국비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기타 : 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사업), 출하조절 등 정부의 수급 안정시책에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	유통정책과 (농특산물 홍보·관측 : 품목 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단위 공동브랜드 개발 등 농특산물 홍보를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브랜드개발·홍보 : 시·도, 시·군당 1개 브랜드 -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 잔류농약 측정 등 - 농특산물 홍보·관측 : 상품안내 홍보물(기차, 지하철, 버스 등 홍보물), 전사·게시물, 광고탑, 신문, 라디오, 케이블TV 등 광고, 인터넷 홈쇼핑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시스템 설치 등 ※ 인쇄 등 유인물비는 자부담 ○ 개소당 지원한도액 : 1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판단 하여 조정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50%이상 부담) ○ 품목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량이 많고 품질관리가 우수하여 상표단위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 견본·통명거래를 실시하고 등급별 정매가 가능한 품목 - 포장디자인 개발에 의한 유통개선 효과가 큰 품목 ○ 사업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사군지부 (회원조합포함), 생산자조직 등 관계자 - 협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브랜드, 홍보물 개발 등 홍보방향 설정 · 용역업체 선정(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시각·포장디자인 등록업체) · 홍보물 활용방안 수립 · 홍보/판매전략 수립 ○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브랜드 개발은 품목별로 전문화하여 균질품 생산·선별·포장으로 신용·통명거래가 가능하도록 지도·관리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함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원기준
<p>○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p>	<p>식품산업과</p>	<p>○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한도액 : 500백만원/개소 ○선정기준 - 농업진흥구역에 부지를 선정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농업진흥구역이외 논을 부지로 선정할 경우 우선 순위 결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농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특산품)의 전시판매가 용이한 지역 -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특산단지와 공조활동이 용이한 지역 ○지원조건 : 국비50%정액보조(지방비50% 이상 부담 가능)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 ※ 특산품의 개념 : 농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민속공예품, 식재료 등)</p>
<p>○친환경농업기반조성 <목재파쇄기구입 지원></p>	<p>친환경농업과</p>	<p>○지원대상자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목재파쇄기(툽밥,나무칩 제조용)구입비 지원 ○지원한도액 : 5천만원이내/개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 이상 부담) ※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에 지원시 자부담 포함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기타조건 : 목재파쇄기의 보관시설이 필요할 경우 설치 가능</p>

세부사업명	사업소관	지원기준
<푸른들가꾸기 운동지원>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푸른들가꾸기 운동으로 자운영, 헤어리베치, 호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 ○ 지원내용 : 종자대 지원 ○ ha당 지원액 : 자운영, 헤어리베치 200천원(50kg) 호밀 등 180천원(180kg)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환경농업교육장 설치>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환경농업교육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한도액 : 3억원이내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기타조건 : 부지구입비, 운영비성 경비는 자부담 조건으로 함
<축산분뇨 액비저장 탱크 설치>	친환경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비재배농가, 농업법인 ○ 지원단가 : 15,000천원/1기(200톤 규모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부담)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면적이 2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축산분뇨 수거·운반 및 살포장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농가 및 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우리밀 생산지원	식량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 밀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대 및 비료대 ○ 지원단가 : 260천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대 : 88천원 - 비료대 : 172천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별지 제1호서식]

심사제외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일괄배정사업>						
○ 소규모농업용수개발						
- 소규모지표수	개소					
<공모사업>						
○						
○						
<실적가산금사업>						
○						
○						

- ※ 사업량의 단위는 반드시 <붙임1>의 지원기준에 기술된 단가에 적용된 단위 사용
- ※ 일괄배정·공모 및 실적가산금사업을 구분하고, 단위사업까지 분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2001 00월분 국고 보조금 자금 배정 신청서

(00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교부 결정액	자금배정			사업추진상황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사업량	준비중	공사중	공정율	완료
일괄배정사업										
○ 공모사업										
○ 실적가산금사업										
○ 쌀생산 대책										
-										
○ 농림사업평가										
-										

[별지 제3호서식]

지역특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

사업명 : (구분 : 일괄배정, 공모사업)

필요성

세부추진계획

○사업시행자 : 구체적으로 기재

○주관기관 : 시·도 또는 시·군(과)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사업추진일정 :

○총 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금 액				산출 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예시)단가 × 물량

운영(활용)계획

기대효과 및 사업성 검토

○ 외부기관 연구결과, 자체검토 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작성

기존 유사 농림사업과의 비교

구 분	기존 유사사업(사업시행지침서)	본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시행자		
-대상지역		
-지원내용		
-지원단가		
-재원별부담액		
-		
-		

* 양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 사용

[별지 제4호서식]

심사제외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년 분 · 반기말 현재)

시도		(금액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상황				자금배정액			집행실적			집행비율(%)
	사업 계획량	공사 (공급중)	공사(공급) 완료 %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일괄배정>											
○ 소규모농업 용수개발											
- 소규모용수											
- 농사용 지하수											
- 원예용암 반관정											
○ 사면수리설 개보수											
○ 오염농경지 개토											
○ 병해충방제											
- 벼병해충 방제											
- 채소류병 해충방제											
<공모사업>											
○											
○											
<실적가산금>											
○											
○											

※ 일괄배정·공모 및 실적가산금사업을 구분하고, 단위사업까지 분리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시·도

(금액 : 백만원)

사업별	지구·명	위 치		용수활용계획				추진 계획			추진 실적			자금집행		
		시·군	읍·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사업비			사업비			진도 (%)	금액	진도 (%)
				이용량	인구	답작	전작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m ³ /일	인	ha	ha									
암반관정																
집수정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준공 상황판

← 60 cm →

준 공 상 황 판							
관리번호		개발년도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등		
위 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관정제원	직경 mm,	심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수중모타	설치심도 m,	규격 HP× mm	채수량	m ³ /일			
시 공 자	착 정 회사명:	대표:		(TEL)			
	수중모타펌프 회사명:	대표:		(TEL)			
	전 기 회사명:	대표:		(TEL)			
	장 옥 회사명:	대표:		(TEL)			
관 리 자	공 무 원 소 속:	직	성명	(TEL)			
	수혜농민(대표) 주 소:	성명		(TEL)			
전 기 수 용 번 호							

↑ 40cm ↓

※ 아크릴 또는 합판(가로 60cm, 세로 40cm) 등에 흰바탕 검정글씨로 제작

여 백

Ⅱ. 농 업 기 계 화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과장 남점술, 행정사무관 정영환) 입니다.

1.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대, 백만원)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 2004년
사 업 량		1,507	98	172	123	359
사 업 비	계	6,444,325	821,813	1,130,868	920,000	3,122,229
	보 조	811,141	13,583	-	-	-
	용 자	1,449,217	172,813	154,745	184,000	624,446
	지 방 비	786,750	13,584	-	-	-
	농협융자	1,658,966	434,426	636,863	460,000	1,561,114
자 담	1,738,251	187,407	339,260	276,000	936,669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별도시달 :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방안 확정후 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과장 남점술, 사무관 박상민)입니다.

I.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1. 목 적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설치 축소 및 사후관리 지도강화
- 사후봉사사업소 및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는 설치확대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2004년	
사 업 량	4,963	1,030	350	185	470	1,840	
사 업 비	계	270,761	36,050	13,400	5,285	12,420	35,930
	보 조	85,615	7,000	1,050	123	140	455
	용 자	45,751	14,840	8,330	3,577	8,554	24,612
	지방비	85,615	7,000	1,050	122	140	455
	자부담	53,780	7,210	2,970	1,463	3,586	10,408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별도시달 :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방안 확정후 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과장 남점술, 공업서기관 한한수)입니다.

1. 목 적

- 계절별 사용 농기계의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함.
- 농업기계화와 농업시설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기자재 생산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보급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신기술 농기계 개발·보급을 촉진
- 첨단 농업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 촉진으로 우량 농업기자재 생산공급 실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②항 및 제7조 ②항

4. 연도별 지원계획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사업량		개소 205	38	34	20
사업비	계	백만원 311,600	47,000	40,000	40,000
	용자	311,600	47,000	40,000	40,000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별도시달 :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방안 확정후 시달

Ⅲ. 생산 및 유통 개선

여 백

16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정책과(과장 김종진, 사무관 김희열)입니다

1. 목 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 비용절감·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 36개소를 원료벼 확보가 용이한 넓은 들녘 중심으로 설치, 산지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
- 권역별로 생산농가와 계열화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 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1~'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
사업량(개소)		301 (192)	11 (90)	12 (85)	- (140)	36 (1,093)
사 업 비 (백만원)	계	569,800	56,900	63,000	63,000	476,900
	보 조	173,600	21,200	22,500	18,000	136,500
	용 자	143,300	23,800	27,900	27,900	198,000
	지방비	-	-	-	4,500	43,100
	자부담	252,900	11,900	12,600	12,600	99,300

주) 사업량의 ()내서는 건조·저장시설증설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벼농사가 규모화되고 콤바인에 의한 물벼수확이 보편화되면서 수확후의 건조·저장 노동력과 비용의 절감, 미질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마진의 절감, 소비자기호의 다양화에 부응한 새로운 쌀 생산·유통체계 정립 필요성 증대

(2) 사업기간 : 1. 1 ~ 12. 31(가급적 벼수확기이전 완료)

(3) 지원대상자

가) 신규미곡종합처리장

- “8번 마항의 선정기준”을 갖춘자로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7호(영농조합법인)·제8호(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
 - 양곡도정업체
- ※ 신규RPC설치는 RPC가 없는 시·군 또는 지역적으로 원료수집경합이 없는곳 중심으로 우선지원

나) 위성 건조·저장시설(위성시설)

-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코자하는 업체로서 “8번 마항의 선정기준”을 갖춘자
- ※위성시설은 가공을 제외한 검사, 건조, 저장이 가능한 시설로서 RPC업체가 아니라도 RPC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위성시설설치가 가능, (단, RPC가 없는 시·군 등 지역적으로 RPC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함) 기존RPC의 원료수집지역내에서는 기존RPC에 위성시설을 우선지원하고, 위성시설 단독운영보다는 인근 RPC와 연계 운영되도록 관리

다) 건조·저장시설 증설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 ※증설시설은 RPC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 조선키 등을 설치하더라도 동일 작업권내에는 과잉투자, 사업추진 혼선을 막기위하여 증설사업으로 지원

라) 창고개조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
- 원료수집경합이 없는 지역에서 창고를 개조하고자 하는자
- ※양곡창고개조시설은 원료수집경합이 없는지역에서 창고를 산물벼(보리) 처리에 적합한 건조·저장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서, 창고개조시설의 경제성을 감안 가급적 예비창고 1동(棟)이상을 확보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담	용자조건
신규RPC	생산자단체	2,000	800	200	600	400	연리5%,3년거치
	일반사업자	1,000	-	-	800	200	7년상환
위성시설	생산자단체	700	280	70	210	140	"
	일반사업자	700	-	-	560	140	"
증설시설	생산자단체	450	225	225	135	90	"
	일반사업자	450	-	-	360	90	"
창고개조	생산자단체	250	100	25	75	50	"
	일반사업자	250	-	-	200	50	"

(5) 지원시설의 종류

가) 신규 미곡종합처리장

- 지원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건축, 건조·저장기계설비, 품질검사장비, PC 등 부대장비(부지구입비 및 가공(도정 등)기계 설비제외, 단, 일반사업자에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부지구입비 지원가능)
- 설치규모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수집가능 원료곡 생산량, 기존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일반사업자는 기본시설 I형,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형
- 기본시설 규모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함

기본시설유형	사업자	처리 능력			비고
		건조	저장	가공	
I형	일반사업자	1,000톤	1,000톤	(20톤/일)	평창고의 저장
II형	생산자단체	2,000	2,000	(20톤/일)	능력은 제외

※ 가공능력 : 1일 8시간 가동기준(단위 : 정곡, 톤)이며, 가공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신규설치시는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일반사업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부지구입 가능

○ 기계설비 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또는 보리)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 및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나) 증설시설(위성시설 포함)

- 지원시설 : 벼(보리포함) 건조·저장기계설비 및 PC 등 부대장비
- 설치규모 : 건조·저장시설을 각각 800톤이상으로 하되, 기존시설능력 및 설치지역에 따라 각 시설규모 자율조정 가능
- 기계설비기준(가급적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성 제고)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 및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
- ※ 위성시설의 경우는 신규RPC 기계설비 기준과 같이 품질관리시스템, 제어시설 등을 갖추어야함

다) 창고개조시설

- 설치규모 : 건조500톤, 저장300톤(톤백저장가능)이상으로 함
-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계·부대장비, 시설개선 및 개조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0	63,000	45,900	18,000	27,900	4,500	12,600
○ 생산자단체	100	45,000	31,500	18,000	13,500	4,500	9,000
○ 일반사업자	40	18,000	14,400	-	14,400	-	3,600

* 용자조건 : 연리5%, 3년거치후 7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02-503-7271~3)
- 시·도 : 농산과(또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사업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수립,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역, 시설능력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시·도내에서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자의 변경승인 사항은 신속히 계통보고를 하여야함

(2) 설 계

○ 건축·건설관계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자체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

(3)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는 단체장(농협중앙회장 등)책임하에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시설치한 R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이월시 공사참여 제한

(4) 감리

- 생산자단체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고, 일반 사업자도 가급적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6) 사업비 집행방법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67호, '98.12.19)에 따름.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함.(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검정 및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제2호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검정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마. 기타사항

-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출장소, 농협 시·군지부관계자, 민간RPC대표,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
 - 기능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 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 RPC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유통계열화를 촉진하여 지역특산미 생산 활성화
 - 자체매입가격, 건조료 협의 등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 민간단체는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술 지원 및 운영지도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RPC와 생산농가와의 계열화를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가급적 시·군단위 이상의 광역브랜드화를 유도하고 우수업체에 산물수매량·운영자금 등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시장·군수는 부도RPC 발생시 자구 및 합병·제3자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 토록 적극 노력하고, 정상 가동시 RPC로 재인정.
 - 다만, 기존RPC가 부도로 운영중지 중인 상태에서 같은지역(원료권)에 신규로 RPC를 설치코자 하거나 자체조성RPC중에서 정책지원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투자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산물수매전에 RPC(위성시설포함) 호퍼스케일(수분·중량)에 대한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조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말 기준,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조사하여 통보·보고하여야함(농관출장소→시·군, 지원→시·도, 본원→농림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설치 완료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용자금 회수기간 등을 감안, 10년간 사후 관리를 하여야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양수도 등을 할 수 없음.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나.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사업계획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1월말까지	별 지 제3호서식
○사업비 집행·정산실적 (완료)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원료벼매입실적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 지 제4호서식

6. 2001년 운영자금지원

가.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신규 및 자체조성RPC포함)

나. 지원기준

- 지원기준은 추후 별도시달

다. 지원금액 : 4,225억원(RPC당 평균 13억원수준)

라. 지원절차 및 방법

- RPC별 운영자금 신청접수(1. 30까지)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 RPC별 운영자금 지원계획 대출기관에 통보(농림부)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 대출기간 : 2001. 12. 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마. 보고 등의 조치

□ 대출기관(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요구 및 운영자금 집행실적 제출
 -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조치 사유발생시 수시보고

□ 사업자 및 시·도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요구 및 운영자금 집행실적 제출
- 사업자는 원료벼의 매입·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별지 제5호서식)비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의 기록상황을 수시 확인·점검 실시
- 사업자는 농관원출장소장의 원료벼 매입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 받아 원료벼매입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료벼 매입실적을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4호 서식)

7. 부실업체 제재

- 산물벼처리실적이 적은 업체, 사고업체 등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축소 내지 중단
- ① RPC자체매입량(A)이 정부산물수매 배정량(B)보다 적은업체
⇒ 매입비율(A/B)에 따라 차년도 수매배정량 감축
- ② 검사시설·장비미비 및 교정검사 미필, 자체검사원 미확보 업체
⇒ 운영자금, 수매배정량을 감축할 수 있음
- ③ RPC자체매입금액(C)이 운영자금지원액의 1.5배(D) 미만인 업체
⇒ 매입비율(C/D)에 따라 차년도 운영자금 감액
- ④ 미곡유통관련 불법·부정업체 또는 산물수매벼를 임의로 처분한 업체
⇒ 사고의 경중에 따라 1년이상 지원 중단
- ⑤ 운영실적이 1년이상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
⇒ 정상운영시까지 지원중단(제3자 인수후 재가동시는 지원재개)

8.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가) 신규미곡종합처리장

- “8번 마항의 선정기준”을 갖춘자로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7호(영농조합법인)·제8호(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
 - 양곡도정업체
- ※ 신규RPC설치는 RPC가 없는 시·군 또는 지역적으로 원료수집경합이 없는곳 중심으로 우선지원

나) 위성 건조·저장시설(위성시설)

-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코자하는 업체로서 “8번 마항의 선정기준”을 갖춘자
- ※ 위성시설은 가공을 제외한 검사, 건조, 저장이 가능한 시설로서 RPC업체가 아니라도 RPC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위성시설설치가 가능, (단, RPC가 없는 시·군 등 지역적으로 RPC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함)기존RPC의 원료수집지역내에서는 기존RPC에 위성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위성시설 단독운영보다는 인근RPC와 연계 운영되도록 관리

다) 건조·저장시설 증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증설시설은 RPC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 조선키 등을 설치하더라도 동일 작업권내에는 과잉 투자, 사업추진 혼선을 막기위하여 증설사업으로 지원

라) 창고개조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

○원료수집경합이 없는 지역에서 창고를 개조하고자 하는자

※양곡창고개조시설은 원료수집경합이 없는지역에서 창고를 산물벼(보리) 처리에 적합한 건조·저장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서, 창고개조 시설의 경제성을 감안 가급적 예비창고 1동(棟)이상을 확보

다. 신청절차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추천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사업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자율사업 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1부.

○기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신규RPC(위성시설포함)설치

생 산 자 단 체(농협·농업법인)	일 반 사 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1,000ha이상 (적정1,500~2,000ha)으로서 가급적 기존 업체와 원료수집 경합이 적은 지역 ※ 가능한한 시·군별로 RPC개소당 2,000ha이상 논면적 확보 -지역여건을 고려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판단 ○ 10억원이상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 확인) ○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벼를 확보할 수 있고 판매능력이 있는자 ○ 법인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출자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 미만인 법인 - 법인설립후 1년이상(신청일기준) 경과하여 연간 쌀 2,000톤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법인 -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 (농지, 농기계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시·군은 법인의 상기요건 실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관내 기존도정공장(현대화된 공장으로서 습식연미·집진시설 및 20kg이하 소포장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정부양곡 임도정업자인 경우, 대상자로 확정과 동시에 공사 완료일기준 정부 양곡가공도급계약 포기서 제출 ○ 좌 동 ○ 일반사업자는 해당없음

(2) 우선순위

-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하순위를 부여

가) 신규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생산자단체 >

- ① 당해 시·군관내에 RPC가 없거나, 기존RPC와 원료수집 경합이 없는 지역의 단체
- ② 2개이상의 조합 또는 회사가 합병 또는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연합RPC)
- ③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할 수 있는 단체
- ④ 관내 기존도정공장(RPC로 전환시 활용가능한 현대화 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
 - ※ 현대화시설 : 습식연미·색채선별시설, 집진설비 및 20kg이하 소포장 장비 등을 갖춘 도정공장
- 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 일반사업자 >

- ① 당해 시·군관내에 RPC가 없거나 기존RPC와 원료수집 경합이 없는 지역의 도정업체
- ② 다수의 일반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일반도정공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기존 도정업 등록취소
- ③ 정부의 조곡매출사업 또는 조곡공매사업에 다년간 참여하여 미질향상과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활성화에 공헌도가 높은 도정업체
- ④ 기타 관내농가 또는 각종 영농조직 등과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나) 건조·저장시설 증설(위성시설포함)

- ① RPC가 없는지역(대규모 집단농지가 있는 읍·면)우선
- ② 농가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활용율이 100% 이상인 자
 - 활용율이 동일한 경우 시설규모가 작은곳 우선
- ③ 전년도 원료벼 확보량(농가벼+공매벼)중 농가벼 확보비율이 높은자
- ④ 전년도 경영손익이 흑자인 자

다) 양곡창고개조

① 기존창고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조·저장증설시설보다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생산자 단체

• ②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선정절차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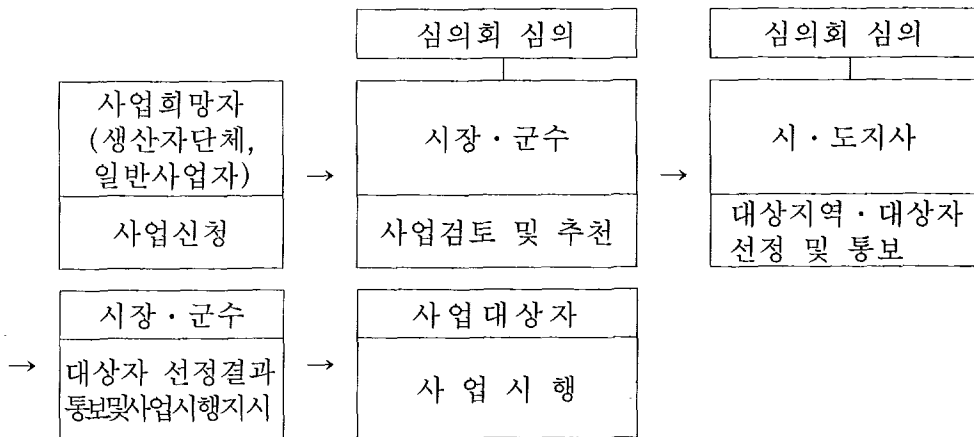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원료비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정심의회의 또는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역이 농업기본법·도시계획법·건축법·환경보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체계



바. 기타사항

○ 사업별 지원단가와 지원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

- 생산자단체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지원조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지원조건과 달라질 수 있음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신청가능

○ 민간자체조성 RPC에 대한 정책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음

<별표1.>

민간 자체조성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Ⅰ 대상RPC 심사기준

<시설기준>

- 건조·저장능력 각1,000톤이상(평창고 능력외), 가공능력 20톤/일 이상
- ※ 시설능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
- 100평이상의 보관창고 1동이상(구내)
- 기타 산물검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운영능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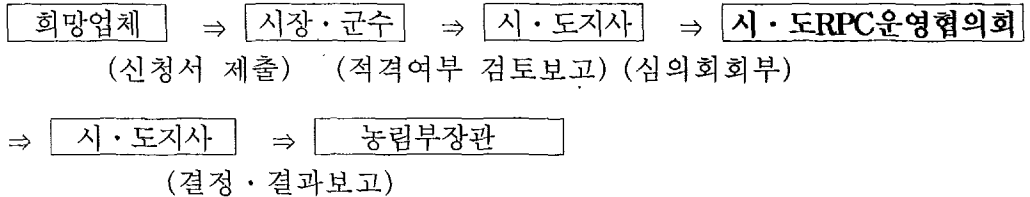
- 건조·저장·가공 일관처리시설 설치후 1년이상 경과된 업체
- ※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물처리 기술(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시·도지사가 시설설치 후 1년이상 경과규정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쌀판매실적이 1,500톤이상 또는 30억원(세무신고자료) 이상인 업체
-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비를 확보할 수 있고, 판매능력도 인정되는 업체
- 10억원이상의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

<지역기준>

- 원료비 확보가능 면적이 1,000ha이상인 지역의 업체(적정면적1,500~2,000ha)
- ※ 시·군별로 가능한 RPC개소당 평균2,000ha이상의 논면적이 확보되도록 검토(관내RPC, 임대정공장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면적을 포함하여 검토가능
- ※ RPC가 없는 읍·면지역의 업체 및 시·군단위 이상의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에 대해 우선적 검토

2] 심사절차

- 신규정책지원 희망업체(RPC인정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적격여부를 1차검토한 후, 시·도RPC운영협의회(농정심의회)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최종결정



<RPC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 농정국장(1), 쌀 유통관련 교수·전문연구기관연구원(3), 농협RPC 대표(1), 민간RPC업체대표(1), 임도정업체대표(1), 농업인대표(3) 등 10인 이상의 각계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
- ※ 본지침 시달('99.9.16)이전 기 시설된 자체조성RPC중 Ⅰ항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원료비확보 면적 등 특정기준만 일부 미달하는 경우 해당 RPC의 전년도 운영실적이 수익을 시현하는 등 정상운영되고 있고, 원료확보, 시설운영 등에 지장이 없으며, 지역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적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지원대상 RPC로 정할 수 있음
- 충분한 원료조달 가능성, 판매 등 사업능력, 지역주민들의 평가, 기존시설들과의 관계 등 지역실정을 종합감안하여 심의

3] 정책지원 사항

- 산물수매량 배정, 예산범위내에서 건조·저장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지원

4] 자체시설 설치시 협조사항(시·군, 농협)

- 농협 또는 지자체의 보조지원으로 신규로 RPC를 설치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시·도RPC운영협의회와 사전협의

(별지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 업 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m²(평);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토지, 원료비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쌀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출자내역, 인수도정공장명, 연계출하도정공장명,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농가수, 신규고정투자여력, 기타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매출 및 조곡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인수도정공장명, 통합 또는 공동출자 도정공장명 및 현황,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조직과의 물벼수집 계획량 및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농가수, 신규 고정투자여력, 기타

(별지제2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거래처 및 전화 번호 기타 필요 사항 기재
○○○○	계 ○○○○ ○○○○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별지 제3호서식)

법령보고 : 보조금 제25조

사업계획 · 실적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사업명 : 00 사업>

(2000. 월말현재)

시 군	사 업 자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상황					③사업비 집행상황						비 고	
		사업량			시설능력			부 지 확 보	건 축 허 가	착 공 일	공 정 율	준 공 예 정 일 월 일	계 획			실 적 (집 행 · 정 산)				
		부 지	건 물	기 계	건 조	저 장	가 공						계	보 조	용 자	자 담	계	보 조		용 자
계		평	평	종	톤/ 조 곡	톤/ 정 곡	월 일			%	월 일	천 원				천 원				
.																				
.																				
.																				

주) 1 상기 통합서식으로 ①사업계획, ②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③사업비 집행·정산실적을 보고

- ※ 시설능력 : 건조는 연간처리능력, 저장은 일시저장능력, 가공은 1일 8시간 기준 생산능력을 표시
-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4호서식)

법령보고 : 보조금 제25조

RPC별 원료비 매입실적보고

시·군 RPC별	계		차액수매		자체매입				수탁		공매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톤	백만원										

(별지 제5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비 매입대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정부산물수매 (차액, 용자 등)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계												

주) 년산별로 작성비치할 것

(별지 제6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비 매입확인서

○○미곡종합처리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년산	계		정부산물수매 (차액, 용자 등)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년산												
○○년산												
계												

상기 원료비 매입상황을 확인함

2001. . .

사업자 대표 : ○ ○ ○ (인)

확인자 : 농관원○○출장소장(인)

(별지 제7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비 매입실적보고

○○미곡종합처리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년산	계		정부산물수매 (차액, 용자 등)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년산												
○○년산												
계												

2001. . .

보고자 : ○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인)

농림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자료	소속	
확인	성명	(인)

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	------------

1 조사기준일				년		월	말	기준
---------	--	--	--	---	--	---	---	----

1. 일반사항

2 사업체명		3 사업시작년도		4 구분	<input type="checkbox"/> 1. 개인 <input type="checkbox"/> 2. 법인 <input type="checkbox"/> 3. 농협				
5 대표자	6 주민번호				7 전화번호				
8 주 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	9 학력	<input type="checkbox"/> 1. 농수산계 <input type="checkbox"/> 2. 기타 <input type="checkbox"/> 1. 대졸 <input type="checkbox"/> 2.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3. 고졸 <input type="checkbox"/> 4. 중졸 <input type="checkbox"/> 5. 국졸 <input type="checkbox"/> 6. 무학			
10 경영장부기록여부				<input type="checkbox"/> 1. 기록 <input type="checkbox"/> 2. 미기록					

2. 사업현황

사업면적	11 부지		평	12 건평		평
대상지역	13 관내논면적	ha				
설치능력	14 건조(조곡:월)	톤	15 저장(조곡)	톤	16 가공(정곡:일)	톤
시공업체	17 건축	18 기계설비				
공사추진상황	19 공사착공일		20 시험가동개시일			

3. 추진상황

(단위 : 천원)

21 계 획				22 실 적			
계	국 고	용 자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자부담

4. 운영상황 : 1. 건설중, 2. 가동중

23 농가벼 매입비율	%	24 산물벼매입량(조곡)	톤
25 연간 원료벼 매입량(조곡)	총계(톤)	계약재배	농가수탁
		일반매입	공매곡
26 벼 계약재배면적	ha	27 쌀품질인증실적(조곡)	톤
28 지방비 지원액	백만원		
29 총 매출액	백만원	30 환원사업(농가환원액)	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입력서식 기재요령]

- 1 : 조사기점 기준
- 2 : 사업체명 기재
- 3 : 사업시행년도
- 4 : 개인, 법인, 농협으로 구분
- 5~6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7~8 : 사업장 전화번호 및 사업장 주소
- 9 : 대표자의 최종학력
- 10 : 경영장부 기록여부 사항을 기입
- 11 : 건축허가 면적
- 12 : 건축허가 연건평
- 13 : 사업신청시 관내논면적
- 14 : 월(25일기준) 건조능력(조곡)
- 15 : 일시 저장능력을 기록(조곡)
- 16 : 1일(8시간기준) 가공능력(정곡)
- 17 : 건축시공업체명
- 18 : 기계설비업체명
- 19 : 건축공사착공일
- 20 : 공사완공후 시험가동일
- 21 : 예산에 계상된 단가계획액
- 22 : 작성시점기준 실제집행액
- 23 : 총 원료곡 매입량중 농가벼 매입비율
- 24 : 총 원료곡 매입량중 산물벼 매입량
- 25 : 연간 원료벼 매입량 = 농가벼 매입량(계약재배+일반매입) + 농가수탁 + 공매곡
- 26 : 농가와와의 벼 계약재배면적
- 27 : 농관원에서 품질인증 확인된 물량
- 28 : 시·군(도비포함)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 포장재비 등 지방비 지원액
- 29 : 작성시점 기준의 총매출액
- 30 : 총 매출액중 농가환원액(이용고배당, 비료, 농약등 영농자재 지원액등)

미국종합처리장 사업(자율)

1. 개 요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관처리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및 비용절감 ○ 수확기 농가벼 매입기능 확충으로 산지쌀값 지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추진상황, 원료벼 매입실적, 벼계약 재배 등 운영상황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착공, 시험가동 등 공사추진 ○ 운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물벼 매입량 - 연간 원료벼 매입량 - 벼 계약재배면적 - 품질인증 쌀 취급실적
담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 도 농정국 농산(농정, 농산물유통)과

2.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산출방법
		점수	기준	
계	100	100		
1. 공사추진	30			
① 공사착공	(10)	10 5 0	4월말 이전착공 4월말 이후착공 6월말 이후착공	o 공사착공일 기준
② 시험가동	(20)	20 15 10 0	8월말 이전가동 8월말 이후가동 10월말 이후가동 다음년도 이월	o 시험가동 개시일 기준
2. 운영사항	70			
① 산물벼 매입량	(30)	30 20 10 5	4,000톤이상 4,000톤미만 2,000톤미만 1,000톤미만	o 수확기 산물벼매입량 (조곡)기준 - 계약재배+일반매입
② 원료벼 확보량	(20)	20 10 5	6,000톤이상 6,000톤미만 2,000톤미만	o 연간 원료벼 매입량(조곡)
③ 계약재배	(10)	10 5 0	500ha이상 500ha미만 계약재배 실적없음	o 관내계약 재배 실적
④ 품질인증	(10)	10 5 0	1,000톤이상 1,000톤미만 인증없이 출하	o 농관원에서 확인된 물량기준

3. 평가 총괄표

순위	위 치		업체명	합계 (100)	공사추진			운 영 사 항				
	시·도	시·군			소계 (30)	공사 착공 (10)	시험 가동 (20)	소계 (70)	산물벼 매입량 (30)	원료벼 확보량 (20)	계약 재배 (10)	품질 인증 (10)
			합계									

※ 평가대상 : 2000건조·저장증설 사업을 한 미곡종합처리장(85개소)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장 박현출, 서기관 김종훈) 입니다.

1. 목 적

- 농업·농촌 기간조직인 조합을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권·경제권 중심으로 합병하는 조합에 시설통합, 부실채권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합합병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선조합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하여 유통·경제사업의 핵심체로 육성
- 조합원 자율의사에 의한 합병추진, 합병권고 시행
- 합병조합에 대한 지도·지원강화로 경영정상화 조기정착

3. 근거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76조, 제107조, 제112조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4.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97	'98	'99	2000(P)	2001(P)
사업량(개)		64	83	73	180	100
사업비	국고용자	65	80	40	180	1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금융시장 및 농산물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 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94.12)과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96.12)
 - 지원근거 : 농협법 제74조의2, 축협법 제69조의2, 농협합병촉진법 제4조
 -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을 “지역농업협동조합등합병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별조합 모두를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2) 지원대상·금액 및 조건

- 지원대상 :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협동조합
- 지원금액 : 소멸조합당 1억원(신설합병의 경우 참여조합-1)
- 지원조건 : 무이자, 5년 거치후 일시상환(융자)

(3) 자금용도

- 경영활성화 및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억원)

	사업량 (개)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국고)			지방비	용 자
			계	보 조	용 자		
합병조합	100	100	100	-	100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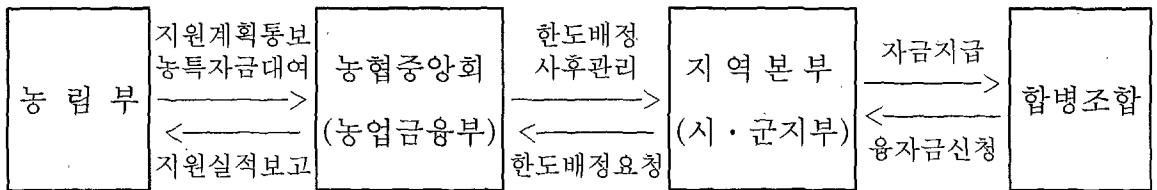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협동조합과(02-500-2638)
- 농 협 :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02-397-5231)

다. 사업시행

-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합병인가를 득한 후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농협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농림부에 자금을 신청
 - 자금계획서 1부, 합병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시행체계



< 행정사항 >

가. 자금관리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및 “농협여신관계제규정”에 의하여 관리

나.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합병조합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자금관리등 경영 지도 실시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 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1/2이하 사용 재배

일반재배



농약·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